

2001년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교재(Ⅱ)

# 리더십 개발 어떻게 할까?



농림부행정자료실



8007899

농 립 부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01년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교재(Ⅱ)

# 리더십 개발 어떻게 할까?

2001-127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7899
등록일: 2002년 1월 14일
기증:

농 립 부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이 책(Ⅱ. 리더십개발 어떻게 할까?)을 “농업·농촌발전과 여성 전문인력육성 교재개발”의 최종 연구교재로 제출합니다.

2001. 12.

주 관 연 구 기 관 명 :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총 팔 책 임 자 : 경북대학교 교수 이호철  
연 구 원 : 경북대학교 교수 김병수  
경북대학교 Post-Doc. 박재홍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유병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정일선  
안동대학교 강사 이영구  
경북대학교 강사 조정봉  
연 구 보 조 원 : 경북대학교 조교 최수영

## 집필진 소개

### I .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이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박재홍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018-740-2065 agecon@lycos.co.kr
유병규	농업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017-509-5860 yubg@ddi.re.kr
석태문	돈되는 유통, 돈안되는 유통	경상북도 정책기획팀 전문위원, 경제학 박사	019-548-9900 stm21@naver.com
이영만	알기쉬운 농장회계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학 박사	055-751-5453 leeman@nongae.gsnu.ac.kr
강효순	컴퓨터로 농가경영장부 쓰기	주식회사 골드팜 이사	011-703-6692 glsol@hanmail.net
최수영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는 농업 정보이용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016-540-8149 kfood@hanmail.net
유소이	여성농업인의 가계경영 관리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 소비자학과 소비자학 박사	018-741-2065 syyou86@hanmail.net
석태문	농촌현장에서 본 선진 농업경영	경상북도 정책기획팀 전문위원, 경제학 박사	019-548-9900 stm21@naver.com



## II. 리더십 개발 어떻게 할까?

이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이호철	리더십과 여성농업인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016-262-3716 Hclee@knu.ac.kr
정기환	여성농업인의 현실 극복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011-214-1602 kwchung@krei.re.kr
정금주	농촌조직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소장	031-299-0440 junggj@rda.go.kr
유병규	여성농업인 정책 어떻게 반영 되고있나?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017-509-5860 yubg@ddi.re.kr
이경숙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법1 : 자아실현	칠곡군 복지회관 계장, 여성학 석사	054-975-2271 019-540-4282 KSLee@chilgok.kyoung.kr
이호철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법2 : 회의진행법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016-262-3716 Hclee@knu.ac.kr
김문형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법3 : 법률상식	농협중앙회 고객만족부 팀장	02-397-5556 k-hyung@nonghyup.com
최수영	농촌을 움직여온 여성농업인 개척자들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016-540-8149 kfood@hanmail.net

### Ⅲ. 농촌자녀 교육과 가족

이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조정봉	우리 가족, 그리고 자녀교육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학 박사	011-9582-6729 jbcho@knu.ac.kr
김진화	농촌자녀 학습지도 방법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강사, 농학 박사	031-290-2538 011- 9609-8798 kjh5038@hanmail.net
윤순덕	농촌지역에서 자녀교육의 새로운 지평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연구사	031-299-0508 ysd@rda.go.kr
한경혜	부담스런 가사노동, 질곡의 여성농업인	서울대 소비자동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02-880-8748 ghhan@snu.ac.kr
유가효	자녀상담과 성교육, 어떻게 할까?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053-580-5861 ykhldj@kmu.ac.kr
최윤지	농가생활설계와 소비생활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연구사	031-299-0509 choeyg@rda.go.kr
최규련	가족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수원대학교 아동가족과 교수	031-220-2242 kchoi@mail.suwon.ac.kr
정일선	좋은 부모, 행복한 부부 만들기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사회학 석사	019-277-4044 sunny@forwoman.or.kr

#### IV. 여성문화와 건강

이름	제 목	소속/직책	연락처/전자우편
조옥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문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박사	02-705-8369 oaklaa@ccs.sogang.ac.kr
임재해	농촌 전통문화의 자연친화적 계승과 발전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민속학 박사	054-823-8481 limjh@andong.ac.kr
이경숙	여성농업인을 위한 취미 및 교양 생활	칠곡군 복지회관 계장 여성학 석사	054-979-6569 KSLee@chilgok.kyoung.kr
정일선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1 : 스트레스 해소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사회학 석사	019-277-4044 sunny@forwoman.or.kr
양진향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2 : 건강관리	경북과학대학 간호과 교수, 영양학 박사	054-972-9567 011-803-1203 JHYang@kbcs.ac.kr
윤진숙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3 : 식생활 관리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영양학 박사	053-580-5873 jsook@kmu.ac.kr
강소영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4 : 자기연출	주식회사 태평양, 미용연구실 대리	02-709-5656 sykang@tacifrc.co.kr
김종숙	교양과 품위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 화훼학과 교수, 농학 박사	031-229-5071 jskim@kn.ac.kr

## 차 례

리더십과 여성농업인 .....	이 호 철 .....	1
여성농업인의 현실 극복을 위한 과제 .....	정 기 환 .....	35
농촌조직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	정 금 주 .....	63
여성농업인 정책,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	유 병 규 .....	95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1 : 자아실현 .....	이 경 속 .....	127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2 : 회의진행법 .....	이 호 철 .....	157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3 : 법률상식 .....	김 문 형 .....	189
농촌을 움직여온 여성농업인 개척자들 .....	최 수 영 .....	225

# 각 권 차 례

## I.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	박재홍 .....	1
농업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	유병규 .....	39
돈 되는 유통, 안 되는 유통 .....	석태문 .....	73
알기쉬운 농장회계 .....	이영만 .....	103
컴퓨터로 농가경영 장부 쓰기 .....	강효순 .....	131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는 농업정보 이용 .....	최수영 .....	159
여성농업인의 가계경영 관리 .....	유소이 .....	189
농촌 현장에서 본 선진농업 경영 .....	석태문 .....	217

## III. 농촌자녀 교육과 가족

우리 가족, 그리고 자녀교육 .....	조정봉 .....	1
농촌자녀 학습지도 방법 .....	김진화 .....	29
농촌지역 자녀교육의 새로운 지평 .....	윤순덕 .....	69
부담스런 가사노동, 질곡의 여성농업인 .....	한경혜 .....	101
자녀상담과 성교육, 어떻게 할까? .....	유가효 .....	127
농가 생활설계와 소비생활 .....	최윤지 .....	155
가족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	최규련 .....	193
좋은 부모, 행복한 부부 만들기 .....	정일선 .....	217

## IV. 여성문화와 건강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문화 .....	조옥라 .....	1
농촌 전통문화의 자연친화적 계승과 발전 .....	임재해 .....	23
여성농업인을 위한 취미·교양생활 .....	이경숙 .....	57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1 : 스트레스 해소 .....	정일선 .....	83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2 : 건강관리 .....	양진향 .....	119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3 : 식생활 관리 .....	윤진숙 .....	149
멋있는 중년 여성 되기4 : 자기연출 .....	강소영 .....	179
교양과 품위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	김종숙 .....	205

# 리더십과 여성농업인

이 호 철

경북대학교

- 
- I. 들어가며
  - II. 우리 농업과 여성농업인 문제
    - 1. 여성농업인 문제의 구조
    - 2. 농업구조의 변화와 여성농업인
    - 3.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와 경영참여 실태
    - 4. 새로운 여성농업인 정책과 리더십의 개발 방향
  - III. 전문인력화 및 리더십 강화의 필요성
    -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의 개념
    - 2. 긍정적인 직업을 확립하자
    - 3. 연령과 학력에 따른 농업경영능력의 분포
    - 4. 여성농업인 리더의 전문인력화와 리더십
  - IV. 리더의 자기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 1. 리더의 자기개발
    - 2. 여성농업인, 비전을 갖자
    - 3. 여성농업인, 목표를 바로 세우자
    - 4.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 V. 마무리
-



## 리더십과 여성농업인

### I. 들어서며

군이 “여성의 역할과 지위 세계화 방안”을 위해 마련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개 시책”을 운위하지 않더라도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 점차 자명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농림부는 여성농업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온갖 시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 가운데서 올바른 리더가 발굴되어 올바르게 길러지지 않는 한 우리 농업 발전의 열쇠가 여성의 손에 달렸다는 말은 공치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미래 학자들은 21 세기는 정보화 및 지식기반 사회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진단해 왔다. 특히 그들은 이 세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적 능력이 중요시되고, 나아가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을 지닌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러 선진국들은 섬세한 여성인력을 얼마나 전문화하고 활용하느냐가 바로 국가경쟁력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남녀평등의 차원을 넘는 국가발전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여성농업인 정책들은 과연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 이제 겨우 여성적인 섬세함이 농업기술뿐 아니라 농업경영과 회계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정보를 이용한 구입과 판매 행위가 곧 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일 뿐, 그것이 강력한 리더십과 조직을 바



탕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는 데 바로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진국 진입을 운위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남녀평등지수(GDI)는 세계 130개국 중 21위이지만, 아직도 여성권한 척도<sup>1)</sup>만은 61위여서 저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또 남녀 고용기회의 경우도 조사대상 42개국 중 41위로서 차별이 심한 편이다. 사실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1%만 높여도 부족한 산업인력 17만 5천명을 해소할 수 있다지만, 우리 나라의 실정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만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도시 공업의 사례와는 달리, 지금 우리 농촌에선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이 전문가이자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배려하려는 사회경제적 풍토는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한 속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뒀안길에서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WTO 시대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이제 세계화·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호관계를 증대시켜갈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로서 우리 삶의 방식과 질서를 서구화로 이끌어 여성농업인의 발언권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에 있어 세계화는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명분으로 국경을 넘어선 경쟁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나름의 내실을 다지는 의지를 발휘하여야만 한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21세기를 맞아 첨단기술에 의한 기계화·자동화·시설화를 추구하면서, 사회경제적 역량 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제 여성농업인들도 종래 전통적인 농가주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전문 농업경영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여성지도자에 이르기

1) 여성권한척도(GEM)는 여성 국회의원 수, 고위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의 비율, 남녀 소득차, 정책결정과정 참여도 등을 종합해 그 나라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떤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수치임.

2) 『한겨레신문』 사설, 2001년 7월 16일.

까지 그 행동반경을 넓혀가야만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들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에 발맞춰 그 다양한 역할과 지위 변화를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여성지도자의 상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여성농업인들을 이끌고 단결시킬 새로운 리더십은 우리 가운데서 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농업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들을 하나로 결집하여 새로운 농업발전과 양성평등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리더는 무엇보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는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자아실현에 앞장서서 원활한 회의진행법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개척정신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은 종래와 같은 “나를 따르라” 식의 투사형의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삶과 고뇌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으며 그들의 꿈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인 것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이 책은 이들의 역할 증대를 위해 최소한 갖추고 알아야만 하는 덕목과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 II. 우리 농업과 여성농업인 문제

### 1. 여성농업인 문제의 구조

최근 여성농업인 문제가 새로운 농업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식량 자급도가 30%를 밑도는 현실에서 농업노동력 구조의 변화 때문에 생산활동에서부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로서 1999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 51.5%, 그리고 전국 농업종사자의 5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농림업 취업자 가운데서 여성의 비율이 47.5%, 농가의 노동투하시간 가운데의 여성비율은 46.6%를 점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같이

농업생산에 있어 남성 노동력보다 여성 노동력 투입 경향이 뚜렷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과 정책 전반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이제 출발점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오늘의 여성농업인들은 ‘가계 운영자로서의 주부이자,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여 이들은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는 슈퍼우먼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에 알맞은 적절한 보수와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 이들의 문제는 도시의 여성노동자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농업인의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1994년의 농협법 개정을 시작으로 1998년의 농림부 내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일련의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생산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간, 계층간 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우리 농업에서 그와 같은 단편적인 시책만으로는 산적한 여성농업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놓여 있다. 사실 여성농업인조차 종래와는 달리 다양화·이질화되고 있으며, 지역 및 경영유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고유한 문제들이 널려 있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의 문제는 농업 생산자로서의 문제컸녕, 전체 여성정책의 구조 속에서조차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 주체인력으로서의 여성농업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농업의 전체구조 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역시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보다 능동적이자 주체적인 접근방법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그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지역 농업과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닌 리더를 육성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2. 농업구조의 변화와 여성농업인

1999년 현재 총 농가인구는 4,210천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약 2백4만명을 점함으로써 전체의 약 5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인구의 변화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 가운데 고령인구의 비중이 도시 및 남성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는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들의 노령화 추세가 더욱 두드러진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둘째, 이처럼 여성농업인들의 노령화가 한층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들의 상당수가 단독가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노령화 및 단독가구화 추세 속에서 그들의 노동 참여는 노동력 재생산 구조 와해와 후계영농 인력의 단절로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농업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 청장년층 인구가 대량으로 도시로 이농함에 따라 농업의 재생산 구조가 와해되고 농업후계 인력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바로 그 때문에 최근에는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는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표 1>를 살펴보면, 1967년에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39.3%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는 전체의 48.6%를 점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표 1〉 농림업 취업자 성별 구성비의 변화

구 분	농림업 취업자	성 별	
		남 성	여 성
1970	4,826	58.4	41.6
1975	5,123	58.5	41.5
1980	4,433	56.2	43.8
1985	3,554	55.7	44.3
1990	3,152	55.0	45.0
1995	2,424	51.4	48.6
1999	2,264	52.5	47.5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또한 『농가경제통계연보』를 보아도 여성농업인의 노동투하량은 1965년 이후 점차 그 비중이 점점 증대하여 1998년 현재 48.2%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업생산에서 남성과 거의 같은 정도의 비중으로 여성노동이 투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 노동력의 절대부족에 따른 노임상승으로 고용노동이 기피되는 대신, 가족노동이 강화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여성들은 농업생산 노동에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간은 1986년에 이르러 11시간 21분으로 상승하여, 농번기에는 도시 근로자의 8시간 노동을 능가할 정도로 과중해 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바로 종래 경종 위주의 농업이 시설원예와 환금성 특작 및 과수, 그리고 축산 경영으로 변화되면서, 특히 여성의 노동력이 더욱 집약적으로 투입된 결과이다. 그러한 경향은 작목별 투하 노동력을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1970년대까지 농가의 노동은 미곡생산에 35%가 투하되었으나, 1999년에는 특히 채소에만 전체의 33.7%에 달하는 노동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

### 3.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와 경영참여 실태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참여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경영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 정도가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답작·전작·과수의 경우는 경영규모가 커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가 높았지만, 시설원예와 축산경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전반적인 노동참여의 정도가 증가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부문에서 여성노동은 참여도가 낮았을 뿐 아니라, 그나마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영규모와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의 문제는 그 농가가 어떠한 경영조직을 갖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점차 공동경작자로서 역할을 정립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참여가 실제로 농가의 소득형성 및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집계한 것이 다음 <표 2>이다. 이를 보면 소득형성 및 창출에 대한 여성의 기여분이 40~60%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국 농가소득 가운데 절반이 부인의 참여로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가중되는 여성의 노동 참여는 가사 일과 농사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시설과 설비, 그리고 작물·기술 등이 도입되고 기계화를 통한 규모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오늘날에 있어 여성농업인들의 노동 참여는 거의 연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혁신의 와중에서 훈련받지 못한 여성노동은 대개 단순작업만을 담당함으로써 공동 경작자로서의 지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져 있다. 왜냐하면 여성농업인들은 <표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왕성한 노동참여에도 불구하고 작목 선정, 토지 매매, 농기계 구입, 자금 대부, 생산물 판매 등의 경영참여에 있어 그 영향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표 2> 총소득 가운데 부인 기여도에 대한 인식

구 분		20%미만	20-40%	40-60%	60-80%	80%이상	계
경영유형별)	농업유형 I	2.4%	33.3	52.4	7.1	4.8	42(100.0)
	농업유형 II	6.7	25.8	51.7	10.0	5.8	120(100.0)
경영면적별	3,000평미만	2.9	28.6	54.2	8.6	5.7	70(100.0)
	3-6,000평	7.3	25.5	54.5	10.9	1.8	55(100.0)
	6,000평이상	8.1	29.7	43.2	8.2	10.8	37(100.0)
연 령 별	30대	3.0	32.8	52.2	7.5	4.5	67(100.0)
	40대	5.1	25.3	51.9	11.4	6.3	79(100.0)
	50대	18.2	18.2	54.6	-	9.0	11(100.0)
	60대이상	-	-	50.0	50.0	-	162(100.0)

주: 1) 농업유형 I =답작+전작+과수, 농업유형 II =시설+축산(답작 또는 전작)  
2) 이호철의 조사결과임.

이처럼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은 여전히 이중적이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

통적이어서, 가족부양권만은 남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역사회와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도 이중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와 가정의 양면에서 여성농업인의 주변적 위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표 3〉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에 있어 영향력

구 분	작목선정	토지매매	농기계구입	자금대부	생산물판매
남편 혼자 결정	32.5%	15.0	50.3	47.5	38.4
부부 의논, 남편이 주로 결정	55.4	81.2	47.2	46.3	54.7
부부 의논, 부인이 주로 결정	10.2	3.2	1.9	5.6	5.7
부인 혼자 결정	1.3	-	-	0.6	0.6
기 타	0.6	0.6	0.6	-	0.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이호철의 조사결과임.

〈표 4〉 소유재산의 명의는 어떠합니까?

구 분		남편 또는 부인	모두 남편 명의	계
경영유형별	농업유형 I	11.9	88.1	42(100.0)
	농업유형 II	19.0	81.0	121(100.0)
경영면적별	3,000평미만	19.7	80.3	71(100.0)
	3-6,000평	18.2	81.8	55(100.0)
	6,000평이상	10.8	89.2	37(100.0)
연 령 별	30대	19.1	80.9	68(100.0)
	40대	16.5	83.5	79(100.0)
	50대	18.2	81.8	11(100.0)
	60대이상	-	100.0	2(100.0)
계		17.2	82.8	163(100.0)

주: 1) 이호철의 조사결과임.

그럼에도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의식은 가족부양 의식, 농번기 남성의 가사참여, 능력에 따른 직업의식 등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더구나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전통적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위도 이제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표 4>는 여전한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농업인들은 재산 소유권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의 가사 및 농업노동 가치는 객관적으로 계측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재산형성에서의 기여도는 인정하면서, 실제 소유권의 명목에 있어서는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소유권을 넘긴 소수의 농가 가운데서는 “부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응답이 약 30%에 달하였다. 이처럼 농촌 가정의 여성 소유권 실태는 도시의 취업여성과는 달리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바로 그러한 여성농업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의 저평가는 장차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감당하여야 할 과제임이 자명하다.

#### 4. 새로운 여성농업인 정책과 리더십의 개발 방향

그러한 위기 속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사실 오늘날의 여성농업인 문제는 종래의 경종 중심의 농업경영이 특작·축산·비닐하우스 농업 등의 상업적 경영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진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심각하였던 이농·탈농조차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된 여성들의 부추김 속에서 더욱 증폭되었던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은 여성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그들의 복지와 교육 확충을 위해 출발하여야만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방향은 그러한 여성의 주류화 경향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들의 가운데서 바람직한 리더십을 개발해 내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 동안 여성농업인 정책은 ‘추진체계의 보강’과 ‘전문인력화 방안’ 강구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에 집중해 왔다. 특히 후자의 경우, 후계자 선발시 여성에게 가산점 부여 및 영농·농기계·전산교육의 실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그리고 여성농업인개발5개년계획의 수립 등으로 집약될 수



있겠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농업정책 결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도 정책적으로 강구되었다. 이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 추진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는 결국 지역 여성농업인들을 올바른 리더로 육성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정책의 추진동력을 획득해내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느끼는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그들의 증대된 역할에 걸맞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문인력화와 리더십 강화는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의 농업여건은 여성농업인을 핵심적인 영농인력으로 확보하고, 그들의 경영능력을 높여야만 농업 발전이 가능한 형편이다. 왜냐하면, 농업종사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농업노동력 확보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농업인 문제는 ‘농업인력의 부녀화’라는 낡은 관점보다는 부부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족농<sup>3)</sup>의 한 축으로 대접해야만 한다. “남편은 경영주-부인은 보조자”의 경영형태보다는 농가부부가 “경영자-경영자” 형태의 공동경영이 보다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리더십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 기계화와 농업경영에서 소외된 농작업 보조자, 그리고 가부장사회에 편입된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경영의 당당한 주체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보람있게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sup>4)</sup>.

3) 김영선·김이선.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pp.3~4, 한국여성개발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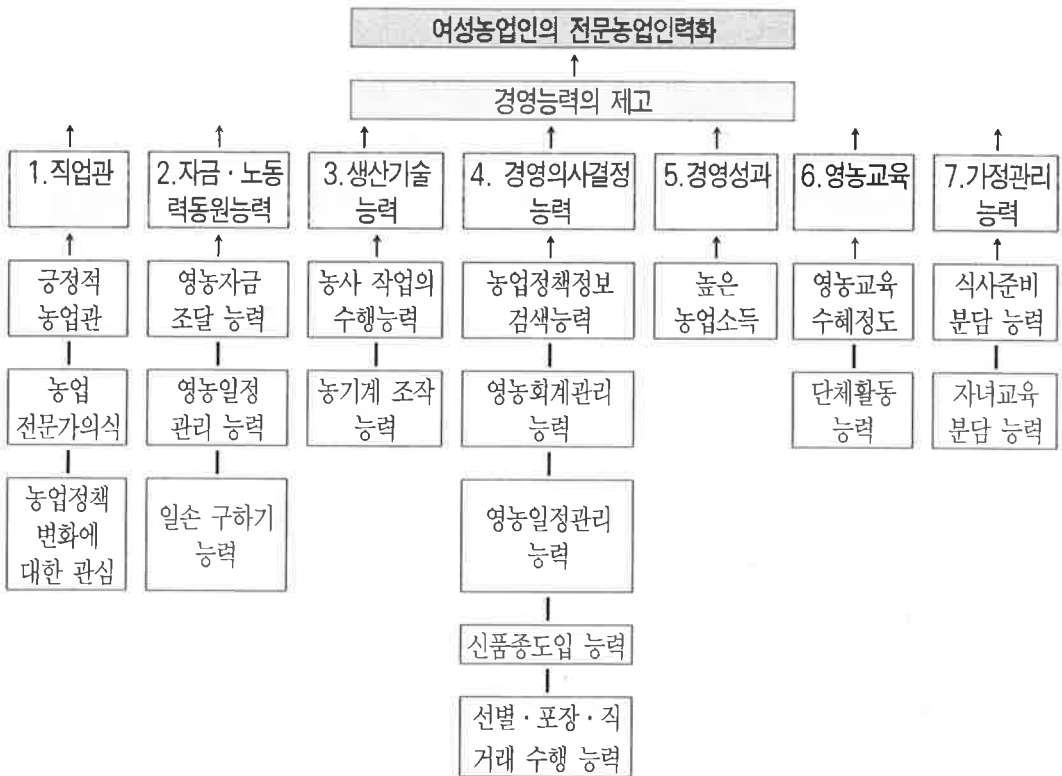
4) 박성자, ‘여성농업인 현실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경북지역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pp. 15~16, 1996.

### Ⅲ. 전문인력화 및 리더십 강화의 필요성

####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의 개념

최근 들어,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그것도 특히 전문인력화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 전문농업인력으로서의 여성농업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 강화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이들이 전문농업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아래 <그림 1>처럼 7가지로 나누어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림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를 통한 전문농업인력화 방안



무엇보다 여성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력으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은 직업관, 자금 및 노동력 동원능력, 생산기술 능력, 경영의사결정 능력, 높은 농업경영 성

과, 영농교육 및 단체활동의 능력, 가정관리 능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 그들의 경영능력은 대체로 높다고 평가된다. 이른바, ① 긍정적인 농업관을 지니고, 스스로 전문가 의식을 지니면서, 농정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 ② 영농자금을 잘 동원하고, 적절한 노동력을 이용하며, 영농 관리를 원활하게 행할 때, ③ 농작업 수행의 숙련도가 높고, 농기계를 잘 다룰 때, ④ 농업정보 획득능력, 회계관리 능력, 경영 의사결정 능력, 판매 능력 등을 고루 갖추었을 때, ⑤ 농업경영으로 얻는 농가소득이 높을 때, ⑥ 영농교육과 여성농업인 단체활동에 적극적일 때, ⑦ 가사노동에 있어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질 때이다.

## 2. 긍정적인 직업관을 확립하자

이 가운데서도 직업관은 여성농업인이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인 직업의식을 갖추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물론 이 분야는 다시 역시 농업인식, 전문가 의식, 농업정책 변화 등 모두 3개 분야로 다시 나눌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천직사상”을 제대로 갖추고 맡은 일에 정성과 정열을 쏟으면서, 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여성농업인상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의 직업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정성과 정열을 쏟을 때, 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나는 일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열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일의 성과와 업적을 쌓을 때,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목표 달성에는 성취욕의 만족이 따릅니다. 나도 사회의 존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흐뭇한 만족감과 자부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자기 직업에 대하여 천직 사상을 갖는 사람이요, 소명의식(召命意識)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직업에 대하여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네 직업을 사랑하여라」 이것은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계명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기 직업에

대하여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쏟고 전력을 다할 때, 비로소 일에 대한 자량과 긍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두터운 충성심과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심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 자기 일에 가장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직업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1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직사상과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 일에 전력투구하는 사람처럼 믿음직스럽고 보람있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직적 직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라 사랑의 길입니다.<sup>5)</sup>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특히 자기 직업에 대하여 천직사상을 갖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명의식을 갖춘 참다운 여성리더일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기 직업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정성을 쏟고 전력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일에 대한 자량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민주적인 지도자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러한 직업관이 갖춰진 후에도 여성농업인들이 새로운 리더가 되려면 과연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자금과 노동력 공급에 있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그 중에서도 농기계 조작 능력은 오늘날의 규모화된 농업에서는 필수적인 수순일 터이다. 한편, 경영정보 획득, 회계관리, 의사결정 능력, 농산물 판매능력 등은 농업경영의 의사결정에서 결정적인 능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와 같은 여성농업인들의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곧 농가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영성과일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은 가사노동과 자녀교육 등에 과연 부부가 얼마나 평등하게 분담하는지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와 같은 경영능력을 모두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성농업인들은 올바르게 전문화된 농업 및 농촌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

5) 전영환, 『리더의 자기 계발』, pp 54-67, 농협중앙연수원.

다. 이제 이들이 지닌 경영능력 실태를 본인 등이 행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연령·학력·농업소득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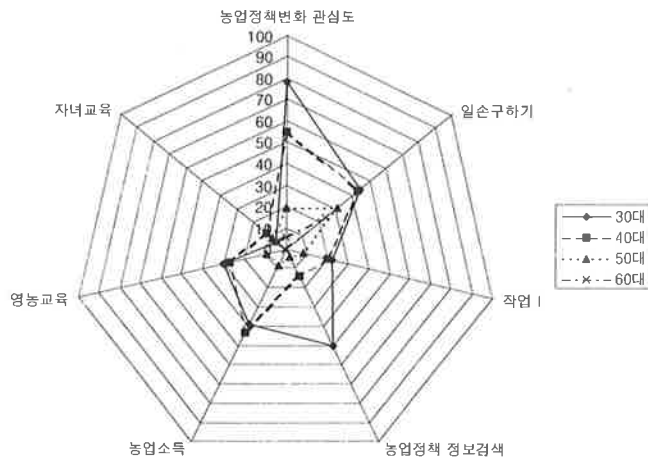
### 3. 연령과 학력에 따른 농업경영능력의 분포

먼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젊은 층일수록 농업정책 변화에 관심이 높았다. 또한 젊은 여성일수록 영농일정 관리와 노동력 구하기에 자기 나름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농업생산 기술의 경우도 연령에 따른 차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영농자금회계 관리, 영농일정 관리, 신제품 도입, 선별·포장·직거래 수행능력 등 모두 5개 분야의 가운데서도 농업정보 검색 능력이 연령에 따른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40대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영농교육과 단체활동 가운데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영농교육 분야였다. 그러나 부부간에 식사준비 등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여성농업인은 그 수가 매우 미미하였지만, 부부가 함께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경우는 비록 비율은 낮았지만 전체 연령층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그림 2〉 피조사자의 연령별 경영능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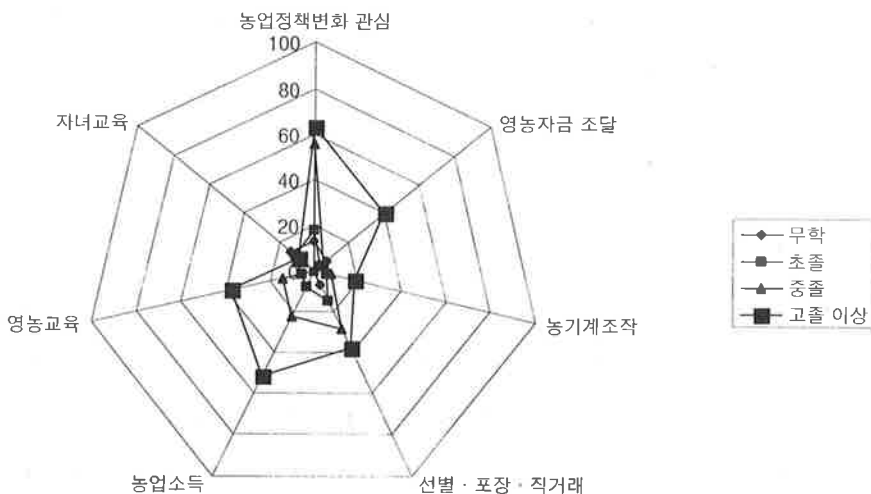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2>와 같았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30대의 경영능력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특히 이 그림은 젊은 세대일수록 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들에 비하여 전반적인 경영능력이 훨씬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해 40대는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과 농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에서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모자란 편이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 분담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영농교육에의 참여도 낮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가정관리 능력과 농업생산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영농교육을 받은 사례도 매우 부족하여 여성농업인 리더로서의 자격이 미흡한 편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경영능력은 과연 학력의 차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인 다음 <그림 3>을 보면,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학력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영농 일정관리도 학력이 높을수록 우수하였으며, 특히 작업능력과 농기계 조작능력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그림 3> 학력별 경영능력 분포

(단위 : %)



무엇보다 경영의 의사결정을 잘하는 능력 중에서도 선별·포장·직거래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의 경우는 학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그에 따라 농업 경영의 성과도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연간 4천만원 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고수익의 여성농업인 가운데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그 밖에도 학력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분야는 영농교육이었으며, 놀랍게도 학력과 가장 무관한 분야는 여성농업인의 가정관리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학력별로 정리해 보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농업인들이 그 경영능력에서 가장 뛰어났으며, 그 다음이 중졸, 초졸, 무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은 고졸 및 그 이상의 학력과 중졸에서 각각 높았지만, 영농자금조달, 농업소득, 영농교육을 받은 정도 등의 다른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두 집단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 4. 여성농업인 리더의 전문인력화와 리더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농업인 리더의 전문인력화를 실현하고 그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과 단체활동 참여도를 높여야만 할 것이다. 영농교육은 30대와 40대가 주로 받고 있지만 그나마 참여비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그들의 단체활동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부족한 단체활동 경험이 곧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저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은 그들만의 교육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 양성 교육의 확충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라고 하겠다.

아울러 작목반, 농가주부모임,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의 생산자단체나 교육기관에 참여하면서 재교육을 받는 일은 새로운 정보와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이 절실

히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영농자금 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농협의 복수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한편, 회계 및 경영교육을 통하여 그 능력을 배양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농장경영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는 일도 이제는 필수적이다. 최근 들어 특히 요청되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 능력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영농자금 회계관리와 선별·포장·직거래 수행능력은 30대와 40대가 비교적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초창기라는 점에서 여성농업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산물 가격과 유통정보를 획득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만 한다. 이제 새로운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지역인들을 조직하고 「농업정보 119」를 초청하여 이러한 새로운 기법을 통해 앞선 농장경영을 실현해 가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여성농업인 리더들이 새로운 기술혁신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향상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우선 생산자단체에의 참여율부터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농업경영에 임해야만 한다. 특히 젊은 리더일수록 농업정책과 소비상향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만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사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바로 가정관리 능력이었다. 이는 곧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실현과 가사분담이 실현되지 못하여 자질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리더로 활동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차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려면, 무엇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가정관리와 지도력 연마에 매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 리더의 경영능력과 리더십의 향상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기개발 노력과 그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만으로 여성농업인 리더의 경영능력이 일시에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그나마 단편적으로만 전개되어온 그 동안의 정책만으로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 결국 여성농업인 리더의 개발은 그 필요성을 자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하고 연계해 가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 IV. 리더의 자기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앞서 살핀 바처럼,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개발은 문제제기의 역사가 짧은데다 그나마 단편적으로만 전개되어온 그 동안의 정책만으로 성공이 요원한 실정이다. 그 때문에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스스로 부족한 경영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스티븐 코비의 역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리더십을 경영 용어로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인생 관리를 위한 일상용어로 전환시켜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연 역작이다. 이후 그는 『원칙중심의 리더십』을 저술하여 “원칙 중심으로 사고하고, 원칙중심으로 실천하는, 원칙중심의 인간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sup>6)</sup> 이와 같이 그가 제시한 리더십 개발 원칙이야말로 의존적 단계에 머물렀던, 우리 여성농업인을 독립적 단계로 끌어올려 마침내 성공적인 여성농업인 리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하겠다. 그 때문에 이 책에서는 마치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 법칙처럼, 리더십의 기본 원칙을 다음 5장에다 소개하였다<sup>7)</sup>.

이제 여성농업인들은 과연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의문을 화두로 삼아 우리 여성농업인 리더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능력을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리더십 개발은 먼저 그에 바람직한 자기개발의 내용과 방향이 정립된 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교육 프로

6) 스티븐 코비, 『원칙 중심의 리더십』, 김경섭·박창규·김영사, 2001.

7) 이 책 129쪽에서 155쪽에 실린 이경숙의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1: 자아실현’을 참고할 것

그램과 교재가 갖춰질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1. 리더의 자기개발

무릇 리더로 부상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능력의 향상을 항상 도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들도 스스로 다음 8가지의 자기 개발 전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8)</sup> 먼저, 능력 육성에 전념해야만 한다. 특히 그릇된 관념이 스스로의 능력 향상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사고가 능력을 비약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더구나 재능은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소질 없어도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감수성을 연마해야만 한다. 특히 직감력의 향상에 노력하며, 이를 위해 “들으면서 기억하고, 현실에서 원리를 찾는” 시청각 훈련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스로 성취 동기를 부여해야만 한다. 여성들은 태도를 바꾸면 의욕이 생기고, 그러한 욕구 실현을 통해 일에 매력을 느끼며 자신감을 통해 동기 부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넷째, 어떠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실패를 성공의 계기로 삼아, 충격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서, 충동을 컨트롤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발산·해소시켜야 한다.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갈등 해소 요령을 익히고, 이를 행동으로 발산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여섯째, 리더는 자기방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자기의 약점과 대결하여,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일곱째, 창조력을 신장시켜야만 한다. 리더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힌트를 찾으며, 그리고 일상에서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리더는 항상 가설을 세워 실행에 옮기며, 이를 위해 정보와 원리를 찾아야만 한다. 여덟째로 집중력을 강화시켜야만

8) 전영환, 『리더의 자기 개발』, pp. 54-67, 농협중앙연수원, 2000.

한다.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집중할 수 있고, 특히 이해와 흥미가 그와 같은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리더는 목표를 세우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의 자기개발 방향은 다시 다음의 다섯 가지로 대체로 정리될 수 있다.

- 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룩한다. 내 일까지 정부와 농협이 해주지 않는다 (Self - Helf).
- ② 나 스스로 시동을 건다.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스타트할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다(Self - Start).
- ③ 능력과 자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Self - Control).
- ④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 나간다(Self - Drive).
- ⑤ 나를 위해 투자한다. 자기 의식의 10 퍼센트를 미래에 투자한다. 자기 수입의 10 퍼센트를 자기관리에 투자한다. 자기시간의 10 퍼센트를 자기연수에 투자한다(Self - Invest).

리더가 되려고 자기 관리에 나선 사람은 누구나 다음 4 가지의 욕구를 가지기 마련이다. 이른바, 건강과 같은 신체적 욕구,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려는 사회적 욕구,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정신적 욕구, 그리고 의미, 목적, 개인적 적합성을 갖고 공헌하려는 영적 욕구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리더는 농업인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4가지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선두에서 이끌어 가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21세기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필수요건은 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②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③ 탁월한 경영 감각을 갖춘 사람이 틀림없다. 그 밖에도 ④ “컴퓨터는 내 친구”라고 할만한 컴퓨터 실력과 ⑤ 탁월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아가 ⑥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영어) 실력을 기본으로 갖춘 사람이면 더 더욱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 2. 여성농업인, 비전을 갖자

무엇보다 여성농업인 리더는 비전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비전은 과연 어떠한 효용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로 비전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을 정해주며,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비전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한군데 집중시켜 일을 성취하게 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나치 독일이 만든 죽음의 수용소에서 포로들의 생존을 가능케 한 것도 바로 비전의 힘이었다고 전해진다.

마하트마 간디로 하여금 인도의 독립을 위해 전력투구하도록 재촉한 것도 바로 비전이었다. 평소 소심하고 질투와 두려움 불안감이 많았던 간디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좁은 성격이었지만, 그는 영국인의 불의를 목격하고 세운 비전과 목적 때문에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비전은 수입농산물의 질곡 속에서 벽찬 과잉노동으로 어려운 영농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농업들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마음가짐인 셈이다.

여성농업인의 “나의 비전 만들기”는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나의 비전에는 나의 소명이 투영되어야 하고, 이제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비전’과 ‘변혁시켜 초월하는 비전’을 통해 우리들의 절실한 과제가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리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무엇보다 스스로를 재발견하여야만 한다. 과연 나는 내 기분이 최상일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지를 알고 있는 것일까? 나의 재능과 자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내 생애를 통해서 추구하고 싶은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 나의 재발견

- 나의 기분이 최상일 때의 상황과 내용
- 내가 가장 행복할 때의 상황과 내용
- 내가 되고 싶은 사람
- 내가 언젠가는 꼭하고 싶은 것
- 내가 좋은 감정이 솟구치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될 때
- 나의 최고의 재능과 천부의 자질
-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 생애를 통해서 추구하고 싶은 목표

그러한 점에서 리더들의 자기 선언은 그 의미가 매우 색다르다. 왜냐하면 비전이 주는 열정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프로세스가 “자기사명선언서”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리더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자기의 총체적인 의식을 모아서, ① 공적인 삶(직장, 공동체, 사회활동), ② 사적인 삶(혼자, 가정), ③ 내적인 삶(자아의식, 양심, 독립의지, 상상력, 천부의 능력)을 윤택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내야만 한다. 이렇게 나를 유능하게 만드는 자기사명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그대로 실천해 가는 수련과정을 통해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① 스스로 겸손해지는 경험, ② 성스러운 느낌을 체득하면서, ③ 비전 실현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 3. 여성농업인, 목표를 바로 세우자

여성농업인 리더들의 자발성은 과연 어떤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갖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표란 언제나 정북향을 향하는 나침반의 원리와도 같기 때문이다. 목표 설정이란 비전, 가치, 원칙, 사명, 양심 등과 관련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목표설정의 SMART 원칙

S : Specific 구체적으로

M :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A : Attainable 목표를 너무 높지 않게

R : Realistic 현재 우선적으로 가치를 둘 수 있는 현실적인 것

T : Time limit 종료시한을 정함

여성농업인 리더는 그렇게 세워진 목표가 ① 우리 여성농업인의 비전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무엇을)?, ② 어떠한 사명과 요구,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가(왜)?, 그리고 ③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은 무엇인가(어떻게)?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목표설정에는 SMART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 세워진 목표가 과연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너무 높지는 않은지(Attainable), 가치를 현실 속에 두었는지(Realistic), 그리고 종료 시한은 정해졌는지(Time limit)를 따져보아야만 한다.

다음으로 목표설정의 단계로서는 아래의 6단계가 중요하다. 먼저 제1단계는 비전과 사명을 연계시키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리더들은 삶에서 ‘소중한 것’ 이라고 생각되는 것, 서너 가지를 나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대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갖고 싶은 느낌이나 감정을 다시 확인해야만 한다. 제2단계는 스스로의 목표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제3단계는 각 역할에서의 활동 목표들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맡은 바 역할에서 과연 그 무엇을 성취함으로써, 가장 멋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보는 훈련이 절실하다. 바로 아래에서 보듯이 나의 목표를 확정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나의 목표 확정

- 나는 이 분야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달성하겠다.
- 나는 이 정도 직위까지 승진하겠다.
- 나는 이 일을 통해 이 정도로 보람있는 일을 하겠다.
- 나는 나와 가족을 위해 이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 나는 사회를 위해 이 정도 공헌하겠다.

제4단계는 1주일 동안 꼭 추진해야 할 중요한 목표만을 골라서 주간 실천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또한 제5단계는 그에 맞춰 우선 순위를 정함으로써 하루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시간에 민감한 활동들은 왼쪽에 다 나열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오른쪽에 다 나열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택에 성실성을 발휘해야만 한다. 제6단계는 평가의 단계이다. 특히 다음 계획을 세우기 전에, ① 그 동안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성취했는지, ②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③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지, ④ 결정을 내릴 때 과연 중요한 것을 먼저 결정했는지를 스스로 따져보는 시간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달성의 과정에서 리더는 항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의 영역’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이른바 ①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여 우리의 성실성과 용기가 입는 타격, ② 비록 목표는 성취했지만 그 결과가 변변치 못해서 느끼는 참담함이 바로 그것인 셈이다. 끝까지 목표달성에 성공한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그 대다수가 시간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파브슨은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을 중요시한다고 지적하였을 정도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80 퍼센트의 결과는 20 퍼센트의 준비활동에서 생긴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참조해야만 한다.

이제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목표를 수립하고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세워나가든지, 아니면 먼저 순위를 정하고 이를 컨트롤하면서 시간을 관리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해 단기·중기·장기의 목표

를 재설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하여 긴급한 사안을 맞아 임기응변식의 대응보다는, 우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실행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개발은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교재개발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여성농업인 교육은 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전국 21개 대학, 1년간 32주), 농협 단위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농가주부대학 등), 농촌지도기관에서 실시되는 각종의 교육(농촌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교육 등), 농림부의 교육(국가전문연수원 농업연수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밖에도 현재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시군과 도단위의 각종 여성대학 등)과 각 여성농업단체 스스로의 자체교육 등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여성농업인 교육은 아직도 전문강사진의 부족과 표준강의안의 미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의 현장 수요에 발 맞춰, 현실의 농업·농촌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여성농업인 교재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교재개발 사업은 이러한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들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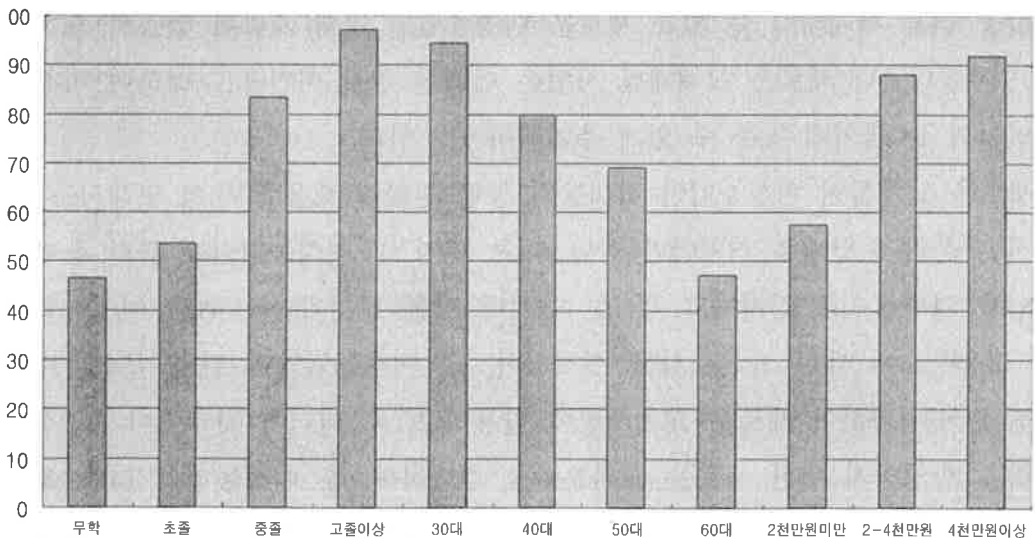
새로운 교재들이 여성농업인 리더들의 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6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이는 먼저 ① 여성농업인에 관한 용어와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② 눈 높이에 맞춘 교재개발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교육수요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며, ③ 여성농업인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여 새로운 교재개발에 활용하고, ④ 리더가 갖추어야 할 경영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분야를 개발하며, ⑤ 여성농업인 리더 육성을 위한 교재개발과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⑥ 개발된 교재의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올바른 여성농업인 리더의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수준별, 연령별, 교육대상별로 각각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여성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해 새롭고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재개발 사업은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은 남성과는 별도로 실시되어야만 효율적이다. 최근 실시한 필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만의 별도교육 필요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대 다수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다음 <그림 4>과 같은데, 특히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농업소득이 높은 여성농업인일수록 별도교육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들의 강력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자료와 교재개발은 전문성의 바탕 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그림 4> 여성농업인의 별도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



그럼에도 각종의 여성농업인 교육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존의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내용은 비록 여러 분야의 내용을 포괄하고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내용보다 일반교양·자녀교육·건강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그 때문에 장차 여성농업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전문인력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되, 각 기관들이 저마다 특징을 갖고 수위를 서로 조절하면서 전개되어야만 한다. 이제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최소한의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여기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명단과 연락처, 표준강의안, 그리고 그 강사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의 내용까지 실어둔다면 이는 더욱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의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교재와 교과과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 때문에 자금 및 노동력 동원, 농기계조작, 정보 및 의사결정 능력, 판매능력 등에 대한 전문능력 배양이 바로 여성농업인 교육의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농업발전과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개발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심지어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여성농업인 정책의 발전방향과 상충되는 내용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교재들은 다소 새로운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분석하기만 한다면 유용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따라서 여성농업인 리더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중복교육의 한계를 넘어 분야별로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을 홍보하며 그리고 '농업정책에서의 성 역할'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 특히 이는 농업발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전문농업인력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현대적인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며, 장차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촌 자녀교육의 전략도 반드시 담겨져야만 한다.

새로운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 실제적인 현장조

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만 하며, 아울러 보완적이고도 다양한 연구방법이 동원되어야만 한다. 결국,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종래 여성농업인 육성체계에 리더십이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이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농업 개발을 위한 시책의 핵심요소로서 새롭고도 체계적인 여성농업인력의 리더십 개발 방안이 정립되어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만 할 것이다.

## V. 마무리

남성 못지 않게 훌륭하게 교육시켜 놓았지만, 그 소중한 여성인력을 애써 사장시켜온 한국의 '여성권한척도'는 세계에서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2001년 현재 우리 나라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 61번째를 차지했을 뿐이다. 노르웨이가 36.4%, 미국이 13.8%, 일본이 10.8%인 여성의원 비율도 한국은 5.9%에 머물고 있다. 그 반면 여성의 문자해독율, 취학율, 평균수명 등에 근거한 남녀평등지수(GDI)는 146개국 중 29위에 달하여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sup>9)</sup> 이처럼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활동 욕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이 사회정치적 권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처럼 여성의 능력 발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의 존재는 다양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가 여성농업인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최근 들어 농가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현재는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농업인의 투하노동 시간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경영참여와 전문인력화는 요원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은 그들의 생산활동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그들의 지위와

9) 『한겨레신문』 사설, 2001년 7월 16일.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있으며, 특히 그들 가운데서 바람직한 리더십을 개발해 내는 일은 필수적이다. 역시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공은 결국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성농업인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문인력화와 리더십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농업은 우수한 여성농업인을 핵심적인 영농인력으로 확보하고 그들의 경영능력을 높여가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제 ‘농업인력의 부녀화’라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을 당당한 경영주체이자 여성 리더로써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이는 곧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서 소외된 농작업 보조자, 그리고 가부장사회에 편입된 가사노동의 전담자라는 차원을 넘는 농업전문인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여성농업인의 증가를 ‘농업인력의 부녀화’로 매도하기에 앞서 그들을 우수한 영농인력 확보하기 위해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영능력은 직업관, 경영의사결정 능력, 자금 및 노동력의 조달 능력, 생산기술 능력, 이를 바탕으로 한 높은 경영성과, 영농교육 및 단체활동에 대한 적극성, 가정관리 능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분담이 필수적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낮은 생산기술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과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은 영농교육과 생산자 단체 활동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30대·40대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농업인만의 별도 교육이 요망된다. 영농자금 조달과 영농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복수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회계 및 경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영 의사결정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농업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생산자단체에의 참여율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의 부족한 경영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이 요망되고 있다. 여성할당제의 확대 실시, 그리고 여성의 농업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경영교육을

확충하고, 장차 농학계 대학을 졸업한 젊고 유능한 여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개발의 문제가 제기된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그 때문에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스스로의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개발하기 위해 남달리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여성농업인 리더들의 자기개발은 먼저 그에 바람직한 개발의 내용과 방향이 정립된 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질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처럼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8가지 자기 개발 전략에 충실해야 하며,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 감각을 갖춰야만 한다. 또한 리더는 비전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비전을 가졌다 하더라도 리더에게 구체적인 실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것처럼 목표 설정이란 언제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을 관리해주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겠다.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하듯이 이제 여성농업인 리더들은 원칙에 맞춰 스스로 자기 개발을 실현하고 리더로서 성장해가야만 한다. 그러한 리더십 수업을 통한 자기혁신 과정이야말로 의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 여성농업인을 독립적 단계로, 그리고 마침내 성공적인 여성농업인 리더로 발전시켜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개발 전략은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여성농업인 교육은 아직도 전문강사진의 부족과 표준강의안의 미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때문에 현장 수요에 잘 맞춰 농업 발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눈 높이 교육이 절실하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은 일반교양·자녀교육·건강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넘쳐날 뿐, 여성농업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화와 이를 통한 리더십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여성농업인 리더들의 능력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전문능력 배양이 바로 교육의 중심과제로 부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개발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무엇보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한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농업인력의 리더십 개발전략이 하루 빨리 정립되어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실속 있게 지원하여야만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상북도·경북대학교, 『경북지역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여성농업인 정책심포지움논문집, 1996.12.
- 김영옥·김이선,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9.
- 농림부,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연구기관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8.
- 농림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연구기관 한얼경제사업연구원, 1999.9.
- 농림부,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안)(2001-2005)』, 2000.6.20.
- 박민선, 『EU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농협조사월보, 2000.7.
- 스티븐 코비, 『원칙 중심의 리더십』, 김경섭·박창규 옮김, 김영사, 2001.
- 신규환, 『칠곡지역 여성농업인의 노동실태와 활용방안』,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농촌개발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8.
- 이호철, ‘대구 근교지역 여성농민 문제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시정연구』, 제 18호, 대구광역시, 1998.
- 조희금,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 농촌지도자층 농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1998.12.
- 전영환, 『리더의 자기 계발』, pp. 54-67, 농협중앙연수원, 2000.
- 정기환,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12.



# 여성농업인의 현실 극복을 위한 과제

정 기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I. 서론

## II. 21세기의 농업과 농촌지역사회

1. 21세기의 농업
2. 21세기의 농촌지역사회

## III. 여성 농업인의 현실 문제

1. 여성 농업인의 노동력 구조와 영농활동
2. 여성 농업인의 노동실태와 복지 환경

## IV. 여성농업인의 현실 극복을 위한 과제

1. 여성 농업인의 전문 농업경영인화
2. 여성 농업인의 복지환경 개선

## V. 21세기의 바람직한 여성 농업인

1. 농촌여성의 정체성 확립
  2.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여성의 역할
-





# 여성농업인의 현실 극복을 위한 과제

## I. 서론

20세기에 들어서서 인류는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질적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류의 평균 수명은 두 배 이상 연장되었다. 생활기술과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안락한 주거환경과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물질적 번영의 이면에는 자원고갈과 지구환경 악화, 기후 변화에 의한 기상 이변 등이 나타나 인류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여성의 지위도 크게 변화해 왔다.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억압체제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의 권익을 확보하게 되었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차별이 남아 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의식화되어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가부장적 억압체제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고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노동 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여성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역할 과다와 이로 인한 노동 강도의 증

가,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아직도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제약되고 제도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문제는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된 농업과 농촌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에는 분명 지난 세기와는 다른 개발패러다임에 의해서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점들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은 산업화에 의한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문제, 과도한 도시화와 농어촌지역의 공동화문제, 열악한 사회보장의 문제, 인간성 상실의 문제, 지속적 농업에 대한 식량생산 문제, 식품의 안전성과 인류의 건강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립될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에 의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도 변하게 되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역할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다. 20세기에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던 농업은 생명공학기술과 정보 및 지식기반의 확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 변신하게 되고, 땀흘리며 힘들게 짓던 농사도 기계, 전자, 통신분야의 발달로 자동화되어 여성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직장으로서 인기 있는 직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에 밀려 버려지던 농촌지역은 깨끗한 물과 공기, 아름다운 환경을 찾는 도시인들에게 매력 있는 주거공간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여성 농업인은 20세기의 사회적 차별과 힘든 노동의 질곡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농업으로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인으로서, 전통문화와 품격 있는 생활문화를 조화롭게 가꾸어 가는 문화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 II. 21세기의 농업과 농촌지역사회

### 1. 21세기의 농업

21세기의 농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20세기의 농업과 구분될 것으로 전망된

다. 첫째는 농업이 고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으로서 친환경적이면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생명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농업이 전자통신과 기계공학 등의 도움으로 작업과정이 자동화되어 여성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 1) 종합생물산업으로서의 농업

21세기의 농업은 단순히 식량만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이면서도 인류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치료해 주는 기능을 지닌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bio-industry)으로 발전하게 된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은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맛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조절할 수 있는 농작물 신품종을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인체에 필요한 균형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영양소를 공급하거나 비만과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가축의 젖이나 오줌을 통하여 인체의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거나 조혈 작용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도 있게 된다.

20세기의 농업이 비료·농약과 높은 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하여 다수확을 이룩하였다면 21세기의 농업은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도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우수한 신품종을 육성할 수 있고 미생물농약, 천적 등을 사용하여 공해 없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친환경적 농업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은 가축을 이용하여 인체에 필요한 인공장기를 생산하거나 의약품 신물질을 생산하는 등 의료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와 고 에너지 생산분야로 확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업은 친환경

경적이면서도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첨단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된다. 21세기의 농업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새롭게 변신하게 된다.

## 2) 종합 농식품산업으로서의 농업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사회에서 농업은 기술과 경영과 정보기술(IT기술)이 결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20세기의 농업인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생산자에 불과했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은 상인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농업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스스로 가공하여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형태가 보편화된다.

따라서 농식품도 공산품과 같이 상품으로서의 브랜드를 지니게 되고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경영 및 판매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농업인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자에서 농식품을 종합적으로 판매·경영하는 최고 경영인(CEO)이 된다. 농업인 개인이 농식품의 상품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같은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들끼리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은 자연스럽게 회사형태로 운영되어 농업생산단체가 증가하게 되고 농업도 기업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농식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기호가 변하는 것도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식량부족 시대에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소재로서 식량이 필요했다. 그러나 식량부족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농식품은 인간의 한 차원 높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급 소비재가 된다. 즉,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간은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한다. 또한 고급스러운 향과 맛을 지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농식품은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식량의 개념에서 건강과 맛과 향을 추구하는

고급 기능성 소재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고 기능성 식품, 안전성 높은 식품, 신선도가 높은 식품, 맛과 향이 뛰어난 식품,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게 된다.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됨에 따라서 농업인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국가가 생산 목표를 정하고 생산물을 국가가 구매해 주던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해야만 판매되는 소위 소비자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인은 시장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소비자의 기호와 시장 구매 행태를 연구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수익성 있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 3) 자동화된 작업공정

20세기의 농업은 생산 과정에서의 힘든 노동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작업의 기계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기계화의 단계를 넘어 농작업의 자동화를 추구하게 된다. 대부분의 농작업은 기계화될 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전산의 힘을 빌려 작물과 가축의 생리·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된다.

자동화 공정에 의해서 대규모 양계장과 양돈장을 여성농업인 1인이 보조원 1~2인의 도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신선채소, 고품질 화훼류를 공장 생산 방식으로 연중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농작업은 고도의 정밀성을 지니게 되고 정밀한 작업 공정을 거친 농산물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농업인은 자신이 생산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함은 물론 국제 경쟁을 거쳐 외국시장에 수출할 수도 있게 된다. 농업인은 생산자이자 유통업자이고 국제시장에서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경제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은 화훼, 과수, 고급 채소류 농업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의 농업은 고도의 기술과 경영관리 지식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 2. 21세기의 농촌지역사회

### 1) 지식·정보중심의 지역사회

산업사회에서는 공장방식의 생산양식에 따라서 대량생산(mass production)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집중화(centralization), 전문화(specializ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가치가 사회의 구조적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집중화는 사람과 자본의 도시 집중을 야기시켜 도시화를 촉진시킨 반면 농촌지역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안된 전문화는 자동차 생산 조립 라인과 같이 단순작업을 전문화시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기계에 종속시키는 노동의 비인격화를 초래했다. 기술의 표준화는 대량생산체제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같은 규격과 같은 모양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하도록 획일화함으로써 다양성과 개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행태가 크게 바뀌게 된다. 유한한 지구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환경을 중시하게 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대량생산보다는 적정생산을, 집중화보다는 분산화를, 표준화보다는 개성화를, 전문화보다는 다양화를 선호하게 된다.

산업사회에서 집중화가 도시화를 촉발시켰다면 정보화 사회에서 분산화는 지방 소도시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거리와 공간의 개념이 약화된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 상거래가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의 대형 백화점, 대형 사무실, 대형 서점, 은행점포, 도매시장 등의 기능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의 상업적 업무 기능이 쇠퇴하게 되고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면 재택근무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깨끗한 물과 공기, 아름다운 환경을 지닌 농촌지역이 매력적인 주거지역으로 등장하게 되고 농촌지역의 산업활동이 다양해져 농촌지역이 활성화 된다.

정보사회의 개성화와 다양화는 농촌지역에서도 다양한 경제·사회·문화활동

을 창출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농촌지역의 건전한 생활문화는 인간성 회복을 갈구하는 산업사회의 도시인들에게 신선한 가치로 재평가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깨끗한 물과 공기, 아름다운 환경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생활용재로 높이 평가받게 된다.

## 2) 환경이 중시되는 지역사회

산업사회의 대량생산체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유발시켰다. 대도시는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물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생활방식이 친환경적으로 전환된다. 생활에 편리한 일회성성 소비재들이 비싸지고 사용과 폐기에 따른 규제가 강화된다.

생활하수와 산업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지역 단위에서 순환시스템에 의한 산업구조가 재편된다. 즉 지역단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강이나 쓰레기장으로 그대로 배출되기 전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지역 내에서 재활용하거나 완전 복원과정을 거쳐 정화시킨 후 배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제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각광받았지만 환경을 중시하는 21세기에는 오염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새로운 회계방식에 의해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환경이 중시되는 21세기의 지역사회에서는 공해를 유발하는 제조업보다는 친환경적인 농업이 각광받게 되고 농업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농촌·농업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 3) 인간 중심의 지역사회

산업사회에서는 급속한 이농으로 안면(face to face)중심의 작은 농촌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대도시, 대기업 중심의 비인격적 계약사회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토와 지구촌이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됨에 따라서 대도시는 소규모 도시로 분할되거나 활력을 상실하게 되고 농촌의 작은 소도시가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작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된다.

거대 사회조직 속에서 인간은 조직이 정한 규정과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피동체가 되기 쉽다. 그러나 작은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일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메카니즘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21세기의 작은 지역 공동체에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

### Ⅲ. 여성 농업인의 현실 문제

미래의 농업과 농촌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들의 현실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여성 농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이 낮고 생산 과정에서 여성 농업인들의 노동이 핵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농가 인구 중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1.6 퍼센트에 달하면서도 여성 농업인들은 전문적인 경영인으로서의 위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과다하고 노동환경과 복지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넷째, 농업과 농촌지역에서 여성 농업인의 현실 참여가 아직도 크게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 1. 여성 농업인의 노동력 구조와 영농활동

##### 1) 노령화와 저학력 문제

1999년도 농업기본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농가 여성 인구 중에서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78.8 퍼센트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주 종사

인력은 전체 농가 여성 인구의 63.6 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 퍼센트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성 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가 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인구 비중은 52.1 퍼센트이며 농업 종사자 중 여성 인구 비중은 50.6 퍼센트, 농업 주 종사자 중 여성 인구 비중은 52.5 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어 농업 종사 인력 중 여성의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 인력이 우리나라 농업 종사 인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젊고 교육받은 젊은 여성 인력이 집중적으로 이농한 결과 여성 농업인력은 노령화되고 저학력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 여성의 평균 학력은 6.4년으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평균 학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30대 이하의 농가 여성들은 고등학교 수준의 높은 학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0~40대의 여성들은 중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농업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받은 젊은 인력이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받은 젊은 인력이 대거 농촌을 떠나거나 결혼한 후 농촌지역에 정착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 2) 낮은 농업기술 수준 문제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노동 생산성이 낮고 여성 노동의 기계화 정도가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농업 기계화는 수도작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반면, 밭농사 부분의 농기계 개발은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수도작 중심으로 기계화가 진행된 것은 우리 나라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작농업의 기계화가 미진한 것은 전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업과정이 수도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수도작은 남성들이 주로 담당해 왔고 전작 부문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전작분야에 기계화와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업이 점차 기계화, 자동화되면서 남성들이 기계작업의 운전 조작을 담당하게 되고 여성들의 작업 영역은 더욱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기계화가 진전될수록 여성 농업인력은 점차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노동력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영농기술에서도 여성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은 현저히 낮다. 대부분의 여성 농업인들이 품종선택, 농약사용, 비료사용, 재배기술, 가격정보, 육묘 기술 등 농업기술 및 유통정보에 대한 숙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농업인들은 이와 같은 농업기술과 유통정보에 익숙하지 않아 농업생산활동에서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어 왔으며 여성 농업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작업이 남성 노동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 농업인들의 기계화와 농업기술 수준이 낮은 것을 여성의 속성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여성 농업인의 기술 수준이 낮은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여성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성 농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둘째, 여성 농업인의 기계화 수준이 낮은 것은 여성용 농기계가 개발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주로 작업하는 농작업 즉, 파종, 선별, 포장, 이식, 중경 제초, 포장관리기 등이 개발·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들이 의사결정권과 충분한 책임감을 지니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사결정권과 작업에 대한 책임감이 남성에 있을 경우 여성농업인은 보조적 위치에 서게 되고 농업기술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 농업인이 주로 참여하는 농작업 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는 농기계가 조속히 개발·보급되어야 하고, 여성 농업인이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

### 3)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 문제

농가 경영에서 가정경영은 주로 주부 중심으로, 농업경영은 주로 남성 가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이나 농산물 판매, 토지 구입 또는 판매, 은행대출 업무 등은 주로 남성 가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반면에 내구재 등 가정 용품의 구입, 음식물이나 옷 구입 등 가사 비용 지출, 자녀 교육과 상급학교 진학 문제 등은 주로 주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업생산 계획이나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대등하게 영농계획과 작업과정 및 농산물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여성 농업인의 노동실태와 복지 환경

### 1) 역할 과다와 과중한 노동 문제

여성 농업인들은 가정 주부이자 어머니이고 농업인이며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역할 수행에 따른 노동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도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 전체의 노동시간은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1일 평균 7.5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가정 주부가 1일 평균 6.1시간 노동하는 반면 취업 여성은 8.3시간을 노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농업인의 노동 시간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 농업인은 농번기에는 13.4시

간, 농한기에는 9.7시간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 가사일과 농사일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여성 농업인이 어린이를 육아하며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어머니일 경우,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노동은 너무 과다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들은 가급적 가정 일에 충실하려고 가정 밖의 일을 남편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농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가정 이외의 일에 대한 정보도 더딘 편이다.

## 2) 출산 휴식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은 여성만이 누리는 생물학적 특권이자 사회적 의무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건전하게 양육하는 것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자 건전한 사회와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 양육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임신 여성의 건강 관리와 출산한 여성의 적절한 휴식 및 산전·산후 건강 관리, 육아 지원 등은 건강한 2세를 생산하고 양육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미의 선진 복지 국가에서는 임신한 여성과 출산한 여성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출산한 여성과 영아의 보건 관리, 육아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나라의 헌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살려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 여성의 출산과 자녀의 양육은 개별 농가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자녀의 양육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가족 중심적 가치관이 강한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별적인 가정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 농업인,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주부는 농업의 계절적인 시급성으로 출산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 뿐만 아니라 유아의 건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농가 주부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전후 휴식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그리고 출산 휴식 부족으로 인한 농가 주부의 건강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한 경우 50 퍼센트 정도가 1~2주의 휴식을 취하고 있고 출산 전에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휴식을 취한 경우는 42 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50 퍼센트 이상이 충분한 출산 휴가를 갖지 못하고 농작업이나 가사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출산 후유증 등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 3) 육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2년간은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육이 가장 왕성한 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 어린이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언어 능력, 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의 대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에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은 아기의 인격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신생아의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출산한 여성은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약 2년간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여성 농업인의 경우 출산 후 아기가 혼자 놀 수 있을 때까지 아기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출산 여성 자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70.4 퍼센트의 농가의 출산 여성이 아기가 혼자 놀 수 있을 때까지 아기를 주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9.6 퍼센트의 경우는 조부모나 가족 중 한 사람이 돌보는 실정이다. 따라서 출산한 여성 농업인이 농작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기를 돌보아 주는 육아시설이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6.1 퍼센트가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 읍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면단위 지역에서의 영·유아 보육 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치원 시설도 읍지역에는 평균 3.6개가 개설되고 있으나 면지역에는 평균 1개 정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복지 증진과 농가 주부들의 경제활동 증진 및 농가 가정의 복

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육 시설이 없는 면에 대한 시설 지원이 필수적이다. 어린이 보육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어린이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비용이 농가의 경제사정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어린이 보육 시설 이용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도록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농가 거주지와 어린이 보육 시설이 입지하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어린이 보육 시설은 대부분 읍지역이나 번잡한 이웃의 면 소재지에 입지한다. 따라서 어린이 보육 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농가 주부가 어린이를 이와 같은 시설에 맡기고자 할 때 거리가 멀다는 부담스러움이 있다.

셋째, 어린이를 맡기는 시간이다. 농가 주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기를 맡아 주는 보육 시설에 아기를 맡기는 것이 농사일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 IV. 여성농업인의 현실 극복을 위한 과제

WTO 체제 이후 우리 나라의 농업도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고 이제까지 국가가 담당해 왔던 농업분야의 보호장치가 하나 둘씩 제거되면서 농업도 경영체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경쟁 대열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야흐로 한국 농업도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급자족형 가족농 체제를 지니고 있었던 한국의 농가는 농산물의 상품화, 브랜드 관리,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의 변화 속에서 가족농 단위의 개별적인 경영 보다는 영농조합법인이나 회사형태의 경영체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노동의 51 퍼센트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역할은 한국 농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더

욱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극복은 여성 농업인들은 물론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1. 여성 농업인의 전문 농업경영인화

### 1) 농업기술 및 경영 교육 강화

지금까지 여성 농업인은 농업종사자 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보조적 농업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농업인력의 51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력이 기술 수준이 낮고 창의성이 결여된 보조적인 위치에서 있다면 한국농업의 장래가 밝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기술을 남성못지 않게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농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고려가 주어 져야 한다.

첫째,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전문 영농 교육 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 기술 수준이 남성 경영주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현재와 같이 남성 위주의 영농 교육 과정에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여성들의 영농기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 과정에 여성 농업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여성 농업인들은 연령별 학력 별로 매우 이질화되어 있다. 따라서 연령층 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르게 나타난다. 50대 이상의 여성 농업인들은 일반작물에 대한 작물재배 기술과 농약과 비료 사용법, 농기계 운전 교육 등에 주 관심을 표명하는 반면 30~40대 중심의 여성 농업인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 관련 정보 처리, 농장 경영 관리, 작물 재배 기술, 특히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고등채소와 특작재배 기술에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 농업인의 이질성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셋째, 교육 과정이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영농 교육은 간단 명료한 현장 중심의 실기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이론 중심일 경우 쉽게 지루해 지기 쉽고, 따라서 교육의 효과는 반감된다. 작물재배의 경우는 핵심기술, 예를 들면 사과나무 전지하기, 전열 육묘상 만들기 등의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 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 농업인들의 연령별, 학력별 수준에 따라 교육 과정을 세분화하되 교육 내용도 일반적인 종합 과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 예를 들면 컴퓨터 정보처리, 하우스 포도재배기술, 육묘기술, 영농조합법인 회계관리 등으로 구체화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 교육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를 위한 교육과 같이 대중적인 교육은 그 대상이 일반적일 수 있겠지만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면 그 교육 대상은 그 분야의 영농에 종사하면서 교육 과정이 설정한 요건에 적합한 여성 농업인 중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 농업인들은 농가의 남성 경영주와 달리 영농 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기간과 시기에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다. 여성 농업인들은 대부분 주부들이므로 가정관리를 위해서 장시간 농가를 떠나 있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영농 교육은 가급적 농한기에 실시하되 영농 시기에는 단기 현장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 농업인들이 장시간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성 농업인 자신들이 보조자적 농업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전문가적인 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여성 농업인들에게 이와 같은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 2) 여성 노동의 기계화와 노동 생산성 향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의 기계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들

이 담당하는 노동에 대한 기계화가 효율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들의 노동생산성 향상, 힘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적극적 영농 참여 등을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들이 담당하는 노동을 기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성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률과 관련하여 그 동안 주장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남성 위주의 농업 기계화다. 그러나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이 낮은 것은 농기계가 여성 체위에 맞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여성들의 작업 분야에 적합한 농기계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주로 작업하는 분야의 농기계 즉, 선별기, 세척기, 파종기, 모종 이식기, 중경 제초기 등의 농기계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와 당근과 같은 근채류의 세척을 기계로 대체하면 손으로 세척하는 일에 비해 10배의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마늘이나 과일을 선별기로 작업하면 6~7배의 작업 효율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여성들이 손으로 하는 이와 같은 노동 분야를 기계화한다면 여성의 노동 생산성은 그만큼 향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은 기계 조작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입장에 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과학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기계에 대한 공포, 또는 기피증이 기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교육은 원동기 조작 원리에 대해서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기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계에 대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성 농업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농기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훈련이 실수요자를 무시하고 추진될 때, 즉 여성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트랙터나 이앙기 교육을 시키면 흥미를 잃게되고 교육의 효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 3) 의사결정 참여 확대

여성 농업인은 농업 생산에 과도한 노동력을 투입하면서도 보조적 농업 종사

자로 머물러 있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 농업인의 노동 투입은 피동적이 되고 노동의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들의 농업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외로부터 해소되기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와 같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농가의 농업 경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남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반면에 가정경영에 관한 사항, 특히 가사와 관련된 지출은 주부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몇몇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사 일을 남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남편이 주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여성 농업인도 영농설계 과정에서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내기나 파종작업 등 농사 일정 잡기, 수확한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기, 영농자금의 관리 등을 위한 의사결정을 남편이 주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경영에서 여성 농업인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여권운동이 농업 부문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 신장 등은 농가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평등적 가치를 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농촌 지역에 젊은 여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보다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서 농촌 지역의 남성들이 여성을 우대하지 않으면 결혼도 하기 어렵고 가정도 원만히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 내의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농가 여성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여성 농업인들의 현실 참여가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 참여가 확대되면서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남편 혼자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가의 부부는 농업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부부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농업경영과 가정경영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반자이자 협조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2. 여성 농업인의 복지환경 개선

### 1) 가사 노동 분담

농경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의해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노동으로 전문화되어 왔으며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여성 가구원 사이에서 분담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되는 현대의 농촌사회에서 직계가족의 유형은 차츰 축소되고 대부분 부부중심의 가족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가구원 중심의 가사노동 분담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자녀들도 고등교육 이수를 위해서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부족하고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농가를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여 자녀로부터의 가사노동의 분담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여성 농업인의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돕는 가족 구성원은 남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이 가장 많이 도와주는 가사노동은 시장 보기와 집안 청소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여성 농업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식생활관리 분야인 밥짓기와 설거지하기가 가장 적게 도움을 받고 있다. 세탁기의 보급으로 세탁이 용이해진 현대에서도 옷세탁에 대한 남편의 지원 정도는 매우 낮다.

이는 가사노동 분야에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의 분담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남성이 부업에 들어가는 일, 빨래하는 일은 금기였으며 이러한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 밥솥의 보급, 냉장고의 보급, 세탁기의 보급으로 이와

같은 분야의 노동 분담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가사노동에서 실질적인 노동분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통사회의 가치관과 고정 관념을 깨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서부터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각종 사회교육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농가의 가사노동에 대한 노동분담이 낮은 것은 남성의 협조 부족한 것만은 아니다. 농가 주부들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많은 여성 농업인 스스로가 남편이 가사 일을 적극적으로 돕기보다는 가끔씩 도와주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부부가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비율은 아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사 노동에서 남편의 노동 분담을 요구하는 정도는 6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령층의 경우 부부가족인 경우가 많고 가사노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부는 남편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취사와 세탁과 같은 기사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한옥의 부엌구조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전통적인 한옥 구조하에서 엎드리고 쪼그려 앉아 일하는 부엌에서 남편이 밥짓거나 설거지를 도와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부부간 가사노동에 대한 노동 분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부엌과 세탁장이 쾌적한 생활공간의 한 부분으로 도입되는 주택의 구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2) 출산 휴식제 도입

출산과 육아는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농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는 국가의 건강한 2세 국민을 생산 육성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비용으로 모성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출산 여성을 위한 출산 휴식 제도가 필요하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 여성들에게 필요 적절한 모성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농가 여성들과 같이 경제적 조건과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적절한 출산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선진 복지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의료보험이나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농가 여성의 출산 휴식은 출산 전 보다 출산 후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출산 여성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확보하여 출산 여성에게 지급하거나 출산 휴식기간 동안 타인을 고용하고 이 경비를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출산여성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3)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여성 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함께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에 영·유아 보육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면단위 이하의 행정 단위에 최소 1개 이상의 영·유아 보육 시설을 국가 지원 하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면단위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율이 낮아는 점을 감안하여 면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는 20~40명 정도의 유아 보육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면 소재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은 면 소재지의 영·유아 탁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마을회관 등 시설을 이용하여 작은 규모의 탁아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보육원의 보모는 농가의 젊은 여성이나 육아 경험이 많은 노령의 주부를 활용하되 이들에게 육아에 대한 기본 훈련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마을의 인력을 이용하여 영·유아원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유아 보육원의 개원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농번기에는 보모들의 근무시간을 늘려 농가 주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여성 농업인의 문화성 함양

농가 여성들은 도시의 여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문화적 낙후성을 더욱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과 함께 이들의 문화성 함양을 위한 각종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조직에의 가입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사회 모임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정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군단위에 농촌 여성 문화센터와 같은 여성중심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취미 교양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가 여성들의 생산조직 모임을 조직하여 영농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V. 21세기의 바람직한 여성 농업인

### 1. 농촌여성의 정체성 확립

남녀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제정과 더불어 여성들의 권익은 크게 신장되고 가부장적 사회가치와 가족구조의 틀을 벗어나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촌여성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가치 상실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공업으로, 농촌은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고 믿게 되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고 농촌은 떠나야 할 공간으로 잘못 인식됨에 따라서 젊고 교육받은 농촌여성들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대량으로 농촌을 떠났다.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젊은 여성들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 긍지를 느끼지 못하고 농촌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농업과 농촌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농업기술이 첨단화되어 생산성이 높고, 기계화·자동화에 의해서 힘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고, 평생직업으로 종사할 수 있다면 농업은 도시의 어느 직업 못지 않게 매력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 농촌이 공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정서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익하다면 농촌여성들은 도시인들이 부러워하는 공간에 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껴야 한다.

둘째는 농촌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가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전문적 농업인기 보다는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영농 보조자라고 인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영농 여성들도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여성들의 대부분은 고령의 저학력 소유자들이다. 이와 같은 인력구조로는 21세기의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이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젊고 교육받은 여성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여성 인력도 남성 인력의 보조자가 아니라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남성과 대등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발전에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도 다양한 직업이 창출되고 있다. 농촌여성들의 직업관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젊은 여성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다양한 경제활동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농촌여성에 대한 인력육성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기술과 농업경영기술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지식, 식물 조직배양 기술, 회계 및 재무처리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제조업분야, 유통 및 서비스분야의 기능사 육성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농촌여성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20세기의 농촌여성과 달라져야 한다.

첫째,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농촌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문영역에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농촌여성이 주부이든, 농업인이든, 비농업분야에서 활동하든, 자신들이 활동하는 경제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자기발전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 여성의 역할은 주부, 아내, 어머니, 마을주민 등 다양하다. 지난 세기에서도 농촌여성의 역할은 변함없었지만 가부장적 가치관을 벗어나 민주적이고 평등적인 위치에서 농촌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지도자는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21세기의 농촌여성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분야에서 주민조직을 이끌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 2.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여성의 역할

한국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이 대등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성장이 달성되면 사회발전이 저절로 달성된다고 인식되어 왔다. 이를 경제제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도로건설, 경지정리, 주택개량 등 하드웨어적인 건설이 지역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경제제일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환경, 문화, 교육, 도덕심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치가 소홀해 졌다. 특히 농촌지역은 경제성장과 물리적 환경이 상당부분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등 제 분야에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 낙후를 면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환경정비 및 보존, 전통문화 계승 및 생활문화 창달, 도덕심, 주민의 사회봉사활동 등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발전 정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분야에서 주민을 조직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민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다. 농촌여성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와 같이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단위의 사회조직으로 마을 총회, 영농회, 부녀회 등이 있다. 마을총회는 자생조직인 대동회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참석하지만 영농회나 부녀회는 정부 및 정부관련 단체에서 조직한 남성과 여성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농촌여성들은 이와 같은 마을단위 주민조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표권행사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단위에서 여성들은 마을가꾸기, 환경보존, 육아와 자녀교육, 노인문제, 부녀자 복지문제 등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시·군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읍·면·군단위 농촌여성조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는 생활개선회, 여성농민회 등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농촌여성들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여성의 복지, 육아와 자녀교육, 노인과 건강문제, 농촌환경 보존, 생활문화 창달, 도농교류, 농촌관광, 도덕재무장 등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군의회와 자치단체 및 농업관련단체서도 이와 같은 분야에서 농촌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이선,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7.
- 김종숙·정명채,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김주숙,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1988.
- 김주숙, 「농촌여성 문제와 정책과제,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념논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농림부, 「여성농업인육성5개년 계획」, 농림부, 2001.

농협중앙회, 「농촌부녀자의 의식과 역할」, 1984.

정기환, 「산업사회화와 농가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정기환, 새천년의 농촌여성과 지역사회발전, 「여성복지담당 지도력 개발 교육 교재」, 경기도농협지부 및 한국여성개발원, 2000.

조옥라,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가족구조에 미친 영향”, 「한국의 사회와 역사」, 일지사, 1991.

한경혜·장미나,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1), 1993.

# 농촌조직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정 금 주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

## I. 들어가는 말

### II. 농촌사회와 조직활동

1. 농촌사회와 주변환경의 변화
2. 조직활동의 중요성
3.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종류와 역할

### III.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1. 변화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2. 변화하는 농촌에서 여성농업인 조직의 중요성
3.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종류와 활동방향

### IV. 성공적인 여성농업인의 조직활동

1. 갈등 및 위기 관리
2. 재무관리
3. 정보관리
4. 점검 및 평가
5. 인력개발
6. 전략개발
7. 의사소통
8. 구성원들의 참여와 조직의 환경

### V. 여성농업인의 발전적인 자세

1. 지도자로서 여성농업인의 자기발전
2. 조직과 함께 발전하는 여성농업인
3. 조직원의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

## VI. 나오는 말

---



## 농촌조직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 I. 들어가는 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만족스럽게 살고 싶어하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역시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라면 남인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없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듯이 가족 속에서 함께 생활하여야 할 것이고, 자기네 가족만 깊은 산 속에 혼자 떨어져 살 수 없듯이 같은 마을에서 사는 이웃들과도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만족스런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농산물을 내다가 팔려고 해도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모습을 크게 그려보면 농촌이라는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와 내 자신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최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이후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같은 문제를 볼 때 아마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혼자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 농촌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고 식량을 공급하는 생명유지의 근원지이며 미풍양속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곳으로 도시민에게는 여가생활

과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를 가지게 해주는 곳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특히 미래 인류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강한 생명과 환경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유지 또한 누군가의 손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농촌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중요해진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정보기기의 발전과 정보량의 증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도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제는 농촌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여성농업인도 이러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조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의 힘을 단체의 목소리로 표현해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조직활동이며, 한 사람이 하기에 어려운 일을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멋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공간이 또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조직활동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자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II. 농촌사회와 조직활동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 없듯이 조직 역시 그 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속해있는 사회와 따로 떼어 생각 할 수 없다. 즉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그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건과 자신들이 참여하는 조직의 환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활동들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먼저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 혹은 앞으로 자신이 활동하게 될 지도 모를 모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1. 농촌사회와 주변환경의 변화

여성농업인이 생활하고 있는 곳은 바로 농촌이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변화가 나와 우리의 조직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농촌사회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농촌지역 전체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1999년의 농가인구는 138만 가구 421만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9.0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는 1990년보다는 245만명이 감소한 것이며 1995년에 비해서도 64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인구의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95년의 농가인구는 1990년 666만명보다 181만명이 감소한 485만명이었는데 같은 기간동안 농촌지역으로 볼 수 있는 군부(郡部)의 인구는 1990년 1,110만명에서 1995년 957만명으로 153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의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농촌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어 농업인구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농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못하면서 농업인구는 급속히 노령화되었으며 농촌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출산을 통해 새로이 젊은 사람들을 농업노동력으로 길러내기란 정말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도 농업에 주된 종사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거의 절반의 농사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농정방향이 가족농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에는 미약했던 농업노동자 또는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은 주민들의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생활이나 관심사가 판이하게 달라진 데 더해 WTO 체제하에서 농업인들간의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전통적인



공동체로서 마을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사회의 장기변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영농조합·계모임이 1985년에서 1997년까지 사이에 40 퍼센트가량 감소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마을 대신 면이나 군 등 보다 큰 지역을 단위로 재편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민들이 생활기능을 중심으로 보다 큰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인 관계망(network)을 형성하는 생활터전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농업인들도 이제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의식을 갖추고 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사회 생활자로서 역할을 해온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약을 통해서만 변화의 와중에 있는 농촌이 인간답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끔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농업노동의 보조자 그리고 한 가정의 주부로서 더 충실해야했던 역할에서 이제는 농업노동자 또는 농업경영자로서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좋은 예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3개 사단법인체 회원 중 여성회원수는 1990년 3.9 퍼센트에서 1997년 31.6 퍼센트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 구성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그만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농업인력이면서도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 2. 조직활동의 중요성

전통적 농업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모든 생활이 농업위주의 생활이었고 따라서 문화의 발전도 농경문화를 기초로 발전하였다. 그 속에서 생겨난 수많은 세시풍속이나 전통놀이, 관혼상제 등도 농업생산주기와 그 맥을 같이 하여 왔다. 대부분의 국민이 농민이었고 문화 자체가 농경문화를 기초로 한 당시의 조직들은 대부분 자생적 농민조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공업화를 겪는 동안 농촌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농경문화를 기반

으로 한 많은 농촌의 풍속과 흔히 일컫는 전통문화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으며, 농촌의 다양한 전통적 농민조직들도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고, 새로운 농업 생산구조에 맞는 또 다른 농민조직들이 조직화되고 있다. 과거의 농민조직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로 노동력을 공동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농가당 1명씩 동원되어 모내기, 김매기 등의 생산노동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두레와 품앗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판매, 가공, 농자재의 생산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조직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생산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판매, 가공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농업유통 또는 판매조직은 농산물의 공동판매뿐만 아니라 공동저장 창고의 운영, 농산물 가공공장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구성원은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일 수 있다. 과거에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의 생산만 담당하였으나 농업인조직의 활성화에 따라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가공까지 직접 농업인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농업유통, 판매조직에는 비농업인이 참여하는 도매시장과 각종 농산물 가공공장의 형태도 있다. 또한 농업생산 및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생활과 관련된 활동까지 포함하는 조직으로 개별 농가를 중요한 독자적인 농업경영주체로 인식하면서부터 영농조직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영농설계, 기계화영농단 등과 같은 조직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우리 나라 농업·농촌 개발이 지금까지는 주로 국가적 필요에 의해 하향식으로 수행되어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인들이 농촌·농업발전의 주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농업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화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세계 농업환경의 급변과 우리 사회 내에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이어서 이러한 활동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관련된 이익은 자신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혹은 지역단위의 정책결정에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

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의견수렴은 ‘조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종류와 역할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는데, 설립범위에 따라 도단위나 전국단위의 광역조직과 시·군, 읍·면단위의 지역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광역조직으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양돈협회 등과 같은 연합회 단체,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같은 협동조합 조직을 들 수 있다. 지역조직으로는 시·군, 읍·면단위 농민회나 농업경영인조직, 단위농협 등과 같은 연합회나 중앙회 등의 하부조직으로 존재하는 조직과 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등과 같이 지역단위에서만 존재하는 조직이 있다. 지역조직은 주로 구성원들간의 친목도모와 공동생산·판매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획득에 주안점을 두고 조직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국적 조직은 농민의 권익증진이나 농산물 가격지지 혹은 가격안정정책, 농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의견 제시 등 농업생산자의 수익증대와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시책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기존의 사업방향을 수정하도록 정부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즉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결성을 지원한 단체인가 농업인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농업인 스스로 조직을 설립하였는가에 따라 자생적 조직과 비자생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생적 조직으로는 전통적인 동족집단, 계, 두레, 품앗이, 사랑방, 우물가모임, 대동회, 농악단을 비롯하여 신용조합, 4H동문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자생조직은 농업기계화의 진척 등으로 공동작업과 같은 경제적 필요성이 적어지자 대부분 해체되었고, 오히려 농업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익단체 성격의 단체가 활발히 조직되었다.

세 번째로 법적 지위에 따라 조직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법, 농

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지개량조합과 같은 조직들이 있다. 농지개량조합은 최근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지만, 그 외에도 민법에 의한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화훼협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이 있고 상법에 근거한 하림, 오경농장 등도 있다. 이밖에도 특별히 법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조직된 계, 두레, 대동회 등과 같은 각종 마을단체들이 있다.

넷째로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농업인 조직은 크게 생산 또는 경제적인 조직과 관리적·정치적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조직은 대부분 소규모 경영의 불리성을 극복하고자 모인 조직으로서 생산기술 혹은 경영방법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생산기술의 개량·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지원과 공동작업 등 생산을 위한 조직, 공동구매, 출하, 가공 등의 유통을 위한 조직, 자금조달 등의 신용사업을 위해 모인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적 조직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처럼 생산과 유통사업을 겸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생산과 유통 그리고 신용사업을 다 같이 수행하고 있다. 관리적·정치적 조직은 정부의 시책에 영향을 주려는 로비활동을 행하는 정치적 이익단체와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

정치적 이익단체의 성격을 띠는 조직으로는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각종 연합회 혹은 중앙회조직과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과 같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조직이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조직들은 단체의 수익 증대와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정책을 자문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불리한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정치적인 사업과 함께 산하조직에 생산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행하며, 대형유통사업의 추진, 신용사업 등의 경제적인 사업도 함께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조직의 예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회 등이 있다.

### Ⅲ.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 1. 변화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sup>1)</sup>

##### 1) 더욱 소중해지는 농업과 농촌의 지킴이 역할

요즘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할 것 없이 모두들 정보화니 인간복제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 수입개방의 자유화로 인해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21세기에는 농업인도 정보화에 뒤져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언가 복잡하고 무척 소란스럽고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간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야말로 눈만 깜박하고 나도, 하루 밤만 마음놓고 자도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전문가들은 이미 미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대표적인 과학기술로 생명공학기술(BT : Biotechnology)과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을 들고 있으며, 이를 통한 무한경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농촌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시작된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할 문제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식량·환경·에너지 문제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생명이 연장되면서 급증하게 될 인구와 그에 따른 식량문제, 과학기술로 더욱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자연환경 문제는 인류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세계는 환경과 식량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명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기구를 출범시키고 각종 규범들을 제정하여 쾌적한 공간과 식량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로 농업의 역할에 있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과의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 2) 식량공급 뿐 아니라 식량문제 해결의 자원을 창조하는 역할

인간의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생명공학이

1) 김경미(2001)에서 전문인용.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을 이용하면 흔히 쌀 한 톨을 고구마 크기로 키울 수 있다고 상상하듯이, 앞으로 100억에 이를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대표적인 지식산업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경작지가 한정되어 일정한 생산수준을 뛰어넘기 힘든 농업에 이용하면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컴퓨터계의 황제로 불리는 빌게이츠는 “21세기에는 땅에는 생명공학, 하늘에는 정보통신이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이 농업에 이용되면서 오히려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종자 등 유전자원의 확보이다. 이는 농업자원인 작물이나 가축 같은 생물체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소재로 활용되어 의학계나 산업 등 다른 분야에까지 응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농업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즉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원을 안정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국가가 앞으로 강대국이 된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제 농업은 이러한 무궁무진한 생명공학의 소재를 길러내는 기초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미 유전자 형질이 전환된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우리도 곧 실용화를 앞두고 있어 소비자를 중심으로 형질전환 작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논밭에서도 이러한 작물이 재배될 날이 머지 않았으므로 농업인도 이에 대한 의식과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제 농업인은 단지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 미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원을 창조하는 사람이며 그 절반은 여성농업인의 몫이다.

### 3) 미래 인류가 살아갈 공간을 지키고 가꾸는 파수꾼이자 정원사의 역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이다. 과거에는 공해업체들이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이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환경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과다해진 상품소비도 원인이라는 사

실이 인식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경친화적인 소비양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별로 문제되지 않았던 농업생태계도 지금은 다수성 품종 재배를 위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등으로 논에서 새우, 미꾸라지, 우렁이를 찾기 어려워졌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의 대상이 된 것이다.

각 국가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면 기상이변이 일어나 큰 재앙을 불러오고 농경지가 사막화되고 토양·물·공기가 오염되어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불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다양한 협약을 통해 전 세계인의 공동재산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시대로 불리는 21세기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환경에 유해하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모든 산업의 경쟁력도 환경에 대한 건전성에 따라 좌우되게끔 되었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가 재배하는 농작물이나 재배방법, 농사에 사용하는 자재 등 모든 것에서 환경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과 소비에 관한 다양한 실천대안들은 거의 여성에게 의존하는 것이 많다. 더욱이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4) 농업을 정보화하여 2·3·4차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경제인의 역할

세계은행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의 폭발은 수억명의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할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에서 뒤쳐지는 국가는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정보혁명이 개발도상국가에는 큰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이며, 금융·기술·의료 등의 분야에 어떻게 접근하는 지가 이들 국가의 생활수준과 건강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할 것”이라면서 그 증거들을 제시하였고, 앞으로 정보격차가 빈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의 농업분야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정보의 혁신은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농업인이 얻어낸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연구자가 다시 새 종자와 기술을 개발해내면 이를 농업인이 적용해보면서 농업

생산량을 다시 증가시키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설명을 통해서 보면 농업인은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도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사람도 됨을 알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창출하는가가 농가의 소득을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이용하고 창출하는 농업인은 누구인가?

앞으로 다가올 정보사회는 여성들에게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여성노동력은 근력보다는 지력과 창의력, 그리고 섬세하다는 특성 때문에 정보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조건으로서 사회진출에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산업의 특성과 과학기술에 의한 물리적인 제약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노동력은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진전은 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참여공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보화는 소비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생산과 유통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반면에 농산물 판매시장이 가락시장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무한히 열린 사이버 공간으로 넓어졌으므로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 여성농업인은 더 많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 5) 그밖에 앞으로 달라질 여성의 역할

지금 농촌에서는 인구의 감소로 농업노동력도 부족하고, 영농형태도 벼농사 중심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 작목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시설재배농가의 증가는 여성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농업경영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주류화) 위한 입법활동과 여성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응한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성숙하게 되었다.

통계를 보면,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이 1970년 28 퍼센트에서 1999년에는 53 퍼센트로 늘었고, 농업노동투하율도 1970년 33 퍼센트에서 1999년 47 퍼센트로 늘어나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남성이 짓는 농사일만 조금씩 도와주었지만 시장지향적인 상업영농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은 농업의 규모도 커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이러한 농업의 경영은 물론 농산물의 포장과 유통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와 기술 중심의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분야도 전자상거래·사이버마켓 등이 빠른 속도로 커가면서 이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도 상당히 늘어났다.

즉 전통적인 가정주부와 농업보조자에서 농산물 생산을 남성과 동등하게 분담하거나 오히려 주도하는 생산자, 농업경영자(manager),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마케터(marketer), 여러 가지 형태의 농외소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물론 농업정보수집가,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판매 및 경영관리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 2. 변화하는 농촌에서 여성농업인 조직의 중요성

여성조직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조직활동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변화하는 농촌사회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고, 농가에서 부딪치는 문제들도 혼자서 해결하기란 점차 어려워지면서 협업 혹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노동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각 중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정보교환의 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집단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조직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숨은 능력을 개발하며 공동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협동심을 함양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는 장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농업인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생활활동 범위가 넓어지

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며 사회교육 기회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간의 의견 조정을 위한 타협, 통합의 훈련을 통하여 민주적, 협동적 시민의식이 고양될 수 있고 조직의 일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능력 개발과 지도력도 배양된다. 또한 모여서 뭉친 힘을 크게 발휘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적·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조직은 그 활동을 통해서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신의 변화는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농업은 단순히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조사, 생산계획, 직접생산, 유통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의 차원으로 발전되고 있고, 수입개방 등의 외부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농가의 경쟁력부터 높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필요한 부분에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자 자생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의 교환과 스스로를 위한 정책안들을 만들고 있으며, 또한 이미 여성농업인들이 가족단위에서 농업경영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많은 정책을 현장 가까이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관련기구들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방정부는 농업인이 생활하는 현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중앙정부보다 농업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 현장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나 현장의 목적에 부합한 정책안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방농정의 방향이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요구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농업인의 조직활동은 더욱 중요하다.

### 3.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종류와 활동방향

여성농업인의 조직도 일반 농업인의 조직과 그 구성 목적이나 활동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성원이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상당히 다른 경향이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전국단위 규모로서 각 지역별 모임체 연합의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농업인 조직체는 크게 4개 단체가 있다. 이들 조직은 구성원의 성격이나 활동 목적, 활동내용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 1) 생활개선중앙회

생활개선중앙회는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 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농촌의 여성지도자로서 농가 생활의 질 향상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농촌 발전과 농촌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은 지역사회에서 생활개선 과제 및 각종 학습활동을 선도 실천하고 그 결과를 주변에 과급하는 여성지도자로서 농촌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이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출발하여 1977년 국무총리령에 의하여 부녀조직으로 통합되면서 새마을부녀회의 '생활개선부', 1990년에는 농촌지도자중앙회 생활개선분과위원회로 활동하다가 1994년 농촌진흥청에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로 등록하였다. 주요 활동은 건전한 가정 육성 및 활력있는 농촌사회의 형성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행사, 농촌 소득향상을 위한 농축산물의 생산·저장·가공식품의 개발 및 판매, 농촌생활환경 가꾸기 및 보전활동, 전통문화 계승 및 효의 실천, 농촌과 도시회원간의 교류, 농촌의 여성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및 선진국의 생활개선 연수, 또한 조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소득활동 및 기금조성 등이다. 2001년 1월 현재 172개회 82,000여명으로 중앙, 도 및 시군 단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협에서는 1977년 '새마을부녀회'로 단일화된 이후 종전의 부녀회를 1992년

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해왔으며, 시·도지회 등에서 이미 별도로 육성해왔던 농협부녀회를 1993년부터 젊은 농가주부모임으로 구성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주부가 서로 협력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진 영농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농가주부의 지위와 권익을 신장하여 농촌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1995년에 통일된 '농가주부모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1996년 7월 전국단위 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1999년 말 농림부에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담그기, 휴경지 농산물 생산 등 회원 공동활동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사업, 소득작목 경영기술·농기계·농업정보화 관련 교육 및 정보 교류, 농촌 복지증진과 농가주부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농촌·도시 교류사업, 농촌 생활개선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회원의 자질 향상 및 자기개발사업, 회원의 친목도모 등이다. 특히 이들은 농협의 부녀지도사업과 연계된 사업 개발에 적극적이며, 농협에서는 조직활성화와 여성의 농협참여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조합원 가입확대, 조합이사회 여성참여, 조합에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주부로서 읍·면, 시·군, 시·도 연합회 및 중앙연합회로 구성되어있고 현재 회원은 3만1백5십여명이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과 상호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3)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농림부 소속 단체로 1996년 전국 농업인 후계자 부인과 여성후계자들로 구성된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 확보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의 제반문제 해결 및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농업경영 기술의 보급과 교류, 교육·의료·문화·생활개선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조사연구와 상담, 여성농업인의 여론 조사와 건전한 정책건의, 각종 자료 출판과 회보 발행, 교육 및 연구 발표, 국제교류와 해외연수, 각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연대와 교류 활동,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조직이 결성된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회원확보와 조직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농업인후계자의 부인과 여성후계자로 확정된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읍·면, 및 시·군, 시·도 및 중앙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회원은 3만여명이다. 이들은 특히 생산자로서 여성의 문제 해결, 농촌지역 문제 해결, 여성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대활동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up>2)</sup>

1985년부터 ‘여성농민운동의 통일과 자주성 모색을 위한 노력’을 계기로 1988년 ‘전국여성활동 간담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전국여성농민조직 활성화 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989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설립되었다. 그동안 1985년의 쇠고기 수입반대와 소몰이 시위, 1987년 수세거부운동, 1989년 여의도 농민대회, 1990년 UR반대 전국농민대회 등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농업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여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체 사회운동의 중요한 부분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여성농민조직 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마을, 면, 군, 도 여성농민 대중의 당면투쟁을 지원하고 자주적 여성농민 조직을 건설함’을 활동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 여성농민의 지역사회에서 역할 확대를 위한 활동,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 활동,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 등이다. 조직은 마을단위 분회, 읍면 지회, 군회, 도 연합회, 중앙 연합회로 구성되며, 현재 56개 군이 가입되어 있고, 30개 군에서

2) ‘여성농민’이라는 용어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여기에서는 ‘여성농업인’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며, 이 단체와 관련된 설명에서는 ‘여성농민’이라고 쓰기로 한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국여성농민회 설립에는 1970년 중반 이후로 이어진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역활동들이 바탕이 되고 있다. 가톨릭농민회나 기독교농민회의 여성분과의 활동, 특히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가톨릭농촌여성회의 활동들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IV. 성공적인 여성농업인의 조직활동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여성농업인의 조직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성공적인 조직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대개의 조직은 초기에 몇몇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친목을 도모하거나 특정한 일을 하면서 모이다가 점차 회원도 늘어나고 체계를 잡아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며, 이러한 조직들이 점차 많아지고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연합회 활동으로 커가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직을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조직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징에 대하여 학자들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지지하는 단결력과 유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응집력', 집단 구성원의 공통된 심리적 경향 내지 감정적인 분위기로 나타나는 '풍토', 집단이익을 공동으로 달성시키려는 의도 및 구성으로서 아직 실현되어 있지 않는 '성취목표', 집단이 그 구성원들에게 기대하는 올바른 행동양식인 '규범'과 구성원을 규제하는 '통제,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 및 방식 등에 관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단 구성된 마을단위 모임, 읍·면, 시·군, 시·도 혹은 중앙연합회 등과 같은 조직도 잘 관리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사실상 해체의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이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상대적

으로 회원이 많은 조직일수록 조직의 활동목적이 뚜렷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도자들의 의견대로 활동 방향을 정하거나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조직이 깨어질 위험이 더 많아지게 된다. 특히 농업인 조직은 구성원간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설립되므로 운영 또한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경험에 의존하는 점이 많다. 성공적인 여성농업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고려해야할 사항을 살펴보자.

## 1. 갈등 및 위기 관리

조직에서의 갈등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단기 혹은 장기간에 걸쳐 서로 의견이 같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갈등의 원인은 서로간의 가치, 태도, 일하는 방식의 차이, 자원 활용에 대한 경쟁 등으로 비롯되며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 자신 내부의 갈등, 개인과 다른 개인의 갈등, 조직과 개인의 갈등 또는 외부 환경요소와 조직의 갈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이 잘 극복이 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직이 침체되고 조직 내 구성원끼리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방해함은 물론 조직의 와해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위기란 개인이나 조직에 잠재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의사결정을 말하는데 위기의 원인은 고조되는 갈등을 방치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위기와 외부 환경요인 등의 작용으로 인한 예방 불가능한 위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 내 갈등과 위기가 없을 수는 없으며,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방향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 2. 재무관리

조직의 자금을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재무관리란 조직의 자금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방식으로 확보·증대, 이용 및 보호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무관리는 필요할 때 항상 자금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증대시키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해, 조직의 자금을 최대한 보호하고 수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나누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대되는 우선 순위를 정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정책, 재무관리체제, 절차 등을 조직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 3. 정보관리

정보는 가공된 자료로서 대안들 가운데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꼭 필요하다. 올바른 의사결정은 조직에게나 그 조직의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가(정보의 양), 시기 적절하고 적합한 정보인가(정보의 적절성),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정보의 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 전달하는 정보처리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집된 정보에 의해 환경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것은 물론 성장 기회나 위협을 알고 이에 필요한 자기 조직의 능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변화 등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점검 및 평가

점검 및 평가는 대개 조직내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진다. 점검과 평가의 목적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조직이 계획했던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 평가목표의 설정과 사업목표의 분석, 조사항목의 결정, 조사자료의 수집, 조사결과의 정리와 분석, 조사결과의 활용방안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 5. 인력개발

농업인 조직에서 인력개발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동기화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은 학습자로서 성인의 심리적 특성과 경제적 환경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욕구 분석, 조직목표에 따른 인력개발 목표 수립,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농업인 조직에 있어서의 교육·훈련은 전문가의 강의, 선진지 및 선도농가 견학, 실험·실습 등의 방법으로 조직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조직이 튼튼하게 유지되기 위한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6. 전략개발

전략이란 조직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하는 대안을 말한다. 전략은 조직의 등대와도 같이 조직이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준다. 전략 개발은 조직의 장기적인 미래, 조직이 추구할 임무와 목적,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와 기타 활동들,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 즉 인력, 자금, 전문가, 시설 등의 활용과 같은 중요한 선택을 포함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활동, 운영계획 등에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의 개발은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목표 부여하기, 과거 조직활동 또는 구성원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기, 구성원들이 개별 문제가 아닌 조직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와 목표 속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전략적 사고와 명확한 미래 제시, 조직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적 방법, 한정된 자원의 활용과 새로운 자원에 대한 활용계획, 조직 구성원 끼리의 협력적인 참여와 관계(팀워크) 형성, 조직이 처한 환경의 변화방향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등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전략을 개발하는 사람 혹은 조직에게 주어진 시간과 비용, 직관력, 기

획력 등에 따라 그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의 선정기준 명확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에 대한 확인, 조직의 전략에 대한 문서화, 필요한 자원 확보, 계획된 조직의 전략목표 실천 및 보완 등의 과정을 거치면 유용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7. 의사소통

조직의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구성원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작용으로서 전달하는 정보내용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농업인조직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잘 되어 있으면 정보내용이 잘 전달되지 못하면 각 구성원 혹은 하위 부서별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된다. 이러한 조직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장애요소도 줄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구성원 자신이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직 내에서는 상호 신뢰하면서도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8. 구성원들의 참여와 조직의 환경

구성원들의 참여는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서 결정된 전략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조직원은 자신의 임무에 만족하고 조직원으로서 사기가 높아지며, 자신이 참여한 결정이 실천될 경우 조직의 목표 달성도 쉬워진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결정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도 반감을 줄이고 공감을 얻기가 쉬우며 이를 통해 구성원의 개인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때로는 조직에서 거부된 의견을 낸 사람은 소외되기 쉽고, 반대의

견을 낸 사람들끼리 단결하게 되면 조직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직의 지도자가 해결할 수 없는 참여를 계속 기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좌절시키거나 지치게 하거나 아무 성과 없는 결론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원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지면 당연히 그 조직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엔 조직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은 현재 수입개방 등 매우 민감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조직도 이러한 농업환경과 밀접하게 움직이게 된다. 농업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법률·정책적, 기술적, 자연적 환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특히 농산물 시장과 농업구조의 변화, WTO 등 국제기구의 출범과 세계경제체제의 재구성, 우리 국민의 농산물 소비수준 변화와 같은 경제적 환경이나 가치관, 생활양식, 전통, 관습과 같은 사회적 제도와 태도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 농업과 농촌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다시 평가하여 도입하게 되는 ‘논농업직불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부서의 설치’ 등과 같은 법률·정책적 변화는 농업이나 농가의 생활 뿐만 아니라 농업인 조직활동에도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V. 여성농업인의 발전적인 자세

### 1. 지도자로서 여성농업인의 자기발견

지역사회에서 앞서가는 지도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여성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여성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이며, 때로는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농촌에서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모두의 바램일 것이다. 행복한 생

활은 하루하루 만나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신에 대한 이해야말로 보람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자기를 발견하고 심성을 계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실천해 보는 것도 좋다. 여기에는 거울응시법, 인생심판법, 시간대조법, 시한부인생 각본짜기 연습, 소속확인법, 긴장이완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거울응시법은 거울을 10분 정도 똑바로 응시하면서 자신을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나서 ‘나의 첫 인상은? 외모나 특징은? 보기 싫다고 생각되거나 자랑할 부분은? 더 좋은 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해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생심판법은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지난날부터 현재까지를 ‘내가 걸어온 길’이라는 한 시간짜리 영화로 상영한다고 가정하고 상상하여 관람해본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다음 ‘무대는 주로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영화의 즐거위는 무엇인가? 감독이나 주역 또는 조연급 배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관객들이 도중에 지루해하거나 흥분할 만한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 영화의 전환점은 어디인가? 영화는 어떻게 끝나고 있으며 관객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영화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라는 영화를 속편으로 만든다면 앞의 영화와 어떻게 다를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고 답해보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시간대조법은 자신이 생활한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하루, 일주일, 한달 또는 일년 단위로 어떤 일에 시간을 얼마나 썼는가를 구분해보면서 평가해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할 때는 종이에 써 가면서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지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자기 자신의 수줍음과 열등감 극복하기, 다른 사람 이해하기,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기, 나의 성격과 심리 알기, 나의 인간관계 특성과 장단점 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여성농업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환경인 가정 내에서 부부 또는 부모-자녀, 고부간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2. 조직과 함께 발전하는 여성농업인

혼자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요즘은 농촌에 홀로 남겨진 여성노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 역시 혼자서 외딴 섬에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외로움 혹은 고독감이라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성농업인 역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어울려 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함께 잘 하려고 시작했던 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에 대한 사랑과 뚜렷한 삶의 목표, 긍정적인 태도, 최선을 다하는 열의 등이 있다면 갈등이나 문제가 생긴다 해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여성농업인 조직은 바로 이런 여성농업인 개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개인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서 얻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배울 수 있는 배움터가 필요하다.

이제는 예전처럼 누군가 뛰어난 지도자가 가르치거나 정부기관이나 단체 등의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평택시 팽성읍의 배 작목반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기술을 정하고 나서 각각의 기술분야에서 가장 앞선 사람들을 직접 찾아나서거나 모셔와서 강의를 듣고 실습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밖에도 폐교를 이용하여 컴퓨터방을 꾸미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컴퓨터를 배우는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혼자서 하기 어려우며, 특히 오늘날 농가와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연과 더불어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농촌이 자리잡는 데에는 여성농업인 조직의 역할이 클 것이다.

## 3. 조직원의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

대개의 조직 또는 단체에서 회원의 단합을 위해 수련활동을 많이 계획한다.

수련활동은 심신을 단련하고 협동정신과 봉사정신을 북돋우며 평소에 배운 지식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견주어 보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생활방법을 익혀 지역사회에서 지도자로서의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수련활동은 실내보다는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야외활동에 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야외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야외활동을 떠나기 전에 주최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정능력을 점검하고 참가자의 연령층, 프로그램 효과, 장소의 크기, 시설, 지도자의 능력 등 운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기본계획이 세부계획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참가대상자들의 요구와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활동목표를 뚜렷이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참가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또한 참석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되도록 야외활동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과 운영방법, 식사, 장비 등에 대해서도 세밀히 계획하여야 하는데,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에는 작목에 따라 바뀐 시기가 다르므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어떤 조직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사일을 조정해서 해두고 가사일도 분담을 하거나 집을 비울 때를 대비하여 가족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장만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준비기간도 여유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를 회원끼리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하면 참여하는 회원의 관심도 높일 수 있다.

야외활동에서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캠프파이어(camp fire), 촛불 의식 등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회원끼리 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줍음이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원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수줍음을 극복하고 주위에 있는 회원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면, 먼저 ‘대화하기 연습’을 들 수 있다. ① 상대방 칭찬하기 ②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말하기(날씨 등) ③ 자기 소개하기 ④ 도움을 요청하는 말 해보기 ⑤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시하는 말 하기 ⑥ 자기 자신의 사소한 약점을 공개해보기 ⑦ 대화가 길 때와 끝났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끝내는 순서로 해서 상대를 바꾸어가며 반복하거나 상대가 바뀔 때마다 주제를 바꿔주고 1~2분씩 대화하게 하는 방법을 써도 좋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방법이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표현한 자기 소개 혹은 주제에 맞는 말을 짝이 되었던 사람이 대신 발표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로는 ‘역할연습’이 있다. 이러한 역할연습은 갈등이 있는 문제 해결, 함께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이 가정주부로서, 생산자로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연극과 같은 형태로 해보는 것이다. 이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역할이 주어질 수 있으며, 공통의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끼리 역할을 나누어 해봄으로써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문제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는 ‘메시지 전달하기’가 있다. 이것은 회원간에 신뢰를 갖게 하고, 서로 일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갈등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똑같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같은 일이라도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먼저 단순한 내용전달법, 무언의 감정 파악법, 감정전달법 등이 있는데 조를 나누어 할 수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 전체가 한 번에 참여할 수도 있다.

① 내용전달법 : 맨 앞의 사람이 1분 이내에 전할 수 있는 말의 내용을 적고 다음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하고, 다음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여 맨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들도록 큰 소리

로 말하고 나서 처음 사람이 적었던 내용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어디서 왜 차이가 생겼나를 참여한 사람끼리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② 무언의 감정 파악법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앉은 다음 짝지어진 두 사람이 교대로 3분 정도 어떤 감정이나 의사를 눈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한다. 단, 그러한 감정표현은 짝지어진 상대방도 알지 못하도록 각자가 마음속으로만 결정하여 표시해야 하며, 3가지 이상을 표현해서는 안되고 손짓이나 말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그렇게 6분이 지나면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 및 의사를 그 순서대로 각각 말하게 하고, 어느 정도 정확한가를 서로 검토하게 한다. 또한 차이가 난다면 어디서,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한다.

③ 감정전달법 : 처음에 내용을 전달받을 사람만 빼고는 모두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서 등을 돌리고 앉는다. 그러면 사회자는 처음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껏속말로 전해준다. 예를 들어 ‘시아버님이 매우 편찮으셔서 당장 입원을 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데, 제작년에 빌렸던 농사 자금을 상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작년 겨울 폭설 때문에 토마토하우스가 무너졌는데도 보상도 받지 못해서 별 다른 소득도 없었고, 게다가 올해는 가뭄으로 제대로 파종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 와 같은 상황들이며, 이런 상황들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만들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처음 사람은 등을 돌리고 앉은 다음 사람을 돌려 앉히고 1분 정도 그 감정을 전한다. 이 때에도 말을 하면 안되고 표정과 몸짓 등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 사람을 비롯하여 참여한 사람들이 전달받은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서로가 느끼는 느낌의 공통적인 점과 차이점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본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회원들의 상황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기존의 방법을 조금 바꾸어 해보는 것도 좋다.



## VI. 나오는 말

다가오는 21세기는 “3F의 시대”라고도 한다. 즉 여성(페미닌 : Feminine), 감성(필링 : Feeling), 가상(픽션 : Fiction)의 시대를 의미하는 이 말은 곧 여성이 지닌 섬세함과 무한한 상상력이 비로소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날개를 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미래의 인류 생존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과 환경과 정보라는 세 축이 모두 여성농업인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 데에도 천명 이상의 손을 거쳐야 하며,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잠깐 졸거나 성실하지 못했을 때 그 차를 탄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농업의 주된 생산자라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당연히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귀한 직업이 또 있겠는가?

지금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따라 상세한 지위를 관련법에 규정하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공동 농업경영주로 인정하여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맞는 사회적 지위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한 일보다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위란 그 역할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충분히 발휘되었을 때에 더욱 값진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여성농업인은 힘든 현실 속에 살고 있긴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넓게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조직활동은 이러한 자세를 서로 배우게 하고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다. 좋은 기회, 행복한 미래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라 했다. 여성농업인들이여,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자.

## 참 고 문 헌

- 김경미, 여성농업인의 법적 개념과 지위에 관한 새로운 접근,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생활과학 22(1) : 19-22, 2001.
- 김경미,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가꾸는 여성농업인, 과학원예 2001. 5월호, pp.114-118, 2001.
- 김경미 외, 여성농업인의 지식·정보화 현황과 금후방향, 한국농업정보과학회, 한국농업정보과학회지 1(1), pp. 21-36, 1999.
- 김문조, 정보화와 여성의 지위 변화, 아태여성정보네트웍센타 아시아여성연구소, 1998.
- 김성수 외, 농민조직의 리더십 유형과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 한국농촌지도학회지 4(1) : 73~89, 1997.
- 김이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생활과학 20(1) : 51~55, 1999.
- 김현숙, 여성농업인은 전문직업인,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생활과학 20(1) : 62~70, 1999.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사업통계자료, 2000.
- 농촌진흥청, 새 천년 ! 밝고 지혜로운 농촌여성지도자 의식 만들기, 2000.
- 농촌진흥청,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실천, 2001.
- 정기환, 농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조옥라, 농촌여성의 조직활동 현황과 육성방향,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생활과학 20(1) : 71~75, 1999.
- The World Bank Group, World Development Report 1998/99 : Knowledge for Development, 1999.



# 여성농업인 정책,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유 병 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 I.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정책

### II.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1. 농업경영주로서의 지위 향상
2. 농업정책 결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3. 여성농업인의 농업단체·농협에의 참여
4. 사기 진작 및 직업의식 고취

### III.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1. 여성 우계농업인의 확대
2. 여성 생산자조직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4. 영농능력 인증제 도입
5. 여성농업인용 기계화·자동화 추진
6.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강화
7. 여성농업인 창업자금의 신설
8. 농업관련산업에의 진출을 위한 여성인력양성 활성화

### IV.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1. 농가도우미(helper) 제도의 확대
2. 자녀보육서비스의 확충
3. 자녀교육 지원서비스의 강화
4.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5.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6.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 실시

### V.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체계 강화

1. 법령 정비 및 여성정책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2. 정책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3.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인프라의 확충
4. 여성농업인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5. 여성농업인 단체의 활성화

### VI. 향후 바람직한 여성농업인 정책의 방향

---



# 여성농업인 정책,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 I.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정책

우리 나라는 1960~70년대 이후 산업화·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과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은 소외되고 농업인은 사회적으로 천시당하는 사회구조로 변했다.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 확보,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의 개선, 복지혜택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받으면서 고통을 감수해 왔다.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갈수록 증대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 정책적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듯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농업생산에의 참여는 계속적으로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여성이 없으면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즉 쌀 생산이 감소하고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채소, 과수 등 성장작목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농업생산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농업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며 사회적인 직업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업활동에 대한 기술이나 훈련기회에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

라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또한 농민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더해가는 농업개방과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주체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농은 여성농업인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유럽연합(EU)이 경우만 하더라도 각 나라별로 다양하지만, 여성농업인의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수혜받을 수 있도록 공동경영인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들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농장경영의 안정과 여성농업인 개인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또한 각종 농민단체에서도 회원의 자격을 가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늘리고 있다. 또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질병에 대비한 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주기에 변화에 적응하여 농장경영의 안정을 확보하고 여성농업인을 보호함으로써 젊은 여성농업인이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노동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의 활력 증대와 21세기 농업·농촌이 요구하는 농업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우 1995년 1월부터 농림수산부(현 농림부)내 농촌인력과에 여성농업인 담당부서를 두어 여성농업인에 관한 처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뿐만 아니라 1996년 2월에는 농촌여성정책 자문회의를 구성하기도 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젊고 유능한 여성을 농업인후계자로 우선 선발해 육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후계자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많은 부문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농업인의 전문농업인력화 지원을 위해 1999년부터 농업·

1) 이에 따라 도(道)의 경우 농정국의 양정과(현재의 농정과 농촌인력담당), 군(郡)의 경우 산업과(현재에는 농정과·산업과 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음.

농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2000년에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였다. 농림부는 이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 나아가 이는 여성농업인이 국민생존권과 직결된 식량 안보를 지켜줄 농업경영활동의 주체임을 공감하는 바탕 위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부응한 경영능력 강화·지위향상·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광역의 지방정부들도 2000년부터 ‘새천년·새지역, 여성과 함께’ 등의 캐치프레이즈 하에 여성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의식 제고, 지식기반 사회의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 어려운 여성 보호와 복지서비스 강화, 여성의 역량 결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 장기계획(2001~2020년)」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은 크게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체계 강화 등 4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sup>2)</sup> 여기에서는 여태껏 전개되어 나온 여성농업인 정책들과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 1. 농업경영주로서의 지위 향상

가족농 형태의 농업에 여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각 가족의 생애주기나 가족원

2) 이러한 분류는 농림부가 발표한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에 따른 것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여성정책 중장기계획(2000.6)」에서는 보건의료, 공공부조,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여성사회참여지원, 성주류화 등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의 취업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종래 이들을 지칭하는 ‘농촌여성’ 혹은 ‘농가주부’라는 표현은 이들이 직업활동으로서 행하는 농업노동이 반영되지 않은 용어들이다. 그 때문에 이들의 농업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용어로서 국제적으로 ‘여성농업인(woman farmer)’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다양한 형태로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농촌지역에는 연령과 성에 따른 전통적인 역할 분리가 엄격한 편이다. 그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스트레스 가중 및 노동의욕의 저하를 낳고 있으며, 나아가 젊은층 여성들의 농촌정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농사보조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더군다나 여성농업인은 노동부담, 재산소유, 농기계 조작, 사회활동, 제도 등에 대해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촌여성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는 첫째 단독 및 공동경영주로서의 경영주, 둘째 경영주인 가족원(주로 남편)을 돕는 형태, 셋째 경영주인 가족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 넷째 법인을 조직하고 법인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둘째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1〉 성별 연령별 농업주종사자의 전망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여성비				여성비	
30세 미만	41,876	32,295	43.5	74,172	27,767	24,072	46.4	51,840
30대	97,284	114,893	54.1	212,177	75,014	85,268	53.2	160,281
40대	168,579	207,868	55.2	376,448	126,246	133,477	51.4	259,723
50대	228,341	307,444	57.4	535,785	173,228	189,672	52.3	362,900
60대	343,097	379,922	52.5	723,018	248,339	324,428	56.6	572,767
70대 이상	179,505	146,894	45.0	326,400	178,028	156,253	46.7	334,280
계	1,058,683	1,189,318	52.9	2,248,000	828,621	913,170	52.4	1,741,791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의 추정치, 2000.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및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경영하는 가족농장 일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가구소득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한 사회적 지위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소위 '보이지 않는 농민(Invisible farmer)'으로 평가된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은 첫째, 이들이 직업인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여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제약되어 직업활동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둘째 농민단체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고 이러한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자신들을 대외적으로 대변할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독자적으로 사회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이미 독립적인 직업여성으로서 상당정도의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도시 취업여성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즉 이혼의 경우나 남편이 사망했을 때 가족농장을 승계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뿐 만 아니라,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보장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으로부터 도시여성에게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2년 신농정의 추진 과제의 하나로 가족원간의 '가족경영협정'을 맺도록 유도해가는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이다. 이 협정은 가족원의 노동보수, 노동시간, 수익분배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참가하는 파트너십 경영을 골자로 삼고 있다.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에서는 농지의 공동소유권을 전제로 여성에게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의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 나라도 여성농업인을 경영 파트너로서 공동경영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부합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인으로 육성한다는 목표가 없이는 가족농에 기반한 농업의 재생산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녀간, 세대간에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대하려는 노력은 이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 및 고령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한 의식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방법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영농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시 남녀평등의식교육 이수 의무화, 영농교육 프로그램내 남녀평등 의식교육의 포함 의무화, 영농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시 부부공동명의 농가에 대해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전업농이나 후계농업인력 육성정책에서 부부노동력에 의존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들의 농업경영 참여도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농업인을 공동의 경영파트너로 정부가 공인함으로써 여타 부문에 그것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각 농가에서 노동에 대한 보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2. 농업정책 결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1999년 12월말 현재 농림부 산하 21개 농림정책관련위원회<sup>3)</sup>의 위촉직 위원은 149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31명으로 여성참여율은 20.8 퍼센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아직 목표율(23 퍼센트)에 미달하고 있으며, 시·군 농정심의회 등 지자체의 농림정책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농업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낮은 것은 관련분야의 여성전문인력 부족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정책이 입안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여성농업인의 시각에서 정책을 사전검토하며, 현장의 불만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전문

3) 위촉직 위원이 있는 위원회는 11개임.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1999년 12월 말 현재 데이터베이스(D/B)에 올려진 전문여성위원수는 약 300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의 농업관련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이 30 퍼센트로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의 설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심의회 산하에 별도로 여성농업인 분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 3. 여성농업인의 농업단체·농협에의 참여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농업관련 단체는 대부분 남성 조직과 여성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조직활동이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정 활동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민단체에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고 농민단체 내에도 여성위원회와 같은 분과를 두어 기존의 여성농업인 단체가 적극적으로 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96.8)와 한국여성농민연구소('96.9) 등 여성농업인단체가 설립 인가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참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에의 참여가 경영주(여성경영주 포함)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와 두 번째는 가족농업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에게도 참여가 허용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복수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여성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특히 개정된 농협법에서는 2인까지 허용된 조합원 제한제도와 가입조건을 폐지하여 여성에게도 조합원 가입은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러나 1998년 현재 농업취업자의 47.1 퍼센트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조합원 가입운동과 함께 각 계통기관에 여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여성위원회의 회장이 회원농협과 중앙회의 여성이사를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농협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의 복수조합원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입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시 요구되는 '출자금' 부담과 홍보 부족때문에 아직도 여성농업인의 참여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1,132개 지역농협에서 여성이사는 총 14명, 여성감사는 2명, 여성대의원은 193명, 여성조합장은 전무한 실정으로 중앙과 지역의 차원 모두에서 여성조합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낮은 참여율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낮은 대표율은 농협 내 여성복지사업의 축소와 여성분과위원회의 활동 저조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표 2〉 농협조합원, 준조합원의 성별 연령별 현황(1999년)

(단위 : 명, %)

구분	30세미만	30~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이상	계
남자	22,119 (1.3)	150,880 (9.1)	323,691 (19.5)	472,225 (28.5)	458,080 (27.7)	212,609 (12.8)	1,655,736 (100.0)
여자	2,101 (0.6)	14,180 (4.3)	43,554 (13.2)	109,980 (33.5)	120,962 (36.8)	54,108 (16.5)	328,753 (100.0)
계	24,220 (1.2)	165,060 (8.3)	367,245 (18.5)	582,205 (29.4)	579,042 (29.2)	266,717 (13.4)	1,984,489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현재 농협에서는 통합농협의 역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조합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05년까지 여성의 조합 참여 비율을 50 퍼센트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협동조합 정관 개정을 유도하여 현행 농협조합원 가입시 개인별 출자형식 보다는 가족단위 출자형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농협 의사결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군 지부 및 지역농협당 1명 이상 여성 대의원 및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4. 사기 진작 및 직업의식 고취

여성농업인은 힘든 농사와 가사노동, 사회 문화 인프라의 미비 등 도시와의 생활환경 격차에서 전반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직업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농업생산 활동에서의 의사결정이 남성 위주로 진행되고 또한 농촌지역에 잔존하는 강한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부부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농업경영 결과에 대한 여성의 성취감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주체적 직업의식과 성취동기 부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전문인이라는 주체적인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 ‘세계여성농업인의 날(10월 15일),’ ‘여성주간(7월 첫주)’에 전문 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상을 수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신지식 여성농업인의 선정을 지역별·작목별로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현장체험 기회로서 기존의 해외연수에 여성농업인 참여 및 ‘세계여성농업인 대회’ 등 국제행사 참가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농업인 리더쉽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등이 장기과제로 남아 있다.

### Ⅲ.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 1. 여성 후계농업인의 확대

후계농업인제도는 1981년에 도입되었으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들은 1994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후계인력 선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가산점(50점/700점)을 부여하고 20 퍼센트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우대조치를 시행한 결과, 1992년 여성 후계농업인의 비율이 2.4 퍼센트에서, 1999년에는 20.3 퍼센트로 증가하였다. 현재 부부 후계인의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열려있

으나, 선발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탈락율이 높아 실효성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층에서 배우자가 후계인인 경우 여성농업인도 전문 영농에의 능력과 의욕이 높은 경우가 많으나 심사과정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성들이 적지않게 탈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부부 후계인 활성화에 대한 지침 등을 통해 선발과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생산수단의 부부 공동소유 가구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여성 30 퍼센트 할당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표 3〉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실적

(단위 : 명, %)

구 분	합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후계자수	65,504	9,000	9,000	8,340	9,730	8,227	8,526	7,862	4,819
여성수	5,038	213	267	442	595	707	823	1,011	980
여성비율	7.7	2.4	3.0	5.3	6.1	8.6	9.7	12.9	20.3

<자료> :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 2. 여성 생산자조직의 육성

현재 생산자조직은 대체적으로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작목반의 경우 1999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2만개가 넘는 정도로 농촌 생산자조직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에 대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매우 저조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조직활동은 대체적으로 생산활동과 거리가 먼 부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에의 참여가 낮아 생산·유통관련 기술습득과 정보접근에 애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농업인 중

심의 영농법인, 작목반, 영농연구회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기술 습득, 정보접근을 강화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재배, 과수, 전작 등 여성농업인 주작목 분야인 여성작목반 및 영농조합의 육성을 위해 여성이 대표인 생산자조직에 대한 대출보증제도와 특별 융자프로그램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생산자조직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민원서류 발급과 법률·경영문제 등을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여성생산자 조직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려고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여성으로서 겪는 가족갈등, 학대, 성폭력, 사별, 이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 발생 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가 전혀 없다. 따라서 여성복지 서비스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여성농민회 등 지역단위 여성농업인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3.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농업연수부, 농촌진흥청과 시도·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시·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농업연수부에서는 여성농업인 경영자반, 귀농자부인반(초보여성농업인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단위농협에서는 주부대학(여성대학), 상설취미교실, 부녀교실, 농기계·영농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여성농업인들의 절반 이상이 상설 취미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6개 농과대학(경북대, 공주대, 안동대, 순천대, 제주대, 충남대)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일환으로 여성전공 등을 선도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육이 도단위 농업기술원의 '농촌여성지도자교육'과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여성 과제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교육내용의 대부분이 교양



및 일반의식 교육, 생활개선 교육 등에 치우쳐 있다. 특별히 여성을 별도로 교육하지 않고 있는 농촌진흥청(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전업농교육, 농기계전문교육)과 농협(작목반 분반교육, 병충해방제, 유기농법 등 신지식 농업기술교육)의 일반농업인 교육에서의 여성참여율은 10 퍼센트 정도에 머물러 있어, 그 참여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여성농업인 교육 대다수가 여전히 여성농업인보다는 농촌여성 내지 농가여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인적 특성이나 영농 활동 등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인 집합식 강의로 진행되는 교육이 많아, 그 실효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농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영농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경영교육이 필요하다.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밭작물, 원예작물, 축산 등에서 농작업 효율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기술·신품종 등의 영농기술, 설비운용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은 농업을 모르는 강사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전문농업인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가사와 농사일로 바쁜 여성농업인들로서는 교육을 위해 도 단위 기관은 물론 시·군 단위 기관에도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사업과 시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과 같이 교육 전달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성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간대, 탁아시설, 기숙사 등 교육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기관별 차별화된 교육의 실시, 교육분야 및 전문성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교육 활성화, 친여성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기관간 네트워크 및 종합적인 교육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농업인 교육기관이 다음 연도 교육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홍보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이 미리 1년 수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

육프로그램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특정분야의 기술과 전문성을 중시하여 농업인 출신의 강사를 발굴하는 등 강사진 육성 및 강사은행 운영에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으로서 전문적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을 활용한 단계적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일방적 주입식 강의교육의 관성에서 탈피한 현장실습 및 견학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농업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모델 개발 및 교재 보급에 힘쓰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작목 및 신품종 재배기술, 농산물가공·상품화, 저장 및 유통 관련 교육, 전지·전정이론 및 실습, 토양관리 및 병충해 방제, 친환경농법 실습 등 여성농업인의 전문영농기술 교육 강화에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접근하기 쉽게 농한기와 야간시간대 교육을 증설하는 등 교육시간을 조정하고 지역단위의 사랑방교육,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의 이동식 교육, 현장순회교육을 늘리기로 하였다. 또한 기숙사, 탁아시설 등 부대시설 확보 및 서비스 제공하는 친여성적 교육환경 또한 정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교육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과학기술, 농기계 등 여성대상 전문교육에 지역별 주요품목의 핵심영농기술 교과목을 편성한다. 예컨대 전국단위 수준에서는 최신 기술정보를 원하는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전문교육의 실시, 도 단위에서는 지역특화품목 및 농기계 전문교육의 실시, 시·군 단위에서는 영농(농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용 농업경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영기록장 기장방법 교육, 농업경영관리 전산프로그램 활용법 교육, 노트북 PC 및 CD-ROM에 의한 현장방문 및 상담지도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컴퓨터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지역 내 농과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설치를 유도하고 고급 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농업인대학' 또는 '여성농업인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여 여성농업인이 준학사 또는 학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 학점인정제 실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또한 대학의 학점인정제도 범위에서 전문교육을 포함시켜 여성농업인의 전문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4. 영농능력 인증제 도입

장기적으로 영농능력 인증제에 대한 시행방안을 연구하고 필요한 기반을 조성토록 한다. 예컨대 여성농업인의 성취동기 유발과 사기진작을 목표로 시범적인 ‘과정인증제’를 추진하여 특정 교육과정 수료 후, 평가를 거쳐 인증 수여토록 한다. 인증을 받으면 각종 농업분야 정책대상을 선정하거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위촉시 우대하고 여성농업인의 날·여성주간 중 각종 공공시설 무료 이용 특전을 부여한다. 이러한 인증 획득 이후 재인증을 받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해 전문화를 유도해 간다.

#### 5. 여성농업인용 기계화·자동화 추진

농가인구의 노령화·여성화 추이에 따라 여성의 농작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남성의 참여도가 높은 벼농사의 농작업은 기계화가 완성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여성참여도가 높은 밭농사와 농산물 수확후 처리작업은 인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여성 및 노령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농기계의 개발 및 개량 요구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원예작물의 10 아르(a)당 노동투하시간은 벼에 비하여 매우 느리게 감소하고 있어 생력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 4〉 농작업별 기계화율(1998년)

구 분	벼농사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두류, 서류
평균 기계화율	98%	40%	45%	33%	37%

<자료> : 농림부,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년.

이제까지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기종으로 밭작물 농작업용 기계, 세척·선별·결속·포장용 기계 등 10여종의 기계가 개발되었으나, 가격이 비싸거나 복잡하여 농기계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이동식 작업의자, 다목적 작업대, 안전사다리, 파종기 등 농작

업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기구 23만 2천점을 보급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보조기구의 개발 및 농기계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을 기계화·자동화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노동생산성 제고 및 노동부담 경감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먼저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현재의 동력 이앙기 등 기존 농기계 및 농기구의 개량이 필요하다. 여성이 쉽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여성체위에 맞게 레버, 시동장치의 자동화·개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의 기계화 요구도를 조사한 후 여성에 맞는 농기계 개발에 착수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벼 육묘관리, 밭 및 원예작물의 파종·정식, 포장관리작업, 수확, 세척, 선별, 결속 등이다.

또한 여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밭기반 정비사업의 연차적 추진이 필요하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경지정리, 용배수 개발, 농로설치 등 생산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 6.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강화

디지털농업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판매·유통·기술 등에서 빠른 정보교환과 획득, 활용의 필요성이 점점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림수산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농업정보기반의 확충, 정보의 생산 및 정보교육의 강화에 주력해왔지만 아직도 농업정보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며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활용 인식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재 농업인을 위한 컴퓨터교육은 이동정보화 교육과 농업정보화 기초교육의 농촌현장 집합교육, 농업정보 119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농가방문교육, 그리고 농업정보화 전문교육(농림수산정보센터)과 생산자단체 교육(농협중앙회)인 중앙소집교육 등이 있다. 그러나 1999년도 현재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은 29.3 퍼센트이고, 1999년 12월 말 기준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 회원

중 여성비율은 12.9 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정보화에 대한 여성농업인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교육기회를 확충하고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농촌현장 집합교육, 농가방문교육(농업정보 119 서비스)과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확충을 통한 농촌현장 순회교육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의 농업정보화 전문교육과 농협의 생산자 단체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농촌 생활정보, 육아, 교육 및 문화 정보, 의료·사회복지 정보 등 여성농업인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정보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정보의 중요성 인식의 확대, 회원간 영농정보, 농사경험, 농사기술 등을 상호교환할 수 있고, 지역의 영농현황과 농업시책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자게시판, 동우회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 7. 여성농업인 창업자금의 신설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농업으로의 전환 또는 틈새농업인 벤처농업 등의 분야에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직 허브 재배 등 일부 분야에서 새로운 경영 시도를 하는 여성농업인 외에는 극히 소수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계 고교 및 대학을 졸업한 디지털 여성세대의 지식과 기존 여성농업인의 현장경험의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여성농업인이 생산·가공처리한 농식품을 젊은 여성세대가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판매를 지원하는 형태로 세대간 분담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전통문화보존·관광·휴양 기능의 상품화 분야에서 이러한 세대간 지식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성농업인의 발굴 및 육성하고 신규여성농업인의 확보와 여성의 세대간 지식의 활용·공유·창조 지원하는 내용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후계인력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특정 대상에 대해 특정 상품 생산을 지원하는 형태의 설계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농업생산 및 유통, 관광농업, 전통문화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농업관련산업에의 진출을 위한 여성인력양성 활성화

디지털농업이 전개됨에 따라 농산물 마케팅, 식품안전 분야 등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이 여성, 특히 젊은층 여성인력의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제도 개발을 위해 진취적이고 유능한 농학계 여학생을 대상으로 고급인력 양성과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 관련이론과 생산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해외연수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한 핵심 전문가로 양성하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산지에서의 농산물 선별·포장 관련 노동에 대한 단기 훈련과정을 마련해 단순기술의 습득과 근로자로서의 규범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도록 현행 농업계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 IV.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1. 농가도우미(helper) 제도의 확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helper)가 농사일을 대행해주는 제도로 2000년도에 전국의 9개도 50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출산전후 120일 기간 내에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국고지원액은 1일 8시간 기준 12,000원으로 나머지는 이용농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단계에서 국고지원액이 적어 농가의 부담이 큰 데다 이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사업실적이 부진한 편이다. 특히 도우미 이용이

산후조리에 한정되어 있고, 이용기간도 출산 전·후 각각 6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도우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제약되고 있다.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농촌형 복지서비스로서 이 농가도우미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1977년부터 출산할 경우, 농가도우미에게 지불되는 비용의 90 퍼센트에 상당하는 수당이 여성농업인에게 지급되고 여성농업인이 훈련코스 에 참가하거나, 농업단체의 직무상 농가도우미 파견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대요 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1999년 개정된 「농업법」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임신한 경우에는 대행비용의 100 퍼센트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도우미제의 내실화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농가의 도우미 이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도우미 이용료를 현실화하되, 이용료 부담비율을 국고 50 퍼센트, 지방비 30 퍼센트, 농가부담 20 퍼센트 정도로 조정해 농가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출산, 본인과 가족의 질병, 관혼상제, 교육훈련 등으로 사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고, 출산의 경우 출산 후 1년까지로 기간을 확대(육아휴직)하는 등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시범사업지역 또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자녀보육서비스의 확충

1999년 현재 보육시설의 지역당 시설수를 비교하면 동당 7.9개소, 읍당 5.7개소이나 면지역은 평균 0.9개소로 면(面) 이하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특히 농가여성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면당 5세미만 아동수는 267명으로 동(1,269명)이나 읍(1,494명)에 비해 아동수가 5분의 1 미만에 불과(통계청, 1999)한데다, 거주지역이 흩어져 있어 보육시설 설치가 쉽지 않는 점도 있다. 또한 농가의 소득수준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이 높고, 보육시간이 농번기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지 못해, 있는 시설의 활용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농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실정에 맞는 보육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1994년 12월

발표한 앤젤플랜(Angel Plan)에서는 보육시스템 다양화를 위해 연장보육소, 야간 보육소, 소규모 보육소 등과 함께 벽지보육소, 농번기처럼 제한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절보육소 등 농촌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 있다. 또한 보육소의 기능도 단순한 보육을 넘어 자녀교육과 상담기능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중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100 퍼센트로 인상(현행 50 퍼센트)하며 차량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공립병설 유치원 확충과 더불어 농촌지역 저소득층 농업인 자녀의 보육비 지원과 농촌형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 3. 자녀교육 지원서비스의 강화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시설이 노후하고 우수 교사의 확보가 어려워 교육의 질이 열악하고 학교버스의 운영이 부실해 통학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65.2 퍼센트가 학교시설 노후, 우수교사 기피, 통학 불편 등 농촌에서의 자녀교육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저하로 중학생 이상 자녀의 유학비용 등 자녀 학비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농업인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계 고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불안으로 여성농업인이 생산활동에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농업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 지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 중등학교의 학교급식 확대, 읍면 단위 초중고교의 정보화시설 구축, 농촌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 농촌지역 학교의 통학버스 지원 등 농촌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복지후생 증진이 요구된다. 그리고 편모농업인 자녀 인문계고교 학자금 지원,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확대, 기숙사 우선 입주 등 농업인 자녀교육비 경감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읍면 단위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사업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 4.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농촌은 도시와 비교해 노인인구비가 높고 건강상태가 열악하며, 여성농업인(1999년 현재 여성농가인구의 65 퍼센트가 40세 이상임)의 대부분이 과도한 농업노동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근육 및 근골격계 질환, 순환기계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긴장, 불안, 부적합의 증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4)</sup>. 또한 여성농업인들의 3분의 2는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무료건강 검진과 물리치료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의 의료자원이 부족해 의료 자체 충족도(중진료권내 의료기관이용도)는 낮고 의료비 부담은 도시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보건 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며, 지역 보건 의료정책 과정에의 여성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2001년까지 전국 136개 군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 1명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보건소 내 '여성건강클리닉' 설치, 농부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또는 근골격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요법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기능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공공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해 이동순회 서비스도 크게 확대해 갈 전망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표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건 의료정책 결정과정의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의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자문기구로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4) 농협중앙회·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6)의 조사결과, 농부중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남성 22.0 퍼센트, 여성 43.4 퍼센트로 나타남.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부엌+목욕실 개량과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등을 원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매년 지원을 확대하여 호당 350만원 정도를 융자 지원하고 있다.

## 5.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실시한 후 1995년부터 농어촌지역의 자영자에 대하여 확대 실시되었다. 현재 정부가 농어민에 한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3분의 1인 2,200원의 정액을 농민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한시적인 농특세의 기금운용 문제와 낮은 지원액으로 연금제도가 목적하는 복지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에 편입되어 있어, 남편과 사별 후 유족으로 분리되어 연금의 60 퍼센트 밖에 급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에게도 연금가입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예산도 한시적인 농특세의 기금운용으로는 목적하는 복지수준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고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여성정책중장기계획(2000.6)』에 의하면 여성 연금가입 확대책으로 여성들의 임의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기는 하다.

의료보험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급여의 내용이다. 의보의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현물급여로 되어 있고 현금급여는 매우 취약하다. 상병수당이 없고, 분만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수적인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임신부의 산전, 산후 진찰 역시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비용, 산전산후 90일 조리수당 지급, 임신기간과 출산후의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을 사회부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성보호 혜택은 여성노동자, 여성농업인, 가내노동자를 불문하고 주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여성관련 건강 및 보건지표의 개발과 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농업노동사고에 대한 재해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5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도시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 농업노동으로 인한 재해시 모든 것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경제적 가치로서만 인정될 수 없는 사회적 공헌도를 감안하여 농업노동사고 재해보험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 역시 동등한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여성농업인을 독자적인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도시의 취업여성과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장을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6.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 실시

농림부는 2001년 4월부터 여성농업인이 가사와 자녀교육 문제 등의 고충을 상담하고 농번기에는 아동보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전국 13개소(농림부 4, 농협 9)에 여성농업인 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 가사노동 및 자녀교육 등 힘든 농촌생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젊고 유능한 여성의 농촌정착을 도우며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3년 이상 농업인을 위하여 활동한 자 또는 3년 이상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에 의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센터에서는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이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청소년 체험학습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일상적으로는 가족상담, 자녀교육 등 여성농업인이 농업 농촌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애로)을 상담한다.

여성농업인들은 경제활동 못지 않게 취미 교양 등 문화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농업인들은 농촌에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정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단위 지역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내 생활과학연수관, 여성회관, 농협주부대학, 공공도서관 등에서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이 아닌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의 이용이 어려움이 있다<sup>5)</sup>.

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으나 현재는 행정관서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작은 인원이 여러 조직에 중복 가입되어 있고, 또 활동할 때는 적은 인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화활동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에는 마을회관, 농협 회의실, 면 강당, 복지회관, 도서관, 학교 강당 등의 시설이 있으나 중장년층 여성들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모이고’, ‘배우고’, ‘즐기고’, ‘고충을 해소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성농업인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기능을 특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여성농업인센터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중앙 및 시도 단위를 중심으로 읍면 단위까지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의 생산자 조직활동 및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모임 장소로서 기능하고, 여성농업인 상담소는 영농 활동 및 가족 문제 등 생활전반에 관한 상담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양문화교실, 어학강좌, 여성생활체육강좌(게이트볼 등), 인터넷방, 여성사랑방 등을 두어 여성농업인 복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의 인터넷방에서는 정보화교육은 물론 도농여성단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부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및 문화활동이 저조한 농어촌

5) 일부 여성회관에서는 이동 여성회관 사업을 하고 있어 반응이 좋으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에 ‘푸른음악회’ 및 이동문화 프로그램 개최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문화원, 도서관, 마을문고 등 지역문화시설 건립을 신청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생활문화강좌, 전통예술강좌, 여가취미강좌, 교양강좌, 문화유적답사 등 여성농업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문화원, 박물관, 문예회관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초청공연 및 강좌개설을 확대함으로써 축제 등 지역문화행사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

## V.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체계 강화

### 1. 법령 정비 및 여성정책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모든 정책이 법적 근거에서 출발한다고 볼 때,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인 정책기조가 실질적·사후적 평등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맞춰 농업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예규, 훈령, 지침 상의 명시적·암묵적 여성농업인 차별조항의 개선이 요구된다. 남녀차별조항의 정비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조항의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법 및 협약에 대비하여 현행법령의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성별 구분, 한쪽성의 배제 또는 제한, 남녀차별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 및 성별에 따라 법규효과가 달라지는 규정을 찾아 조사작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존 법령에서 남녀차별조항의 발굴 및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칭)여성농업인육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에는 풍요롭고 활기에 찬 농촌사회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영농발전을 위해서는 남녀공동참여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각각 응분의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의 농업경영 역할을 적절하게 평가하면서 경영능력을 개발하여 전문경영인으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다양한 시책 및 환경정비를 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농업인 복지정책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여성농업인 정책에 특화되지 못함으로써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여성의 시각에서 농업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농정분야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적(性認知的, Gender sensitive) 교육이 요구된다.

## 2. 정책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관련 업무 수행체계가 시도 여성정책과, 농업기술원 또는 농정과 등으로 나뉘어져 비효율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초통계자료 조차 취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최근 시행중인 '농가도우미 사업'만 하더라도 일선기관의 비체계적인 업무시행 및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 사업시행상의 오류를 야기한 요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여성농업인정책 업무는 농정을 집행하는 주무과인 농정과에 '여성농업인력계'를 신설하고, 시·군의 농림축산업 관련과(課)에 '여성농업인관련업무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농진청 생활개선사업은 농촌 전반의 생활개선사업과 농촌여성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인지적 정책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가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농협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67개 교육 과정에 공통과목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및 성평등 의식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인프라의 확충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을 함양하고 저해요인 발굴 및 농촌정착 추진을 위한 지속적 정책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1999년도에 처음으로 10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농가도우미 제도도입 연구'를 시행한 바 있었다. 2000년에도 '농촌지

역의 양성평등 실현방안,' '농촌지역의 영유아보육정책 개발' 등 3건을 용역 발주하였다.

이와 같이 아직은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이 초기단계이며, 기초자료의 생산과 분석 및 주요 정책과제의 지속적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기초·정책연구의 수행을 통한 성인지적 농업정책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정책개발연구 및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각종 농업통계의 성구분된 기초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또는 계획 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성분석(Gender analysis) 및 정책모니터링의 정례적 실시가 요망된다.

#### 4. 여성농업인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여성농업인은 기본적인 보건의료 보장조차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도시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로 인해 보험 수급권이 없는 데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낮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노동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복지 프로그램과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나,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여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장기적 사업, 시범사업, 복지사업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민간합동에 의한 여성농업인발전기금은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개발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쓰여져야 한다. 정부출연금은 매년 농림예산의 일정율을 출연토록 하고, 민간출연금은 여성농업인정책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가시책에 부합되는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로 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육성기금 설치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5. 여성농업인 단체의 활성화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 단체는 도시에 비해 활동이 다양하지 못하며 단체간 유사사업을 중복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농업생산 분야도 다양할 뿐더러 한 조직내 구성원간 연령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심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은 이런 단체들에 중복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고, 단체가 기관담당자와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회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농촌여성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소규모 모임을 형성하여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체간 협력·경쟁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행정, 프로그램의 지원, 전문민간단체에 점진적인 사업이양과 위탁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정책·기획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집행은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게 이양하고,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이원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 VI. 향후 바람직한 여성농업인 정책의 방향

여성농업인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의 전문담당자로서 여성농업인을 고려한 농업구조의 장기적 발전전망을 마련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책 당국자들이 여성농업인을 보는 시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농민들이 최소한의 영농의욕을 회복하고 농업종사자의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첫째, 여성농업인들을 농업경영자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합리화, 전문화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과 소양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각종 농업관련 협의체에 여성농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농민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위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여성농업인이 영농의욕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책임분담과 운영, 보수의 확보, 가사의 분담, 공동재산의 형성과 처리의 내용을 가족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여성경영자에 대한 농어민연금의 지분 인정, 영농법인에 대한 참여기회 보장, 농업기술교육의 사회화와 교육기회 확대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을 농업생산 전문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밭 등 농지의 구획화와 경지정리, 관개시설의 확충, 지속적인 여성농업인의 신체조건에 맞는 농기계의 개발보급, 생산시설의 자동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자가노동부담을 줄일 수 있고, 주변 생활환경 개선의 도출 그리고 모자농업인(경영주)을 포함한 농어촌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망되고 있다.

넷째, 다양한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 지속적인 개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강화, 여성농업인 요구를 수렴한 정책수립과 아울러 정책수행체계의 정비의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농업인 정책담당부서의 설치와 함께 지역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김영옥·김이선,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

농림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 2000.7.

- 박민선, “EU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조사월보 논단」, ([http://ns.nacf.co.kr/study/sub02/sub02\\_0004.htm#\\_bookmark\\_b354e0](http://ns.nacf.co.kr/study/sub02/sub02_0004.htm#_bookmark_b354e0))
- 박성자, “여성농민 현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민과 복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강의교재, 2001.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여성정책 중장기계획」, 2000.6.
- 양승주, “여성농민정책의 현황과 과제”, 「여성농민과 복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의교재, 2001.
- 이규환, “칠곡지역 여성농업인의 노동실태와 그 활용방안”,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8.
- 이호철, “대구근교지역의 여성농민문제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여성농민과 복지」, 2001.
- 정종기, “농촌생활개선을 위한 정책과 방향”, 「여성농민과 복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강의교재, 2001.
- 한국여성개발원, 「농촌여성의 조직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9.



#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1 : 자아실현

이 경 숙  
칠곡군 복지회관

---

## I. 머리말

## II. 여성과 리더십

1. 당신도 리더가 될 수 있다.
2.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

## III. 자신감을 찾는 비결

1. 당신의 삶의 의미는?
2. 내 삶은 내가 통제한다.

## IV.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1. 습관 1 : 주도적이 되라
2. 습관 2 :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3. 습관 3 :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4. 습관 4 : 상호이익을 추구하라
5. 습관 5 : 경쟁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6. 습관 6 : 시너지를 활용하라
7. 습관 7 : 끊임없이 쉼을 하라

## V. 마무리

---



##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1 : 자아실현

### I. 머리말

여성은 남성의 주류에서 항상 멀찌감치 떨어진 존재로 생각해 왔다. 최근 여성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주류화정책’이란 용어는 지금까지 남성만이 우리 사회의 주류위치를 차지해 왔던 데에서 벗어나 여성도 주류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 중에서 남성 중심의 주류사회에 앞장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의 수만큼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여성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지도 또 사회의 주류로서, 리더로서 나서본 경험과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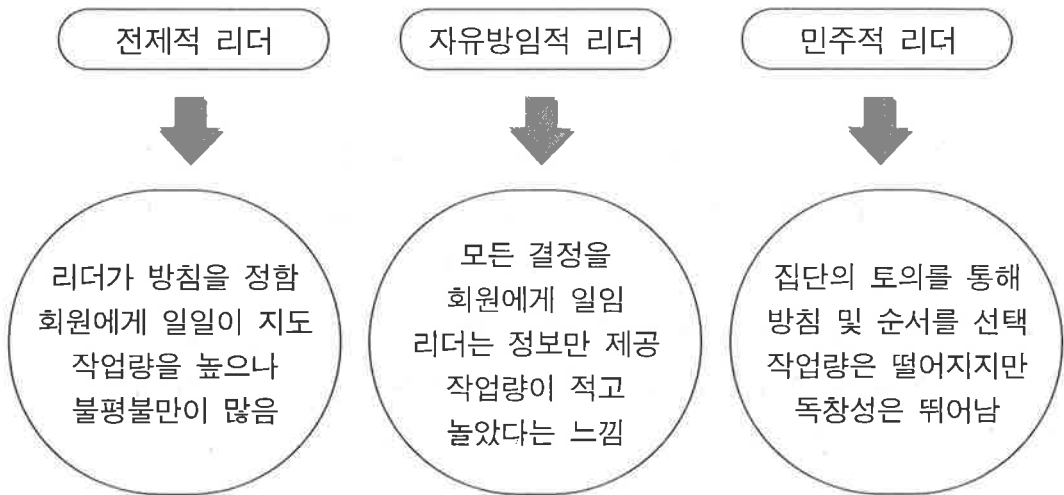
여성의 리더의식, 리더십이 그만큼 약하다는 반증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 농촌사회에서도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몫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여성농업인의 리더십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이제 우리 여성농업인도 좁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더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주류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 점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리더십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 II. 여성과 리더십

### 1. 당신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십이란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 1) 민주적 리더되기



민주적 리더는 집단의 방침을 멤버들의 토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리더는 그 결정에 도움만 준다. 작업의 계획도 모두 토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멤버는 목표달성의 순서를 파악하게 된다. 리더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 될 경우에는 리더가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회원에게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체를 회원측에 두며, 리더는 실제작업에도 참가한다.

리더는 감독자나 관리자와는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리더와 회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성과가 2차적이라도 역시 민주적 리더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1) 목표에 따른 리더의 변화

리더가 개인적으로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다. 리더가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목표나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결정해야 한다.

### (2) 집단의 성격에 따른 리더의 변화

리더십이란 어떤 사람은 충분히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은 지니고 있지 않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집단의 구조나, 회원의 욕구에 따라 변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것이다.

### (3) 여성리더의 기대되는 역할

리더가 될만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지능이 뛰어나며, 학식도 있고, 자신감도 있으며, 의지나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이기도 하며, 사회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주 평범한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리더라는 것은 집단이 있어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므로 리더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 2) 리더하는 여성의 5가지 역할

### 첫째,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인간관계의 중재역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이 부분에서 가장 적임자로 등장하는 것이 여성리더이다. 인간관계의 중재역은 무언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소부터 인간관계를 밀접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여성 리더는 다른 누구의 험담도 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람을 보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말을 붙이는 등 자상하고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 둘째, 업무를 지도하는 역할

집단의 중심인 업무상의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조직에 동반되는 인간관계의 조정에서 리더십을 얻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업무상의 리더십을 통해 멤버는 리더에게 존경과 신뢰와 친밀감을 느낀다. 거기에서 인간관계에 관계되는 트러블과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을 기분이 생긴다.

### 셋째, 상하의 파이프 역할

조직은 혈관(파이프)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어서 아무리 혈액(정보)이 풍부해도 혈관이 막혀있거나 잘려 있어서는 조직은 죽어버리게 된다. 상하의 파이프 역할을 충실히하고, 풍부한 정보가 흐른다면 훌륭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역할

여성리더는 멤버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과 이익을 보증하는 역할 등 멤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다섯째, 상담받는 역할

여성 리더의 역할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모두의 상담 상대가 되는 것”이다.

비밀을 지켜준다거나 그 입장이 되어 함께 생각해 주거나 상대를 이해하는 등, 친형제나 친한 친구와 같이 되어야 한다.

## 2.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

### 1) 좋은 영향력을 지닐것

리더십은 집단에 대한 좋은 영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리더십과 대비되는 헤드십(首長性)과의 차이점을 보면 알 수 있다.

### 리더십

- 리더의 강제력이 없다
- 리더와 회원간 이해 대립이 없다
- 갈등이 있을시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려야 한다.

### 헤드십

- 헤드의 강제력이 있다.
- 상사와 부하간 이해대립이 있다.
- 이해 대립시 헤드의 강제적 권력으로 해결

### 좋은 영향력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만큼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 2) 자신이 먼저 손을 내민다.

리더십은 상대를 완력으로 굴복시킬만한 힘이 없다. 전적으로 상대가 받아들여 주기를 바랄뿐이다, 당신의 영향력을 받을지 아니면 받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상대이다.



당신과 같은 영향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상대를 믿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다

### 3) 고통을 함께 한다.

상대의 이익을 지켜주고 이익의 대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자신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상대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돌고 돌아 당신의 이익이 된다. 때로는 상대에게 뿌려진 불씨를 찾아 같이 분담해 주어야 한다.

여성리더

#### 4) 하기싫은 것은 솔선수범하여

리더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단지 입과 손으로만 명령이나 지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듯한데, 이것은 당치도 않는 오해이다. 다른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해야만 모두가 따라와 주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부모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 (1) 인기있는 여성리더는

리더 : 힘든 일은 제가 먼저 할려고 하지요, 말로 하는 것 보다는 먼저 보여주는게 나으니까요.

회원 :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일을 하니까 윗분에게 칭찬을 받아 모두 신이납니다

##### (2) 인기없는 여성리더는

리더 : 제가 앞에 나서면 불쾌하게 보일까봐 모두에게 지도만 합니다. 시키지 않으면 요즘애들은 생각을 안하니까요.

회원 : 우리 리더는 말이 많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등등 말뿐이에요. 때로는 반항하고 싶어져요.

#### 5) 반할만한 사람이 되어라

인간적으로 매력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모여든다.

역시 리더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만한 것을 갖고 있는가? 정면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얼버무릴것이다. 그러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당당히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라.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좋아할만한 점은 있는 법이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싫어요”  
 “결점이 있는 사람편이 친밀감이 느껴져요”  
 “빈틈없는 사람은 다가서기 힘들어요”

호감받는 여성리더

결점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당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노력이야말로 유효하지 않을까? 감추어진 노력보다도 발산시키는 노력이 훨씬 쉽고 노력의 보람도 있는것이다.

당신도 자신의 좋은 요소를 살려 호감받는 여성리더가 되어보면 어떨까?

#### 6) 때로는 회원이 된다

집단의 목적과 구조 혹은 집단을 구성하는 회원의 욕구를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는 각 기능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때로는 회원의 일원이 되어 멤버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의 모습이 얼마만큼 멤버를 감격시키는지 알 수 없다.

#### 7) 짐은 혼자서 지지 않는다

##### 리더는 외롭다

- 리더라는 것은 모두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사람도, 반대로 뒤치닥거리만 하는 심부름꾼도 아니다. 모두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인 것이다. 리더가 모두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하여 누군에게 도움을 받아도 그것은 결코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너무 혼자서 많은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회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 나 자신에게 하는 예언

1. 나는 멋있고 좋은 사람이다.
2. 나는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다.
3. 나는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이다
4.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5. 나는 할 수 있다.
6.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
7. 나는 무엇이든지 끝까지 열심히 한다
8. 나는 솔직하게 먼저 이야기한다
9. 나는 할 일을 찾아서 한다
10. 나는 항상 앞서 준비한다

### Ⅲ. 자신감을 찾는 비결

#### 1. 당신의 삶의 의미는?

##### 1) 열등감은 성취를 위한 초석이다.

##### (1) 열등감의 세가지 원인



인간은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재보

다 나은 상태인 완전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열등감은 자기 완성을 위한 필수요인이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맥락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이며, 각기 독특한 인지적 구조를 갖고 스스로를 창조해 가며 자신이 갖는 열등감을 극복하여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이다.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자기 완성을 위해 중요하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신의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 ①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자세
- ② 자신이 갖는 독특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 ③ 도전하는 자세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존중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2) 나도 당신도 이만하면 괜찮다

인간에게 자신의 습관성을 뛰어 넘어 새로운 목표와 행동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고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다. ‘자기 긍정 - 타인 긍정(I’m OK-You’re-OK)’의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시간을 보다 알차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 3) 자신이 믿는 것처럼 느낀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표현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의 관점을 강조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건보다는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신념체계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2. 내 삶은 내가 통제한다.

### 1) 비판의 칼날

복잡한 버스칸에서 발을 밟히고도 양처럼 가만히 서 있거나, 아무말도 하지 않고서 그 고통을 겪거나, 더 심하게는 발 밟는 사람이 무안해 할까봐 오히려 발도 치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다.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 그 사람에게

‘발 치우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수백가지의 미묘한 상황들이 있다. 그들에게 발 치워줘요! 라고 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네가지 유용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 나-메세지

1. 그때의 나의 기분과 감정을 분명히 말한다  
(예 : 나는 화가 난다)
2. 비판없이 내가 피해를 입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예 : 왜냐하면 네가 휴지를 아무곳에나 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서)
3.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끼친 영향과 나의 기분과 감정이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예 : 나는 집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데 이것을 치우려면 몹시 힘들거야. 다시 이럴때는 나에게 안마를 해주어야 한다.)
4.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예 : 앞으로는 휴지를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 2) 비판을 걸러는 여섯가지 필터

만약 비판의 결과로 수반되는 파괴 흔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지속정도가 거의 영구적이어서 한평생 지속될 정도라면 위험한 현상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건설적 비판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보다 더 좋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비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낄 때에는 다음에 열거할 6가지 정신적 필터를 꼭 거쳐야 한다.

### 비판을 거르는 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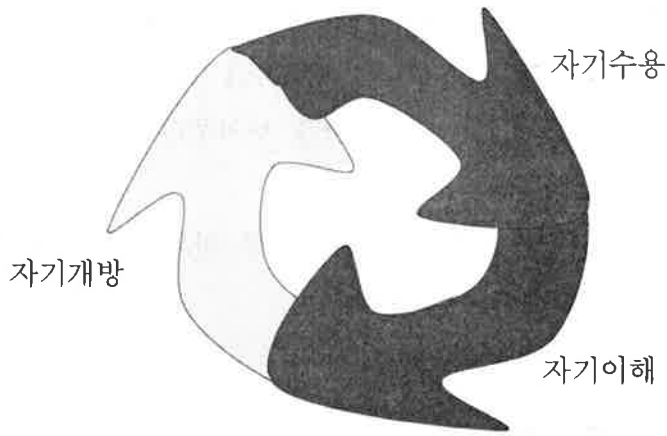
때를 잘 선택하라!
관심을 가져주라!
잔소리는 아닌가?
정확하게 주제 파악!
보복심리는 갖고 있지 않나?
인정하기

이 정신적 필터는 분명히 당신이 가할 비판의 양을 줄여줄 것이고, 비판을 받은 사람도 당신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그 목표대로 변화하도록 함으로써 비판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고 파괴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다.

## 3) 모두 함께 자기 성장

자기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이해해야 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노출하여 진실한 자기자신을 확장하여야 한다.





모두 함께 서로의 성장을 위해

#### IV.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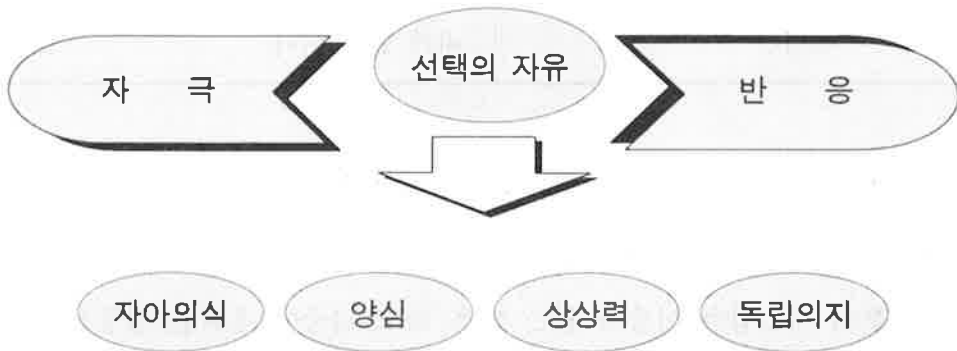
우선 나 자신으로 부터 떠나본다면 어떨까? 나의 의식을 방 한쪽에 올려놓고 마음의 눈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 보며 투사해 보도록 노력하자. 이제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다. 동물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의식이라 부른다.

자아의식이란 우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자신을 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진 사고방식

이며, 사고방식은 우리의 태도나 행동 뿐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나아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지도에 해당한다.

### 1. 습관1 : 주도적이 되라

주도적이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행동한다는 것이지 남의 행동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자극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자유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 성장과 행복은 그 반응에 달려 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기 보다는 원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런 힘은 근본적으로 인간만이 가진 네가지 천부적인 능력인 자아의식, 양심, 상상력, 독립의지를 계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나타난다. 네가지 천부적인 능력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위의 네가지 천부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주도적인 가족관계가 되는 연습을 해보자

## 1) 주도적인 말하기

대응적인 말	주도적인 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대안을 찾아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그가 나를 미치도록 화나게 한다	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지 않을거야	나는 효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	내가 적절한 방안을 선택한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선택한다
해야만 해	내가 원한다
만일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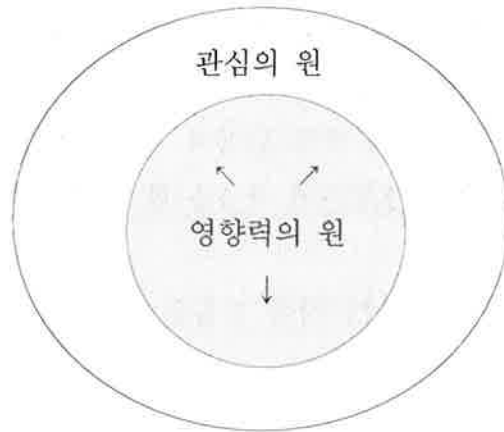
## 2) 정지버튼 만들기 - 멈추어 생각하고 선택하기

대응적으로 말하기, 즉 맞받아 치기는 쉽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순간의 기분에 사로잡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잠시 멈추고 그일을 찬찬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으면 그렇게 대응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텐데’라고.

사람들이 순간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대응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다면, 가정생활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어떤 자극이 발생하는 시점과 반응하는 시점사이에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여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인 ‘정지버튼’이 꼭 필요하다.

## 3) 영향력의 원, 관심의 원

우리의 생활을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으로 나누어 보자.



다른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날씨나 계절, 자연재해 등과 같이 자기가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반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도 많다.

예로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하자. 그 소년에게 부모님의 이혼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부모님의 문제는 자신의 관심의 원안에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이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영향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전과 다름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도와드릴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영향력의 원을 확대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영향력의 원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고 그들에게 역할모델이 되며 성실과 인내로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주도적이 되고 술선수범하며 가족문화내에서 더 많이 반응 할 수 있는 능력 즉 책임을 갖게 된다.

#### 4) 감정은행 계좌만들기

감정은행계좌란 각자가 다른 사람과 맺는 인건관계의 질을 의미한다. 그것은 보통의 은행계좌처럼 저축(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일)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인출(신뢰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계좌의 잔고가 얼마나 되는 지를 보면 다른 사람과 얼마나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가족간의 감정은행계좌에 잔고가 많다면 가족간의 신뢰가 두터운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실수를 해도 감정의 지불준비금이 그 실수를 금방 상쇄해 줄 것이다. 가족간의 감정계좌에 저축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6가지를 살펴보면

- 작은 친절의 큰 힘 : 오랫동안 작은 친절을 꾸준히 베푸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 사과하기 :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과하기
- 등뒤에서 험담하지 말자 : 항상 다른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하자
- 약속을 하되 반드시 지키기
- 용서하기 : 상대방을 용서하기 까지 우리는 항상 피해자 일 수 밖에 없다
- 순수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족 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아래와 같이 인출하는 대신에	아래와 같이 저축한다면
남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불성실하게 사과한다	사과한다
다른 사람이 없을때 그들을 비판하고 험담한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존중해서 행동한다
다른사람과 약속을 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하고 지킨다
남을 공격하고 원한을 품고, 다른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들추어 낸다	용서한다

## 2. 습관 2 :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는 가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비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비행기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습관 2는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그려두면 그 밖의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일은 쉬워진다.

### 1)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모든 사물이 두 번 창조된다는 것은 하나의 원리이다. 이때 첫번째 창조는 마음속에서 하는 것을 말하며, 둘째번 창조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집의 형태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그려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약 가족중심의 집을 짓는다면 거실을 크게 지어 가족이 모일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것이며,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을 고려할 것이다. 이같은 생각으로 청사진을 만들고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만약 이렇게 미리 계획하는 첫번째 창조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둘째번 실제적인 창조인 공사에서는 집을짓는 비용이 두배나 드는 값비싼 변경을 해야 될 지도 모른다.

### 2) 우리 가족의 사명서 작성하기

가족사명서는 우리에게 온 가족이 함께 가도 싶어하는 목적지를 명확히 밝혀 준다.

#### (1) 1단계 : 우선 우리가족은 어떤 가족인지 파악한다.

1단계의 목적은 가족 구성원들이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꺼내 놓도록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 가족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일을 하고 싶은가?

우리가족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족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2) 2단계 : 가족사명서를 기록하라

가족들의 모든 생각을 책상위에 펼쳐보인후 가족 중 한사람이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이때 만든 사명서는 앞으로도 많은 수정을 거쳐야 하는 불완전한 초안에 불과하다. 가족들은 그 초안을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실천하고, 토론을 더 해보고, 수정해 가야 한다.

우리 가족의 사명

자기 자신과 다른사람에 대해 정직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각자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한다

서로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한다.

사랑과 친절과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서로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려하며 인내심을 갖는다.

(3) 3단계 : 항로를 지키기 위해 사명서를 활용하라.

사명서는 해야 할 일을 적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생활의 헌법역할을 한다. 가족공동의 가치관은 강한 결속력과 목적에 대한 일체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창조해 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족사명서가 갖는 위력이다.

### 3. 습관 3 :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가장 소중한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좌우되어서는 않된다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생활을 한번 되돌아 본다면 예외없이 가족보다는 일, 친구 혹은 개인의 취미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직업은 일시적인 것이다. 은퇴하고 나면 곧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일은 계속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가족안에서의 역할은 끝나는 법이 없다.

#### 1) 시간관리의 4세대

##### (1) 1세대 : 메모지에 기록하고 목록표를 이용하는것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는 여러가지 일들을 표시하여, 인식하고 총괄시키려는 시도

##### (2) 2세대 : 달력과 약속기록부

우리가 앞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미래에 있을 일과 활동에 대해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

##### (3) 3세대 : 시간관리에 우선순위 개념 추가

가치있고 중요한 일들을 명확하게 밝혀 효율적인 시간통제

##### (4) 4세대 : 자기관리

대상과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유지와 증진 그리고 결과의달성을 강조한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생산/생산능력 간의 균형 유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시간관리의 4영역

	긴 급 함	긴급하지 않음
중요함	I 영역 활동 · 위기 · 급박한 문제 · 기간이 정해진 일	II 영역 활동 · 예방, 생산능력활동 · 인간관계 구축 · 새로운 기회 발굴 · 중장기 계획, 오락
중요하지 않음	III 영역 활동 · 잠깐의 급한 질문, 일부전화 · 일부 우편물, 일부 보고서 · 눈앞의 급박한 사항 · 인기있는 활동	IV영역 활동 · 바쁜 일, 하찮은 일 · 일부 우편물, 일부 전화 · 시간 낭비거리 · 즐거운 활동

① I 영역에 관심을 둔다면

I 결과 · 스트레스 · 피로한 심신 · 위기관리 · 문제수습에만 매달림	II
III	IV

② III영역에 관심을 둔다면

I	II
III 결과 · 단기 성과 위주 · 피상적이거나 단절된 인간관계 · 평판 - 경박한 성격 · 목표와 계획을 무시함	IV

③ III,IV 영역에만 관심을 둔다면

I	II
III 결과 · 완전한 무책임 · 의식주를 다른사람에게 의존	IV

④ II영역에 관심을 둔다면

I	←
↑ II 결과 · 비전, 멀리 내다 봄 · 균형 · 규율 · 극소수의 위기	

성공하는 사람은 당면 문제위주가 아니라 미래 기회위주이다. 이들은 기회는 증가시키지만 문제는 감소시킨다. 또 이들은 예방적으로 생각한다. 이들도 역시 위기와 긴급사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II영역에 속하고 매우 효과적인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생산과 생산능력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 4. 습관 4 : 상호이익을 추구하라

##### 1) '승/승'적 사고

승/승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패/패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지는)
승/패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승 (나는 이기는)
패/승 (나는 지고 상대방은 이기는)	승/승 혹은 무거래 (모두 이기는, 혹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승/승의 사고방식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다. 승/승이라는 것은 합의나 해결들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또 만족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승/승의 해결방식을 갖게되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결정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뿐만 아니라 결정된 활동계획으로 헌신하게 된다. 이같은 사고는 인생을 경쟁의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장으로 보는 데서 나온다.

##### 2) '승/승'의 정신은 어떻게 계발 될 것인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변덕스러운 욕망을 일일이 채워 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승/승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① 자녀들이 작은 일에서 승리하게 해준다.

아이들이 어릴때는 90 퍼센트의 관심을 사소한 곳에 둔다. 아이들이 거실에 그네를 설치하고 싶어한다던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 어질러 놓고 고집만 부릴때 그냥 저준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승리가 된다. 그것은 부모에게도 승리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에서만 자기 입장을 내세운다.

② 자녀들과 큰일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이런 협력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이지 부모의 일방적인 사고나 강요나 이기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대한 문제에 참여시키고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그들은 때로 부모보다 훨씬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부모와 자녀사이의 대화를 통해 각각의 방법보다 훨씬 더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 낼 수도 있다.

③ 경쟁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 5. 습관 5 :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 1) 공감적 경청

다른 사람의 정신과 마음속으로 들어가 경청하는 것을 ‘공감적 경청’이라 한다. 그것은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것으로, 다른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경청의 다섯 가지 방법중에서 다른 사람의 사고에 들어가 경청하는 것은 이것 하나 밖에 없다.

5. 공감적 경청 (다른 사람의 사고속으로 들어감)
4. 주의 깊은 경청
3. 선택적 경청
2. 경청을 가장하기
1. 무시하기 (자기 자신의 사고 속에서 머무름)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혹은 경청하는척 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듣거나 주의 깊게 경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자신의 사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어떤것이 다른 사람에게 승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역할을 바꾸는 것, 즉 자신을 충실한 통역자로 생각하는 것이다.

## 2) 피드백 주기

모든 사람은 맹점-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변화시키거나 개선해야할 측면 -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맞설 수도 있을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럴때에는 긍정적 에너지와 존중이 가득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들과의 감정은행 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 피드백을 주는데 주의 할점

- ① 이렇게 자문해 보라. ‘이 피드백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바로잡고 싶은 내 욕구만 충족시키는가?’
- ② 먼저 이해하라.
- ③ 사람과 행동을 구별하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절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기준과 원칙에 어긋난 행동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맹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민감하게 대하고 인내해야 한다.
- ⑤ 나를 주어로 하는 메시지를 사용하라.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 즉 인식을 말해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나를 주어로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즉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가 느끼는 방식입니다” 식으로 말하라.

## 6. 습관 6 : 시너지를 활용하라

가족들은 개인적 장점과 가족의 장점을 배양하며, 다른 사람이 가진 차이점을 존중하고 가치있게 여김으로써, 부분의 합보다 더욱 큰 전체를 만들어 나간다. 그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및 기회포착의 문화를 건설한다. 그들은 사랑과 배움과 공헌의 가족정신을 길러낸다. 여기서 시너지는 타협(1+1=1.5)이나 단순한 협력(1+1=2)에 머무르지 않으며 창의적인 협력(1+1=3 혹은 그이상)을 추구한다.

### 시너지 활용법 4단계

첫째.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결정하되 대답하기 위해 듣지말고 이해하기 위해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 관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한다.

둘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여러 견해가 나오고, 모든사람이 서로를 이해했다고 느끼면, 그 다음으로는  
 함께 토론하고 해결할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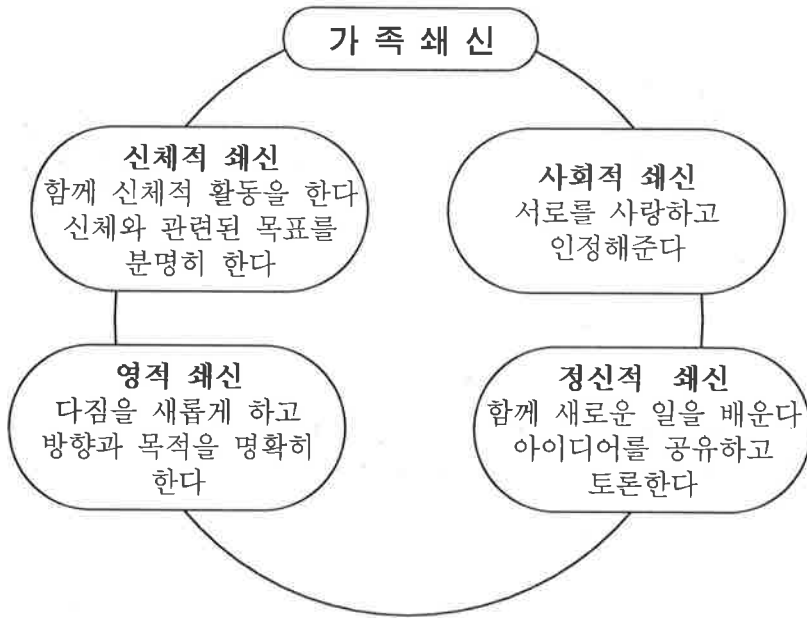
셋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승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한다. 그러고나서 그 기준을 책상  
 위에 꺼내놓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때까지 정교하게 다듬는다

넷째. 그런 기준에 맞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가?  
 창의적 접근법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시너지를 활용한다.

## 7. 습관 7 : 끊임없이 쇠신하라

개인과 가족은 생활의 네가지 근본적인 영역 - 신체적 · 사회적/정서적 · 영적

· 정신적 영역-에서 개인적·가족적 쇄신 활동을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써 그효과를 증대시킨다. 그들은 가족쇄신의 정신을 배양하는 전통을 수립한다.



## V. 마무리

이 글은 앞으로 농업경영의 수행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이 꼭 갖추어야 할 리더십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본 것이다. 여성농업인에게 리더십이란 농업경영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속에서 여성 스스로의 자각도 부족했고, 리더십과 농업경영의 상관성에 대한 구명도 적었던 점이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함양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리더십이란 것이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란 기본으로 파악하고 인정한다면 이제는 남들이 아닌 여성농업인 스스로도 리더십 함양이 왜 필요한지, 자신이 몸담고 있

는 농가경영, 농업경영을 위해 어떻게 보탬이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선구자는 항상 고독하다는 말처럼 여성농업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것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른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건 것 중에서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고통을 함께 해야하며’, ‘하기 싫은 일이라고 솔선 수범해야 하는 것’ 등은 리더가 감수해야 하는 자기 고통일 것이다. 그래서 리더는 외롭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자. 리더가 외롭고 고독할지언정 리더가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생산성, 효율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다면 리더가 되기를 주저하지 말라. 마음속에 내재한 열등감을 찾아내서 박살을 내버려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해 보라. 그것들은 당신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조건들이다. 그런 점에서 성공한 리더가 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익히는 것은 당신을 최고의 리더가 되게 하는 충분조건이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노안영, 『삶의 여행』, 중앙적성출판사, 1998.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김영사, 1998.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김영사, 1994.  
 시드니 사이먼, 『자기발견의 지름길』, 중외출판사, 1999.  
 시드니 사이먼, 『자신감을 찾는 비결』, 형성출판사, 1997.  
 이나계 노리코, 『21세기는 여성이 리드한다』, 글사랑, 1999.  
 이형득, 『상담의 이론적 접근』, 형설출판사, 1984.  
 하워드, 『당신도 리더가 될 수 있다』, 태학당, 1995.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리더십』, 199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발전과 지도자』, 1990.





#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2 : 회의진행법

이 호 철

경북대학교

---

## I. 회의란 무엇인가?

## II. 회의의 규칙

1. 회의 규칙의 개념
2. 회의규칙의 장점
3. 회의의 활용과 효과

## III. 회의의 원칙과 진행방법

1. 회의의 원칙
2. 회의의 준비
3. 회의의 진행순서

## IV. 의사진행의 방법

1. 의사일정
2. 의사진행 과정
3. 의사진행의 기본수칙
4. 토론
5. 표결과 그 발표
6. 의장의 역할

## V. 의사진행법의 기본개념

1. 발언
2. 동의
3. 질 문

## VI. 존경받는 회의 리더가 되려면

---



##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2 : 회의진행법

### I. 회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무엇보다 다양성을 그 전제로 삼는다. 더구나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다수의 의견이 주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발한 의견의 교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활발한 의견의 교환이란 무질서한 자기의 고집 피우기와는 그 근본부터 다르다. 여기에서 논하려는 회의라는 개념은 함께 가야할 방향을 먼저 설정해 두고 그 지향 위에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나아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으나, 오늘날에는 전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교류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리더십을 추구하려는 여성농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회의와 토론에 대해 관심과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각인의 상호절충의 장” 또는 “상호토론의 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가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과 절차 그리고 회의 예절이 지켜져야만 한다. 모든 회의 참석자는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본적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에만 회의는 다양한 의견들이 창출되고 참여자들은 바라는 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회의 진행법은 훈련에 의해 얻어지는 하나의 기술이며, 결코 선천

적으로 타고난 재능은 아니다. 따라서 장차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추려는 여성농업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회의와 그 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식견부터 갖추어 나가야만 한다.

## II. 회의의 규칙

### 1. 회의 규칙의 개념

일반적으로 회의규칙이라 함은 조직의 동일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즉 회의규칙이란 회의에서 적용하고 따라야 될 제반원칙과 방침을 말한다. 국회, 행정기관, 기업, 단체 등은 물론이고 작은 소모임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회의규칙이 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현대 민주주의는 크고 작은 회의체제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회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모든 조직은 의사결정수단으로서 회의가 가지는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는 “회의”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새겨 둘 필요가 있다. 조직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강력한 집행력을 동시에 겸비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2. 회의규칙의 장점

회의규칙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를 숙지하며, 반복훈련을 통해 회의규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특히 조직의 임원은 회의규칙에 의거 회의진행을 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직위 임원은 회의 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반복함으로써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필수 요소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 1) 정보와 지식 : 토론을 통해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된다.
- 2) 표현력 : 제한된 시간에 자기의 뜻을 효과적으로 남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게 된다.
- 3) 판단력 : 찬·반 토론 및 표결에서의 자기 표결 참여 결과에 따라 보편적 판단력에 대한 다각적 훈련이 가능하다.
- 4) 결단력 : 표결 과정에서 재빠른 결정으로 찬·반 어느 쪽이든 참여해야 함으로서 결단력 훈련이 가능해진다.
- 5) 사업추진력 : 다양한 의안의 심의를 통해 어떤 일을 추진한 때에 필요한 세부 사업을 파악하게 되고 이것은 곧 어떤 큰 일을 진행할 때에 부수적인 세부 업무의 준비를 가능케 한다.
- 6) 회의진행훈련 :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결론짓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

### 3. 회의의 활용과 효과

#### 1) 회의의 활용

회의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목적달성을 위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민주적 과정이다. 회의는 조직의 리더가 계획을 세우거나 지시를 충실히 이해 주지시키거나 통제하는 할 경우에, 그리고 특정한 문제에 대해 관계자간에 조정을 할 경우, 관리기능의 모든 국면에서 전원의 의견을 통합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더구나 훌륭한 회의는 리더로 하여금 그 구성원들과 대화하게 함으로써 좋은 신뢰 관계 구축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회의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자리일 뿐 아니라 참석 구성원이 각각의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이나 결론을 만들어내게 하는 힘을 발휘하도록 촉구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바로 회의가 지닌 지적인 측면인 것이다. 그런데 회의는 때로 그러한 지적 측면뿐 아니라 참

석 구성원의 감정이나 심리적 태도를 교환하는 자리, 또는 정신적 대립을 해소시키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회의는 감정 정리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나 착각에 빠져 있던 구성원들이 회의를 통하여 보다 고차적인 조직목표나 과제를 지향하는 태도나 의욕을 일으키는 일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정리·통합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회의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 2) 회의의 효과

- ① 정보나 지식을 철저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
- ② 의견의 교환능력 통하여 집단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합할 수가 있다.
- ③ 실행의욕이 높아진다.
- ④ 많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의견에 의하여 보다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을 피할 수 있다.
- ⑤ 많은 사람을 참여시킴으로서 사기를 높이고 귀속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 ⑥ 자기 계발, 상호계발의 기회가 된다.

## 3) 회의의 3요소 - ① 의제, ② 구성원, ③ 회의리더

## 4) 회의리더의 역할과 의무

### A. 리더의 임무

- 참가자 전원에게 골고루 발언의 기회를 준다.
- 발언의 질을 향상시켜 토의를 원활하게 리드한다.
- 토의가 의제에서 이탈되지 않게 항상 유의한다.
- 토론은 되도록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으로 한다.
- 적당한 중간요약을 실시한다.
- 의제에 충실한 토의가 진행되도록 한다.
- 최종의 결론을 명확히 한다.

### B. 리더가 해서는 안될 일

- 회의참가자의 사고를 지배하려 하는 것
- 자기 혼자만이 너무 많이 발언하는 것
- 논쟁에 개입하는 것
- 신뢰를 잃는 언동을 함부로 하는 것
- 보기 흉한 버릇을 보이는 것

### C. 리더의 자질

- |                 |                  |
|-----------------|------------------|
| · Head(자질)      | · Hand(기능)       |
| · Heart(태도)     | · Health(건강)     |
| · Honor(명예)     | · Humor(익살)      |
| · Humanity(인간성) | · Humbleness(겸손) |

## Ⅲ. 회의의 원칙과 진행방법

### 1. 회의의 원칙

#### 1) 회의에서의 구성원의 권리

- (1) 동의 제출권 : 동의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2) 토론 발언권 :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권리
- (3) 결정 참여권 : 의사결정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2) 회의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1) 개회 : 회의의 시작
- (2) 폐회 : 회의의 종료
- (3) 휴게 : 회의 도중 잠깐 쉬는 것



- (4) 정회 : 휴게하기 위한 회의의 일시 정지
- (5) 속개 : 정회를 끝내고 다시 개의하는 것
- (6) 유회 : 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하지 못하는 것
- (7) 동의 : 자기의 의견을 어떤 일정한 형식에 의거 회의에 제의하는 것
- (8) 재청 : 동의의 제안자 이외의 또 다른 찬성자
- (9) 부의 : 동의를 검토, 수정, 보완하여 의안으로 채택하는 것
- (10) 의안 : 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할 안건
- (11) 의사통칙 : 그때 그때의 운영에 관해 의결로서 정해 놓은 회의 규칙

### 3) 회의에서 지켜야 할 원칙

- (1) 발언자유 원칙 : 회의 구성원은 누구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 ① 민주주의는 비판, 토론, 반대의 자유를 가진다.
  - ② 발언 횟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허가가 있어야 한다.
  - ③ 발언권은 찬·반 의견이 교대로 발표되도록 부여되어야 한다.
  - ④ 회의 리더는 발언하고자 하는 구성원에게 찬·반 중 어느 편인가를 물어, 직전 발언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의 발언 신청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 (2) 정족수 원칙 : 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가 참석해야 한다.
  - ① 의사 정족수 : 회의 개최(성립)에 필요한 최소의 참여수  
회의 도중 참석자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장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의사 정족수를 확인하고 이를 참석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② 의결 정족수 : 공식적인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참여수  
가.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도 의결가능한 사항 :  
폐회 결정, 휴게(정회) 결정, 차기 회의의 일시와 장소 결정

## 나. 회의도중 정족수 미달인 경우

정족수 미달 확인 이전의 의결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이후부터는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도 다룰 수 있는 사항만을 다루어야 한다.

(3) 일사부재의의 원칙 : 회의의 규칙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문제는 절차상의 과오가 없는 한 그 회의 중에 다시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

(4) 회의불계속의 원칙 : 의사일정에 올라 있었지만 시간이 없거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중도에서 폐회함으로써 미처 심의하지 못한 의안들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회의의 폐회와 함께 모두 폐기된다.

(5) 한 번에 한 사람씩 발언하는 원칙 : 회의에서는 타인의 발언하고 있는 중이라면 발언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발언하여야 할 경우 기존의 발언자는 중단하고 앉아야 한다.

(6) 의장은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 : 의장은 회의 진행 책임자일뿐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7) 평등보장의 원칙 : 회의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모든 구성원은 1인 1표의 표결권과 기타 모든 권리를 똑같이 향유한다.

(8) 소수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 : 소수파의 의견을 공정한 입장에서 존중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인격 존중의 원칙 : 회의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 대한 폭력, 욕설, 비방, 인신공격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회의의 준비

### 1) 회의 개최의 검토

(1) 그 문제를 자기 책임 권한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2)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가?

- (3) 그 문제 처리의 의의와 목적은 분명한가?
- (4) 회의에 상정하는 경우 일반적 기준에 맞는 것일까?

## 2) 회의의 추진 계획

- (1) 회의의 전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 의견의 도출을 위한 질문법 활용은?
- (3)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가?
- (4) 정보와 데이터 등, 미리 준비해 둘 것은 무엇인가?
- (5) 회의 소요시간은 얼마나 필요한가?
- (6) 상사의 의견이나 생각을 사전에 체크해 둔다.

## 3) 회의의 준비

(1) 회의리더는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정비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 ①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 실물, 사진, 그림 등의 데이터를 충분히 갖추어 둔다.
- ② 각자에게 배포할 자료를 인원수에 따라 충분히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미리 배포하여 읽어두도록 당부해 둔다.
- ③ 참석자들에게는 미리 개최일, 시각, 장소 등을 연락하고 철저히 주지시켜 둔다.
- ④ 필요에 따라 자료, 노트, 필기도구 등을 지참하도록 전달해 둔다.
- ⑤ 의제에 대해 사전에 생각해 보고 참석하도록 주지시켜 둔다.

(2) 회의장 : 회의를 회의장의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회의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장소 : 참석자수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좌석의 배치 : 가능한 한 회의장에 집중식으로 배치한다.

- ③ 채광과 환기상태 : 실내온도, 공기유통 등을 고려한다.
- ④ 회의 설비의 준비와 배치 : 의사봉, 의사일정, 필기 도구, 회의자료 등
- ⑤ 전원이 대화하기 쉽고 듣고 보기 쉽고 침착하게 토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출입이나 기타 실내 동작이 토의를 방해하지 않도록 레이아웃에 둔다. 의자, 테이블, 음향기기, 환경 등을 정비해둔다.

### 3. 회의의 진행순서

#### 1) 개회선언

의장은 개회 전에 미리 회의장에 나와 개최 예정 시각에 의사 정족수가 되면 곧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구성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개회를 연기하고, 이것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유회를 선언한다.

#### 2) 국민의례

#### 3) 단체의례(강령낭독 등)

#### 4) 의장인사

#### 5) 전 회의록 승인

#### 6) 사항보고

임원보고, 재정보고, 상임위원회보고, 특별위원회보고, 특별일정보고

#### 7) 의안제출 및 심의

(1) 의안제출, (2) 제안이유 설명, (3) 토론, (4) 의결

#### 8) 폐회선언

## IV. 의사진행의 방법

### 1. 의사일정

의사일정이란 개회의 일시와 회의의 안건 및 순서를 말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을 미리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원은 의장에게 예고하지 않은 의안도 회의 중에 동의로써 제출할 수 있다. 의사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참석자가 발언 중이더라도 의사일정 이의 동의를 제출하여 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출하여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 2. 의사진행 과정

#### 1) 의제의 도입

- (1) 회의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친숙하게 하도록 한다.
- (2) 회의의 목적을 이해시키고 진행방향을 제시한다.
- (3) 의안을 제출하여 의제를 채택하고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 (4) 의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전달한다.
- (5)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 2) 의견의 전개

- (1) 회의의 목적에 맞는 토론을 진행시킨다. 즉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한다.
- (2) 토론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 (3) 회의의 주제를 벗어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고집하여서는 안된다.
- (4) 참석자 전원이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결론의 유도

(1) 도입된 의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의 전개가 있는 후 결론을 유도하여야 한다.

### 4) 총괄 종합

(1) 의사진행의 전 과정을 정리하고 결정된 방향을 참석자 모두에게 확인시켜 준다.

(2)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행책임자 및 실행계획을 결정한다.

(3)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정리해 둔다.

(4) 참가자 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눈다.

## 3. 의사진행의 기본수칙

### 1) 의사진행의 기본수칙

- |                 |                            |
|-----------------|----------------------------|
| (1) 소수의견을 존중한다. | (2)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
| (3) 질문을 존중한다.   | (4) 의장의 진행에 따른다.           |
| (5) 시간을 엄수한다.   | (6) 표결은 부드럽게 한다.           |

### 2) 회의의 금구사항(禁句事項)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은 삼가야만 원만한 회의를 이룰 수 있다. 특히  
 ① “잘 모르겠으니 적당히 결정하십시오”라는 말로써 회의를 경시하는 사람은 아예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라는 말로써 아는 체하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는 법이다. ③ “결정사항을 납득할 수 없으니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함치는 사람은 그런 결정을 내린 회의가 회의리더 혼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④ “A씨, 어떻게 생각해?”라는 식으로 남의 호칭을 마구 부르고 반말을

하는 일은 회의 예의상 서로 피해야 할 것이다. ⑤ “그건 틀렸어요”라고 남의 발언을 무안하게 하는 어투도 피해야만 하며, ⑥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라고 자신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식의 행동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 4. 토론

토론이란 상정된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해당 의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 1) 토론의 목적

- (1) 의안으로 상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해를 깊게 하고
- (2) 회원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게 하며
- (3) 상호간의 의견을 분석 비교하고
- (4) 좋은 의견으로 수정, 정리, 통합하게 하여서
- (5) 제일 좋은 의견을 전체의 의사로 결정하기 쉽게 하도록 하는데 있다.

##### 2) 토론시 발언 요령

- (1) 발언권을 잃을 것
- (2) 타인의 발언 중에서 삼갈 것
- (3) 의장의 발언제안에 따를 것
- (4)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 (5) 발언은 의장에서 할 것
- (6) 타인의 발언 내용에 유의할 것
- (7) 메모를 이용할 것
- (8) 의제에 대해 연구할 것
- (9) 감정에 흐르지 않도록 할 것
- (10) 경어를 쓰고 타인에 대한 폭력, 욕설, 비방, 인신공격은 하지 말 것

## 5. 표결과 그 발표

### 1) 표결의 의미

의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회의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표결은 회원이 회의의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수효를 집계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절차이다.

### 2) 표결의 방법

(1) 만장일치에 의한 표결 : 제출된 의안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때 의장은 이를 전반적 동의 혹은 암묵적 동의로 해석하여 의안통과를 선포할 수 있다.

(2) 점호에 의한 표결 : 참석자가 의장의 호명에 따라 “예”라고 대답하면 찬성,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기권으로 처리된다.

(3) 행동에 의한 표결 : 거수 혹은 기립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된다.

(4) 투표에 의한 표결 : 기명 혹은 무기명투표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배부된 투표용지 양식에 맞추어 찬성 혹은 반대를 표시할 수 있다. 무기명투표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명투표는 가부의 표결을 기록에 남겨 그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원선거에서는 무기명투표가 주로 쓰인다.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며, 정해진 기표양식에 어긋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 3) 표결 절차

(1) 한 개의 의안심의에 있어 복수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표결 처리하고자 할 때 맨 나중에 상정된 의견부터 표결 처리한다. (재개의안 - 개의안 - 원안)

(2) 찬반 표결인 경우 찬성을 먼저 묻고 다음 반대를 묻는다.

(3)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4) 득표수의 계산

(1) 의장은 표결 전에 반드시 가결에 필요한 표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의사정족수 확인 : 회의(표결)성립 여부

② 의결정족수 확인 : 표결결과 승인 여부

(2) 회의 도중 구성원의 이탈로 참석자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장은 표결 전에 반드시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고, 이를 참석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5) 의사봉

(1) 회의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의사봉을 두드려서 그 결정사항과 표결결과를 참석자들에게 확실하게 널리 알림으로써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한다.

(2) 의사봉은 개회, 폐회, 휴게, 정회, 속개, 의안의 상정, 의안의 결정의 시기에 사용한다.

(3) 타봉횟수 : 일반적으로 3회를 타봉한다.

#### 6. 의장의 역할

##### 1) 의장의 임무

(1) 예정된 시간에 개회를 선언한다.

(2)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3) 순서 있게 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4) 적절한 시기에 표결하도록 한다.

(5) 표결결과도 큰 소리로 분명히 발표한다.

##### 2) 의장의 태도

- (1)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2)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회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 (4) 인내심을 가지고 온화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5) 공정심을 가지고 절대적인 회원들의 신임을 획득해야 한다.
- (6) 적당한 유모어로 긴장된 분위기를 조절하고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 (7) 친절한 태도로 회원들을 격려하여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3) 회의중 의장의 역할

- (1) 개회의 선언
- (2) 정족수 확인
- (3) 발언 질서유지
- (4) 발언 내용의 조정(요약, 보충, 결말)
- (5) 제청 유무 확인
- (6) 질의와 반대 의견의 구분, 제지
- (7) 발언권유
- (8) 불편부당한 위치
- (9) 의제의 초점파악
- (10) 가부동수 결정권
- (11) 폐회선언

### 4) 의장의 직권

(1) 부당한 제안의 거부 : 회의의 목적에 반하거나, 정관이나 국법에 위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2) 발언의 중지 : 의안에 벗어난 발언의 경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 발언권 없이 하는 발언은 이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으며, 또한 질서가 어지러운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바로 잡을 때까지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

(3) 방해자의 퇴장 : 회의 진행에 현저한 방해 활동을 하는 자는 다른 참석자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퇴장시킬 수 있다.

## V. 의사진행법의 기본개념

### 1. 발언

#### 1) 발언의 신청

- (1) 발언하고 싶은 회원은 “의장!”하고 발언을 신청한다.
- (2)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언희망자에게 “A회원, 발언해 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허가한다.
- (3)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일어서서 자기가 발표하고자 하는 의견을 발표한다.
- (4) 발언자가 발언을 마치면 다음 희망자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발언을 신청해야만 한다. 그러나 앞의 발언자의 발언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손을 들거나 일어서서 발언하는 행위는 삼가야만 한다.

#### 2) 발언에 대한 의장의 역할

- (1)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려는 사람보다, 비록 발언신청은 늦게 했더라도 발언 희망자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 (2) 앞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손을 들고 일어서서 발언하는 사람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 (3) 두 사람 이상의 발언 요구자가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보다 적게 발언을 한 사람에게 먼저 발언권을 준다.
- (4) 찬성 발언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반대발언을 하려는 사람에게, 그리고 반대발언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찬성발언을 하려는 사람에게 먼저 발언권을 준다.

(5) 발언 중인 사람에게 발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언중”이라고하여 그 사람을 제지하여야 한다.

(6)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언 도중이라도 발언에 대한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3) 발언을 하는 방법

- (1)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낸다.
- (2)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은 금물이다.
- (3)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확실히 한다.
- (4) 반대의견은 이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5) 자아 도취적인 의견은 금물이다.

### 4) 의견을 듣는 방법

발언자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대략 다음 4가지이다. ① 진지하게 듣는다. ② 요약해서 듣는다. ③ 메모하면서 듣는다. ④ 단점에 대한 대책도 제시한다. 이 경우에는 특히 발언자가 사실(A는 B이다), 추론(A는 B이니까 C임에 틀림없다), 평가(좋다. 나쁘다 / 맞다. 틀린다), 제안(A는 B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장(A는 B이어야 한다)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구별해서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회의의 구성원들은 무엇보다 발언자를 격려하면서 그 의견을 듣는다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할 것이다.

### 5) 발언시 주의사항

- (1)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전달한다.
- (2) 증거를 제시하고, 요지를 정리한다.
- (3) 효과를 표시한다.
- (4) 단점에 대한 대책도 제시한다.

- (5)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도 언급해 둔다.
- (6) 회의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7) 서투른 발언이 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목소리가 너무 작지 않거나, 발언이 시종일관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혼자만의 의사를 부리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삼가야만 한다.
- (8) 언어를 사용할 때 주의한다. 특히 어휘선택에 주의하며, 상대방을 곤궁에 빠뜨리는 말은 피한다. 또 끝말은 좋게 하며, 가끔 유머를 섞는 것이 좋다.

## 2. 동의

### 1) 동의의 의의

동의를 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던 의안 이외의 사항을 의제로 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제출되는 발의(發議)를 지칭한다. 이는 곧 회의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회의의 절차를 완수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제출되는 제안(提案)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동의는 잡다한 의견 중에서 하나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을 스스로 구상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유하려는 주장을 말한다. 특히 동의는 “~를 하자”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다른 회원에게 주장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라고 생각한다”는 것과 구별된다.

회의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무수히 많은 동의를 통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회의는 동의로써 움직인다”라고 말해도 이는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의장을 모셔왔다고 하더라도 회의 구성원들이 적당한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의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이처럼 동의는 회의의 목적을 부여하고 회의의 교통정리의 구실을 완수하며, 개인이나 부채자 또는 다수자의 권리를 보고하고 나아가 회의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2) 동의의 성립

#### (1) 동의의 성립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발언자는 “나는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동의를 제출한다. 동의는 오해와 혼란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긍정형으로 하여야 한다.

## (2) 동의의 성립

의장은 동의를 받아 “지금 ~와 같은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지지(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 참가자 중에 1명 이상이 “찬성(재청)있습니다”라고 하면 동의가 성립한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동의는 즉시 취소되어 성립하지 못한다.

## (3) 동의의 철회

동의를 제안자가 동의 중 취하(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의장은 재청자의 의견을 물어 재청, 토론 없이 동의를 철회한다. 만약 반대의견이 있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 (4) 동의의 성립과 동의의 결정

동이가 제출되고 찬성 지지자가 있으면 동이가 성립되었지만 아직 동의사항이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토의를 거친 후에 가결되어야만 결정이 이뤄진다.

## 4) 동의의 종류와 의미

### (1) 다음 회의의 의결 동의

다음 번 회의의 개최여부 및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는 동의이다. 의장은 폐회하기 전에 직권으로 또는 제출을 받아 참석자들에게 다음 번 회의의 개최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이 동의는 재청이 필요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나 정족수가 되지 아니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

## (2) 폐회 동의와 휴회 동의

폐회 동의는 회의를 끝내자는 동의이고 휴회(정회)동의를 회의를 일시 중지하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재청이 필요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정족수가 되지 않아도 결의할 수 있다. 특히 식사를 위해 또는 투표결과를 기다리는 동안과 같은 단시간의 휴회동의를 긴급동의로 제안하여야 한다. 휴회 시간이 끝나면 의장은 회의 속개를 선언하고 휴회전에 처리하지 않은 의제를 재개해야 한다.

## (3) 수정동의

원동의에 대해 수정을 하자는 동의이다. 수정동의를 원동의가 토론 중이어야 하고 원동의와 같은 문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원동의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의장이 판단한다. 수정의 방법으로는 일부의 삭제, 일부의 추가, 일부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수정동의를 재청이 필요하며 토론의 대상이 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4) 긴급동의

회의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동의이다. 회의장 혼란시의 질서회복, 문서의 부정변경, 의사진행 규칙위반 등 회의의 명예, 권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동의이다. 긴급동의를 재청이나 토론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의장은 그 권한으로서 이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5) 의사일정 변경동의

의사일정을 바꾸어 회의를 진행시키자고 할 때 제출되는 동의이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다른 참석자의 발언 중에도 제출할 수 있으나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6) 의사진행 이의동의

의사진행이 규칙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릇된 조치를 취한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출되는 동의이다. 참석자가 “의사진행에 이의 있습니다” 또는 “의장, 규칙입니다” 라고 발언하면, 의장은 우선적으로 그 발언자에게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규칙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의장은 그 이의가 정당한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 (7) 의장결정 이의동의

참석자가 승인하지 않은 것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동의이다. 의장은 표결에 부쳐서 가결되면 결정된 것이고 부결되면 폐기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표결에 참석할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이는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동의는 다른 참석자의 발언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 (8) 심의반대동의

원동의 및 긴급동의가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를 반대하는 동의이다.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다른 참석자의 발언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 (9) 심의연기동의와 재상정동의

지금 심의되고 있는 원동의에 대하여 좀 더 충분히 생각해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까지 또는 무기한으로 심의를 연기하자는 동의이다.

## (10) 토론종결 동의와 토론제한 동의

지금 심의되고 있는 동의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곧 표결에 붙이자고 요구하거나(토론 종결동의), 토론의 시간이나 발언자의 인원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자(토론제한동의)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재청을 필요로 하나 토론과 수정



을 하지 못하며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 (11) 인준동의

회장 등이 회(會)의 이름으로 권한 이외의 일을 하였을 때 총회가 그 일을 추 후에 승인해 주는 동의이다.

## 3. 질 문

### 1) 질문을 할 때의 유의사항

(1) 한 번에 한가지 질문만 하여야 하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2) 질문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하며, ‘왜’, ‘어떻게’를 물어 상대방의 사고를 촉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3)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반복하지 아니한다.

(4)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5) 방향을 정확히 하며, 유도심문을 하지 않는다.

(6) 회의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7)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감정적인 질문은 피한다.

### 2) 의장의 질문

(1) 전반질문 : 의장이 “~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의하신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은 없으십니까?”와 같이, 참석자 전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2) 지명질문 : 답할 사람을 지명하여 그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이는 자기의 의견을 잘 말하지 않는 회원, 사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회원에게 의견이나 정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3) 릴레이 질문 : 의장이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느 회원에게서 나온

의견을 다른 참석자에게 릴레이식으로 던지는 질문이다.

(4) 반전질문(反戰質問) : 의장이 구성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 답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반대로 질문자에게 되짚어 던지는 경우이다. 특히 의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에 대한 답변방식으로서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으로 답변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 3) 답변시의 유의사항

- (1) 정성껏 진지하게 당당하게 답변한다.
- (2) 질문의 내용에 맞게 답변한다. 회피하거나 누락이 없도록 답변한다.
- (3) 질문자를 무시하지 않고 답변한다.
- (4) 질문도중에 답변하지 아니한다.
- (5) 알기 쉽고 납득하기 쉽게 답변한다.

## VI. 존경받는 회의 리더가 되려면

회의 리더가 회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갈 때에는 참가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토의를 결론으로 원만하게 이끌어 가려면, 리더는 참석자들이 문제의 핵심에 눈을 돌리게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하며 탈선을 방지하는데 힘을 쏟아야만 한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며, 토의의 진행에 대해 때때로 요약하거나 통합하여 설명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만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생각, 경험 등을 참가자 전원이 함께 평가하도록 하면서, 결론을 서둘지 않고 진의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리더는 회의의 목적을 확인하면서, 참가자가 자주적으로 상호 평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만 한다. 특히 토의를 마무리 지을 때 리더는 토의의 과정을

요약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를 바탕으로 결론을 재구성하고 요점을 강조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행의욕을 갖게 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얻어진 결론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참여의 만족감과 실행의욕이 우려 나오게 된다면 그 회의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회의에는 평가와 반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리더는 그 회의 운영에 대해 반성하면서, 결정방법에 대해 고뇌에 찬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법이다. 리더는 회의가 화제만 산발적으로 나왔을 뿐 깊이가 없었다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화제를 독점했다는 등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팀 전원의 이해와 동의 아래 원만히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해 들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마음을 편하게 유쾌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보다, 성과도 있었고 보람도 있어 전 구성원이 마음으로부터 열심히 참여했다는 응답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어떤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거나, 좋은 일에는 서로 찬동했지만 곧은 일이나 분명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토의하지 않은 회의는 반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더구나 비건설적으로 보이는 발언이나 태도가 있었거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반성하지 못한 회의에는 여운이 남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항상 상황에 따라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는 내성적인 참가자가 있어서 참가자들의 발언이 저조할 경우에도 모두에게 흥미 있는 화제를 제공하고, 사례와 비유를 인용하면서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이 탈선했거나 의견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리더는 문제를 보다 더 깊이 파헤칠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불분명한 점을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심지어 회의에서 분규가 생길 경우, 잠시 방치해 두었다가 시선을 보내어 컨트롤을 시도해야만 한다. 특히 참가자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 쟁점이 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하도록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그 밖에

회의 이외의 일 때문에 참가자들이 동요하거나 토의에 열이 식었을 경우, 이를 회의의 지도에 역이용하여 토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이처럼 회의의 리더로 자리잡기 위해 여성농업인은 질문을 요령껏 사용해야만 한다. 특히 회의를 결론으로 이끌어 갈 때 참가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토의를 결론으로 원만하게 이끌어 가려면, 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문제의 핵심에 눈을 돌리게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하는데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때때로 토의 결과를 요약하거나, 토의의 진행을 요소별로 분석하거나 생각이나 의견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통합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결론을 서둘러서 진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며, 목적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리더는 참가자들이 자주적으로 상호 평가할 수 있게 이끌어야만 토의의 전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처럼 토의과정을 요약·확인하고 결론을 재구성하여 요점을 강조하며, 실행의욕을 갖게 하여 전원이 납득하고 참여의 만족감과 실행의욕이 우러나오게 된다면 그 회의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회의의 평가는 필요하며, 특히 리더의 자기 평가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회의 리더의 행동을 그 동기와 심리적 태도에서 다음의 내용이 평가될 필요가 있겠다. 그룹의 요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나? 자기행동이 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가? 화제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가? 편중된 행동은 없었으며 그룹을 지배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자기 점검은 자기평가에도 사용되며 제3자의 관찰을 통해서도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리더는 특히 그룹 전체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는 여간 해서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리더에 대한 관찰은 제3자에게 부탁하여 분석하는 것도 자기개선에 필요하다.

이처럼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기 통제를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리더의 회의진행 능력은 일단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것처럼 리더의 능력은 토론 내용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의 기법과 동시에 참가자 각자가

지금 어떤 심리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해 리더로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라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알맞는 반응을 나타내는 능력이 그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명득, 「언어예절과 칭호」, 『1999년도 전통문화교육과정』, 농촌생활연구소, 1999.
- 김양호, 「화술과 인간관계」, 『여성지도자교육과정』, 2000년도 특별교육과정,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0.
- 김재기, 「농촌사회교육방법」, 『제8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공통』,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 2000.
- 손병희, 「대화의 기법」, 『1996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강의 교재(공통과목)』,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 이호철,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까?」, 『농업경제와 정책』,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001.
- 최승훈, 「조직관리와 회의운영」, “2000년도 특별교육과정 「여성지도자교육과정」”,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 〈부록 1〉 리더의 자기 평가표

	년	월	일	수	우	미	양	가
1	회의진행상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였다.							
2	정시에 회의를 시작했다.							
3	모든 참가자에게 의견을 구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회의를 잘 진행시켰다.							
4	참가자를 자연스럽게 토론에 유도했으며 결코 무리하게 이끌지 않았다.							
5	회의를 언제나 테마에서 벗어남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시켜 목표에 한걸음 한걸음 접근해 갈 수 있었다.							
6	회의 도중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훈계적 설교 또는 강요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7	어디까지나 공평한 입장에 섰으며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8	참가자로부터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즉시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썼다.							
9	쉬운 말로 되도록 간결하게 말을 이어갔다.							
10	중간 중간 토의를 정리하는데 마음을 썼다.							
11	철판이나 도표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12	사전에 세운 예정대로 중요사항에 관해 또 그 적용에 관해 충분히 연구를 진행시켰다.							
13	회의결과의 총정리를 모두 함께 하면서 회의를 끝냈다.							
14	예정한 시간 내에 회의를 끝마쳤다.							

## 〈부록 2〉 회의 진행 가상 시나리오

식 순	담당자	진행요령(시나리오)
내빈소개	사회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내빈소개(명단은 사전에 주최측에서 준비함)
개회선언	사회	지금부터 ○○○의 ○○년도 ○○○회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정식명칭사용).
국민의례	사회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단상위의)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음악(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음악) 다음은 순국선열 및 선배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음악(추도음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보고)	사회 낭독자	(다음은 약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약사보고
회장인사	사회 담당자	다음은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격려사
축사	사회 담당자	다음은 ○○○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 축사 - 지위, 조직과의 연관성, 덕망 등으로 고려하여 내빈 가운데 몇 명이 한다.
폐회선언		이상으로 ○○○의 ○○○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시부터 제2부 순서로 ○○○회가 시작되겠습니다.  - 휴식
성원보고	사회	제적 ○○○명 참석 ○○○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식 순	담당자	진행요령 (시나리오)
개회선언	의장	성원보고와 같이 재적 〇〇〇명에, 참석 〇〇〇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〇〇〇 회의 〇〇년도 〇〇〇 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타봉
〇〇〇 인사	사회 〇〇〇	다음은 〇〇〇 인사가 있겠습니다. - 〇〇〇 인사(회의의 소집목적과 의의 설명)
지난번 회의록 승인	사회 낭독자 의장	다음은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이 있겠습니다. - 전차 회의록 낭독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후 승인(수정, 보완, 부결) - 부결된 경우 차기 회의에서 재승인 요청 그러면 전차회의록은 승인(수정, 보완, 부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타봉
의안채택	사회 의장	다음은 의안 채택이 있겠습니다. 제1호 의안 〇〇〇 건, 제2호 의안 〇〇〇 건, ...마지막 의안 〇〇 〇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안 채택에 동의하십니까? 제시된 안건 외에도 추가할 안건이 있습니까? - 추가안건은 동의, 재청 후에 토론을 찬반 토론을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제1호 의안 〇〇〇 건, 제2호 의안..., 마지막 의안 〇〇〇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 의사봉 3회 타봉
의안상정	의장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과 호별 상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일괄상정 : 채택된 의안 전체를 일괄 상정하는 것 * 호별상정 : 채택된 의안을 호별로 상정하는 것 - 토론후 결정 그러면 일괄(호별) 상정하겠습니다.



식 순	담당자	진행요령 (시나리오)
의안심의	의장	<p>의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심의와 호별 심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p> <p>* 일괄심의 : 상정된 의안 전체를 일괄 심의하는 것 의안 전체가 한꺼번에 승인 혹은 부결된다.</p> <p>* 호별심의 : 상정된 의안을 호별로 심의하는 것으로 의안이 각 호별로 승인 혹은 부결된다.</p> <p>- 토론 후 결정</p> <p>그러면 일괄(호별) 심의하겠습니다.</p> <p>- 의사봉 타봉</p>
	의장	제1호 의안 ○○○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자 의장	<p>- 제안 설명</p> <p>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토론후 결정(승인, 수정, 보완, 부결)</p>
	의장	<p>제1호 의안 ○○○ 건은 승인(수정, 보완, 부결)되었습니다.</p> <p>- 의사봉 타봉</p> <p>* 제2호 의안부터 마지막 의안까지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p>
	기타토의	<p>의장</p> <p>다음은 기타토의가 있겠습니다.</p> <p>- 의제설정은 동의, 재청, 찬반토론 후 채택여부 결정</p> <p>- 토의는 제안설명, 수정, 찬반토론을 거쳐 결론 도출</p>
폐회선언	의장	<p>폐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그러면 이상으로 ○○○ 회의 ○○년도 ○○○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p>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각 기구별 회의는 총회와 비교하며, 식순의 차이는 있으나 식순별 진행요령 및 시나리오는 대동소이하다.

#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3 : 법률상식

김 문 영

농협중앙회 고객만족팀

---

## I. 머리말

## II. 농업분야 법률분쟁의 유형과 해결방안

1. 농업인의 법률분쟁 현황과 특징
2. 농업인의 분쟁유형과 예방
3. 분쟁의 해결방안

## III. 여성농업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1.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3.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4. 부동산등기제도
5. 주택임대차보호법
6. 내용증명우편제도
7. 혼인과 이혼
8. 재산상속
9.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상식
10.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11.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
12.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

## IV. 마치면서

---



# 여성농업인 리더가 되는 법3 : 법률상식

## I. 머리말

사회생활이 복잡해져 감에 따라 법률관계 또한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에도 종전의 자급자족의 농업에서 기업 농으로 변화함에 따라 더욱더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대형화하여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농업인은 도시인에 비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법률적 지식도 부족하고 농사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농촌여성전문인력이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법률적인 분쟁의 결과는 당사자의 타협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전액을 이기거나 전액을 지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타격은 매우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농촌여성전문인력에 대하여 생활법률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법률문제로 인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농업분야 법률분쟁의 유형과 해결방안

### 1. 농업인의 법률분쟁 현황과 특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2001년도의 농업인의 분쟁사건(법률 상담은 제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농업인의 분쟁사건 현황(2001.1. - 5월)

(단위 : 건)

내 용	건 수	비 율(%)
손해배상	430	19.3
물품대금	259	11.6
어 음 금	6	0
금전대차	341	15.3
임금, 퇴직금	249	11.2
임 대 차	79	3.5
부 동 산	207	9.3
가사, 호적	55	2.5
기 타	595	26.8
행정사건	11	0.5
합 계	2,232	1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인의 법률분쟁도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별로는 손해배상사건의 건수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금전대차 관련 사건이었고 세번째로 임금, 퇴직금관련 사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임금, 퇴직금관련 사건은 농업인 자신의 사건이기보다는 가족들의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농업관련 분쟁은 일반사건과는 달리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처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사실관계의 규명이 어렵다. 따라서 승패의 예측이 곤란하다.

둘째, 사건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손해배상의 경우 원인에 비하여 결과가 크다.

넷째, 분쟁이 장기화된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다섯째, 분쟁이 집단화 또는 대량화 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는 경우가 적다.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위임하여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승소가 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결과를 가지고 수입자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무모한 불복을 함으로서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2. 농업인의 분쟁유형과 예방

1) 손해배상은 대부분 교통사고나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 배상액의 산정은 농촌일용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농업노동 종사 가능연한까지를 계산하여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판례에서는 농업종사자의 노동능력 가동연한을 통상 63세 내지 65까지로 보고 있으나, 현재의 농촌의 현실을 보면 70세 이상까지 농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판례도 농업가동연한을 상향조정토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2) 금전대차관련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와는 다를 바 없지만 농촌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고 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사전에 계약서의 작성 등을 지도하여 이러한 분쟁은 상당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밭떼기(포전매매)와 관련된 사건은 농업인에게 빈발하는 사건이다. 특히 농작물은 가격의 변동폭이 크고 가격예측이 불확실하여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상태로 매매할 경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작물을 포전매매할 경

우에는 가격폭락이 원인이지만 농업인의 경작상의 하자를 들어 물건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후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농작물을 갈아엎어야 할 경우 이를 재물손괴죄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서에 위 사항들을 반영하여 분쟁에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에서 발간한 “농업인을 위한 계약서”를 참고하기를 권한다.

4)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농지임대차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농지를 임차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작을 하던 중 임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재계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공작물로 보기 어려워 임차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행사가 불가능하다. 즉 임대인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따라서 지상물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계약서가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원상 회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 조항은 임차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토지를 인도할 경우 시설물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임대인이 임대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으로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5) 비닐하우스 설치 농가의 경우 겨울철 정전사고로 인하여 농작물이 동사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전력에 전력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력공급 신청서에는 정전피해를 대비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자가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서 사고발생시 한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신청서에 한국전력의 내규를 따르도록 되어있고 한국전력의 내규에 의하면 한국전

력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전 사고시 사실상 책임을 묻기가 지난하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농가에 자가발전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비닐하우스 설치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자가발전 시설은 대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가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불량 농자재 사고가 점증하고 있으나 농자재의 불량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불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검증이나 실험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는 개인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더욱 입증이 곤란하다. 더욱이 불량농자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농자재 가격자체는 얼마되지 않지만 1년 농사를 그르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피해액은 훨씬 크다. 따라서 조기에 수습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불량농자재 사고의 구체적인 예로는 종자, 농약, 비료, 비닐, 각종 농기계 등이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사전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7) 종전 농촌의 관행은 농지를 매수했을 경우 농지를 인도받아 경작은 해왔으나 농지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도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와 소유의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에는 매도자의 인감없이도 보증인 2명을 세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한시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매도자의 허락없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아직도 등기와 소유가 일치하지 아니한 농지가 많은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기대해 본다.



8)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도로의 개설을 지정 고시하고, 도로 편입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도로가 사람들이 통행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도로가 되었고 그 후 행정기관에서 도로포장을 하는 등의 관리를 해오고 있어 보상문제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간의 통행로 문제로 다툼이 점증되는 등 도로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관리해 오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어느 토지에 진입할 통로가 없다면 이웃토지 소유자는 통로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통행하는 사람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사용료는 법원의 조정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3. 분쟁의 해결방안

#### 1) 전문가와 상담하라

복잡 다기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지식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건을 그르치고 나서야 상담할 경우 그 피해는 복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속한 상담을 하는 것이 사건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2)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보라

아무리 법적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력이 없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먼저 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농작물관련 사고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증거보신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증거보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손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부가 현장을 감정 또는 검증하여 손해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이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에 유리한 방법이다.

### 3) 민원(소비자분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기관이나 사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거나 업무의 부당한 처리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업체나 기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소비자분쟁처리기구)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고 가장 간편한 해결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행정부의 민원담당부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각부처 등이 있다.

### 4) 분쟁조정기관을 활용하자

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기관의 이용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심의위원회에 금융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손해의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자신의 주장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위와같은 분쟁조정기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감정이나 실험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장사실이 정당한지 여부를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이를 이용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협약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소비자보호사업을 활용하여 농협에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농협이 대행해 준다.

### 5) 무료법률 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도 무리이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최소한 300만원정도의 착수금이 소요되고 승소하였을 경우 사례금은 착수금과 동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소송이 1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심까지 수행할 경우 매심급마다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웬만한 소송은 직접수행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어있다. 더구나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가액의 0.5%), 송달료(소가가 3천만원을 초과하여 합의부사건인 경우 송달료는 1인당 26,000원으로 최소한 52,000원)도 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전부 무료이며 소송뿐만 아니라 소송 전 절차인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와 소송은 물론 강제집행까지 해 준다. 따라서 농업인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농협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대한 무료법률구조 기금의 재원은 농협이 개발한 농민사랑통장 이자의 일정액을 적립한다.

## Ⅲ. 여성농업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 1.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1) 금전거래시 대부분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약정없이 돈을 건네주고 문제가 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돈을 빌려 줄 때에는 후일 분쟁예방을 위하여 상환기일, 이자율 등 제반조건을 서류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2) 상대방의 주소, 성명이나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추후 분쟁발생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발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3) 돈을 빌려 줄 때에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고,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받아 놓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때 전세계약서만을 받아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세입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추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놓아야 한다. 즉 이를 법적으로 채권양도라 하는데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4)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가사(日常家事)에 사용된 경우에는 남편에게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빌린 돈을 가정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5)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한 마음에 채권자의 요구대로 응하였다가 상환할 때에야 불리한 계약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시에 내용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돈을 갚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완제한 경우에는 당초의 차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특히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후에 채권자가 소지했음을 기화로 어음이 수표를 가지고 다시 청구할 소지가 있으므로 회수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악덕사채업자의 경우에는 상환기일에 수령을 회피하고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에는 공탁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으면 연 5 퍼센트(상거래로 인한 대차관계는 연 6 퍼센트)

이고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종전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의 최고이율을 정하고 초과시 무효로한 바 있으나 이자제한법의 폐지로 최고이자율의 제한은 없다.

6)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포기나 한정상속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정확한 채무를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포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로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인 1998년 8월 27일자 이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게 되었다. 현재 개정민법 초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동 내용에 의하면 상속포기의 기산점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채무의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 참고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 수 없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과 대출이 얼마인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과 대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까지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신탁,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대한 채권채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전화 (02) 3876-8671, 8696, ARS (02) 3876-8530-40를 이용하기 바란다.

## 2.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에는 보증과 연대보증이 있다. 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고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최고검색항변권이라 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막바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은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귀가 있어야 하지만 상거래로 인한 계약은 연대라는 말이 없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갚았을 때에는 주채무자로부터 갚은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그 중 한사람의 보증인이 채무의 전부를 상환했을 때에는 자기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갚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인이 2명인 경우 채무의 전부를 상환한 보증인은 상환금액의 2분의 1을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3.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1)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자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위임장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는등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더 주의를 요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계약직전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등기부에 의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자는 먼저 해당 지번을 확인하고 입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확인하여 공부(公簿)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등은 설정금액에 관계없이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경우 설정액과 실제 채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이전 후에는 채무자 변경을 해 두어야 한다. 혹시 매도한 후에도 매도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산중개인의 말만을 믿어서는 안되고 만약 중개인의 말대로 믿고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고 확인을 받아 놓음으로써 추후 변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우리 나라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내용만을 믿고 계약한 경우라도 원인무효 등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관계를 확실히 알고 계약을 하여야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소유자의 허락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소유권을 임의로 자기 앞으로 이전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소유자는 위 부동산의 매수자나 전전 매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 부동산의 매수자나 전전매수자는 당초소유자의 원인무효 주장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하자 없음을 이유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4) 단기간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은 주의하여야 한다.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매수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5) 계약시에는 매도인측의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여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가급적 입회인을 참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 4.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

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2) 1개의 부동산마다 1개의 등기부가 있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저당권설정계약 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부동산 매수계약을 하고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후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경우에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후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3)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표제부와 점유부분의 표제부 2개로 구성되어 있음) 갑구, 을구의 4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4) 등기번호란에는 토지나 건물 대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5)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적혀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별도 등기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6)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다. 맨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각 등기사항 중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한다.

7) 예고등기란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



무효로 되면 예고등기의 효과에 의하여 예고등기 이후의 등기가 말소되는 수가 있으므로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등의 기재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도 그 권리의 확정결과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8)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과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러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각 선순위 권리자의 부담을 안고 사는 결과가 되므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시 부담부분을 감안하여 매수대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9)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경우에는 통상보증인 2명의 날인을 요함)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자 일방의 신청으로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10)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청서부분 3통, 등록세 납부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각 1통씩과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이 필요하다.

1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기필증(구 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서),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1통씩과 신청서부분1통씩과 등기의무자(매도인 등), 등기권리자(매수인 등)의 각 주민등록등본,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양도세, 소득세 부과대상인경우)등이 필요하며, 계약(예 매매,증여,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군수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이 5백만원 이상인 때에는 소정의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예 :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종전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지금은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12)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농지소재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관할관청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취득이 가능하다(앞으로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농림부의 방침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다).

13)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 이를 변경등기하려면 틀린 사실 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부분 2통이 필요하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려면 등기부의 기재가 잘못 되었음을 증명하는 시, 군, 구, 읍, 면장의 서면(예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 부분 2통이 필요하다.

1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 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분과 등기의무자 즉 설정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은 불필요하다.

## 5. 주택임대차보호법

### 1) 주택임차보호법의 실제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거용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건물용도가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공부상 공장을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임대차보호의 대상이 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주택의 임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대항력이라 한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집이 팔려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 새로운 주인에 대하여 종전 주인과의 임대차계약 내용(임차보증금액의 반환청구, 기간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제3자의 범위에는 매매, 교환,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임차하기 이전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처분가등기 등이 되어 있을 경우 그 권리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3) 우선변제권이라 함은 임차건물이 경매 등의 사유로 매매되었을 때 매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물론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 예컨대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등이 있을 때에는 차순위 또는 공동순위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권리자의 배당금이 과다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는 일정 금액이하의 소액보증금계약자에게는 선순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소액임차권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1,200만원까지 기타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800만원까지 보호된다. 보호의 범위는 주택가격의 2분의1범위 내이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우선변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5)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만일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다. 이를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 한다.

(6) 주택임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 기간을 2년이하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과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뜻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채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보호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임차인이 제2기의 차임(예 : 월세인 경우 2개월)을 연체하거나 기타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7) 임차 보증금의 증액(인상)은 임대차 계약 또는 일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설사 1년후 올리는 경우에도 기존 차임의 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8)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상 재산상속권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임차권 및 보증금등의 반환청구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주택임차권 및 보증금등 반환청구권을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임차주택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승계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인 상속권자 중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혼인예식 등 실체상의 혼인 절차는 밟았으나, 다만 민법 및 호적법에서 정하는 혼인신고 절차만을 밟지 아니한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 2)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차이

(1) 임차보증금액의 제한이 다르다. 즉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 청구를 하려면 그 보증금액이 소액이어야 한다(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이하).

(2) 두가지 경우 모두 대항력의 요건(즉 주민등록과 주택인도)을 갖추어야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구비 시기에 제한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경매개시 결정이 기입등기되기 전까지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자는 후순위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금액에 제한이 없고, 후자는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금액에 제한이 있다(보증금 중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1,200만원, 기타지역은 800만원 까지).

(4) 양자 모두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받는다.

### 3)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차이

(1) 경매청구권의 유무 - 전자는 없고 후자는 있다.

(2) 대항요건의 필요 - 전자는 갖추어야 하고, 후자는 갖추 필요 없다.

(3)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 전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하나, 후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4) 대지부분의 경락대금 관계 - 전자는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전세권등기는 토지와 함께 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6. 내용증명우편제도

1)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내용증명우편의 일정한 형식은 없다. 따라서 쓰고자 하는 내용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요구하면 된다. 문서의 내용은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삭제할 때에는 그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문서에는 수신자, 발신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발송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양도통지등은 제3자에게 통지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소송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상호간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 주었을 때에는 최고함으로써 기한이 도래함으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상환기일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증서없이 구두로 대출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사전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상환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7. 혼인과 이혼

### 1) 혼인

(1) 만 20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2)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 본이 같은 혈족사이의 남녀도 혼인할 수 있다.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4) 부부가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이고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이다.

(5)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 2) 사실혼

(1)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부부를 사실혼부부(일반적으로 ‘동거’를 말함)라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 청구도 할 수 있다.

(3)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혼인신고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넣어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5) 혼인신고없는 아내라도 남편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사,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6)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집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별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 3) 이혼

(1)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판사로



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재판상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둘째,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셋째, 배우자가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여섯째,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라 함은 예컨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행선고, 성적인불능, 성격파탄, 불치의정신병, 광적인신앙 등으로서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4) 이혼의 경우 결혼하여 함께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게 된다. 이와같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단 이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5)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자료 청구권이라한다. 즉 이혼 후에 있어서의 위자료라함은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 뿐만아니라 제3자가 이혼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6) 남편과 간통한 여자만을 처벌할 수 없고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하며 처벌도 같이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상대방 여자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

(7)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지만 서로가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중 어느한 쪽이 법원에 양육자나 양육비부담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8)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 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9) 이혼하면 본인의 뜻을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친권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도 자녀의 이름 밑에 친권자로 가입될 뿐 호적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 8. 재산상속

1)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아들, 딸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위와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예컨대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 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2)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 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의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 퍼센트를 더 받게 된다.

3) 자녀 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남편과 친정부모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 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보다 50 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다.

4)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고유의 상속 몫에 그 공로의 몫만큼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 그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 주도록 되어 있다.

5) 사망한 사람의 아들은 호적에 들어있건 없건간에 친자인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양자도 친자와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6)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 때 위 손자 및 외손자 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직계비속이 없다면 차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상속이 되는바,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포함되고 이미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친부모가 상속권자가 된다.

## 9.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상식

### 1)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1)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승무원의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도주(뺑소니)해 버리면 수사상 과실이 많은 것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되고 일단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

반교통사고(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1년 이상의 징역(상해사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사고)에서 사형까지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은 아예 없다.

(2)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피해이건 간에 전술한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사고가 나기 이전처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엄벌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일부 나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고 자신의 피해가 대단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상을 받아 내고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좋지못한 현상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된 것이다.

(2)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②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 ③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자시를 위반한 경우

- ④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⑤ 제한시속 20 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
- ⑥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시기 및 장소에서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에 위반한 경우
- ⑦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 ⑧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⑨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 ⑩ 주취 또는 과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 퍼센트 이상이며 보통성인 남자의 경우 소주 2잔, 맥주 2.5잔, 위스키 1.2잔, 청주 3.2잔 정도를 마신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①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고의 경우
- ② 인도 돌진 및 통과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 ③ 개문발차로 타고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 3) 자동차보험제도

#### (1) 강제보험 (책임보험)

① 강제보험은 모든 자동차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6천만원, 다친 경우에는 1천 5백만원까지, 후유장애가 생긴 때에는 최고 6천만원까지 보험금액을 장애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위 금액범위내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례비 등 시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가불금지급 청구서,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③ 피해자는 위 기재금액범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의 손해금액이 그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해자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2) 임의보험(종합보험)

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임의로 종합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 즉 책임보험은 인적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고 있고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들면 거의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② 종합보험에 든 경우라도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무면허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그리고 임의 보험은 약관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금액이상을 청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피해자측이 소송을 제기함을 기다려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는데 변호사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4) 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1)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2)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서류까지 모두 건네 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 지지 않는다. 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고있느냐, 운행의 이익을 누가 보

고 있는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라 하겠다.

(3)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차량의 소유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차주 등이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기의 과실이 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주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대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육교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로서는 사람들이 육교로 다닐 것을 믿고 운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육교밑을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상으로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것을 믿고 운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5)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재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6)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 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잘못의 정도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7) 당사자간에 배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

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에는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에는 이를 가해자 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 10.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 1) 예금 및 대출

(1) 계좌번호의 착오로 송금이 잘못된 경우에도 송금을 받은 예금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예금을 취소할 수 없다. 예금주와 협의하여 잘못 송금된 예금을 반환을 받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송금받은 예금주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줄 수도 없다. 따라서 송금을 할 때에는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수 밖에 없다.

(2) 보증을 할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인 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백지인 차용금증서상에 기명날인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대출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증을 서 달라는 사람에게 도장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서는 안된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보증인으로 세웠을 경우 책임을 지는 수도 있으며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주소성명은 쓰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보증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대출에 있어서 명의만을 빌려 준 경우에도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명의를 빌려 줄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5)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이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는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은행과 실질적인 주채무자이므로 명의대여자는 책임이 없다(대법원 99.3.12. 선고 98다48989호 사건).

(6) 실질채무자가 동일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척에게 부탁하여 친척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원리금은 자신이 직접 상환하기로 한 사정이 있더라도, 친척인 명의차주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대출서류)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하였다면 명의차주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알고 은행에 대하여 대출차주임을 표시한 것이므로, 대출금의 상환책임이 있다(대법원 98.9.4. 17909호 사건).

(7) 대출에 대한 보증을 부탁받았을 경우 부탁한 사람에게 자신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맡기고 보증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돈이 급한 나머지 부탁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거나 자신의 대출이 대출이 많아서 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았을 경우 나중에 책임을 지는 일이 벌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탁하는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은행에 가서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8) 전소유자의 대출금을 안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유의하여야 한다. 전 소유자가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포괄 근저당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은 매입부동산 관련 대출금 뿐만아니라 전소유자의 보증채무 등까지 상환하여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해 주기 때문이다. 만일 위와같은 부동산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에 전 소유자의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매입하여야 한다.

(9) 보증인의 동의 없이 기한 연장된 마이너스통장 대출, 기한연장 후 취급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부동산을 매도시 중도금과 잔금등을 받기 위하여 매입자를 위하여 은행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만을 제공 뿐만아니라 연대보증까지 해서는 안된다.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 매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주택이 경매로 팔렸을 경우 부족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일이 일

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신용카드

(1)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절차를 이행한 회원은 분실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25일전 이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한 후 신고를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하는 동안 사용한 카드대금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도 분실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이다. 카드분실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분실일로부터 25일이 지난 뒤에야 분실신고한 카드회원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2)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카드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카드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 도난 당하여 생긴 부정사용대금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은 카드 수령 즉시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4) 카드할인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고 현금을 빌려 썼는데 카드 할인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카드회원은 그 대금지급의 책임을 져야한다.

(5)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상환할 책임이 없으나 회원본인은 가족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

## 3) 불량거래자

(1) 신용불량정보 대상자로 등록되면 은행거래시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신용불량정보 대상자에 해당하면 은행은 신용불량거래 대상자를 은행공동전산망을 통하여 등록하게 되고, 은행공동전산망에 등록되면 은행은 물론 보험회사, 카드사 등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2) 신용불량대상자의 기준은 대출금을 3개월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 카드론 대금을 3개월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 5만원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 만기일경과 어음을 1개월이상 계속하여 미결제한 경우,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어음, 수표의 부도거래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대금의 상각채권(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의 보유자 등이다.

(3) 본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로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계절차 미필로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된 매도인과 건설회사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자에게 실행된 대출금으로 건설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된 거래처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신용불량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사유 해제소시에는 1년간을,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등록사유해제소시에는 2년간을,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초과 후 등록사유 해제소시에는 3년간을 보존하므로 동 기간동안 금융거래의 제재를 받게 되는 셈이다.

## 11.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1)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이 무료법률구조기금을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대리, 형사변호,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의 대상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률구조공단소정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원고나 피고가 모두 농업인인 경우에는 두 사람 중 승소가능성이 많은 농업인이 무료법률구조를 받

을 수 있다.

3) 농업인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사무소(담당 : 지도과장)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사건은 모든 민사, 가사, 형사, 행정(항고소 송사건에 한함)사건 그리고 헌법소원 사건이다. 다만 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 그리고 승소가 가능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 실익이 없는 사건은 제외된다.

4)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무소(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전화하거나 농협중앙회 고객만족부(전화 (02)397-6433,5556)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농협 44개 시군지부에서는 매월 2, 4째주 화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다.

## 12. 농업인 소비자보호사업

1) 농업인 소비자보호사업은 농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협약을 맺고 농협은 농업인의 피해사건을 접수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중계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한 처리(피해사례에 대한 심의, 판정, 조정결정)를 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2) 피해구제대상은 사업자로 부터 물품의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이며, 농업인들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 영농자재, 생활용품구입시 계약조건등에서 야기되는 불이익

둘째, 구입물품의 성능, 품질, 사후봉사관련 불만사항

셋째, 물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한 화재, 파손등 재산상 피해

넷째, 방문판매 등에 의한 충동구매에 따른 계약의 취소 등을 들 수 있다.

3)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농협사무소(담당 : 부녀과장)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문제에 대한 상담전화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실(전화(02)3460-3000)이나 농협중앙회 고객만족부(전화(02)397-6446)로 하면 된다.

#### IV. 마치면서

법률적인 다툼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는 생활법률 교육 등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법률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다툼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다툼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법적인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알아야 할 법률상식과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인 처리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다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농촌을 움직여온 여성농업인 개척자들

최 수 영

경북대학교

---

## I. 농업과 여성

### II. 일제시대를 대표하는 농촌지역 개척자 - 최용신

1. 상록수의 실계 모델, 최용신
2. 농촌계몽운동 -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 III. 새마을 운동 시기의 여성농민들

1. 새마을 운동과 여성농민들의 역할
2. 농촌여성들의 사회참여 증대
3. 새마을 운동과 부녀회
4. 가부장제와의 타협
5. 새마을 운동이 여성농업인들에게 미친 영향

### IV. 현대의 여성농업인들

1. 정매실 농원 웅쌍리 대표 - 매실로 성공적인 영농
  2. 여성농업인 모두가 개척자라는 생각으로
-



## 농촌을 움직여온 여성농업인 개척자들

근대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인 프랑스의 시몬느 드 보바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제2의 성”임을 역설하였다.

실제로 여자이기 때문에 해야할 일이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고,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그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부당한 대우, 즉 성(性)에 따른 차별은 사회 어느 곳에서든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와 남자가 경제적으로 동등한 산업사회는 어디에도 없으며,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적게 얻는다고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sup>1)</sup>.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사상 등의 유교사상이 짙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더욱이, 저가농산물 정책과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열악한 환경의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삶은 몇 배 더 고달프고 힘든 삶일 것이다.<sup>2)</sup>

보수적인 농촌지역에서도 투철한 의지로 의미있는 족적을 남긴 여성들이 있다. 여성이 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벗어나선 안될 틀과 벗어나지 못하게 한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의

1) Ivan Illich저, 최효선·이승환 역, 『젠더』, 뜨님, 1996.

2) “오늘날 우리 농촌의 여성은 삼중의 압박속에 놓여 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문제, 농민계급의 일원이라는 문제에 덧붙여 세계 자본주의체제 속의 한국농업의 희생이라는 또 하나의 억압구조의 가장 하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김주숙, 『한국 농촌이 여성가 가족』, 1994, 한울아카데미).



용기어린 열정과 업적이 값진 것이다.

고된 현실에 절망하거나, 안주하지 않은 개척자적인 삶을 산 여성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여성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나아진 것이 아닐까? 농촌 지역에 희망을 심은 여성농업인 개척자들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왔고 또 앞으로 이끌고 갈 사람들이다. 농촌여성, 여성농업인으로서 그들의 진지한 삶에 대한 자세를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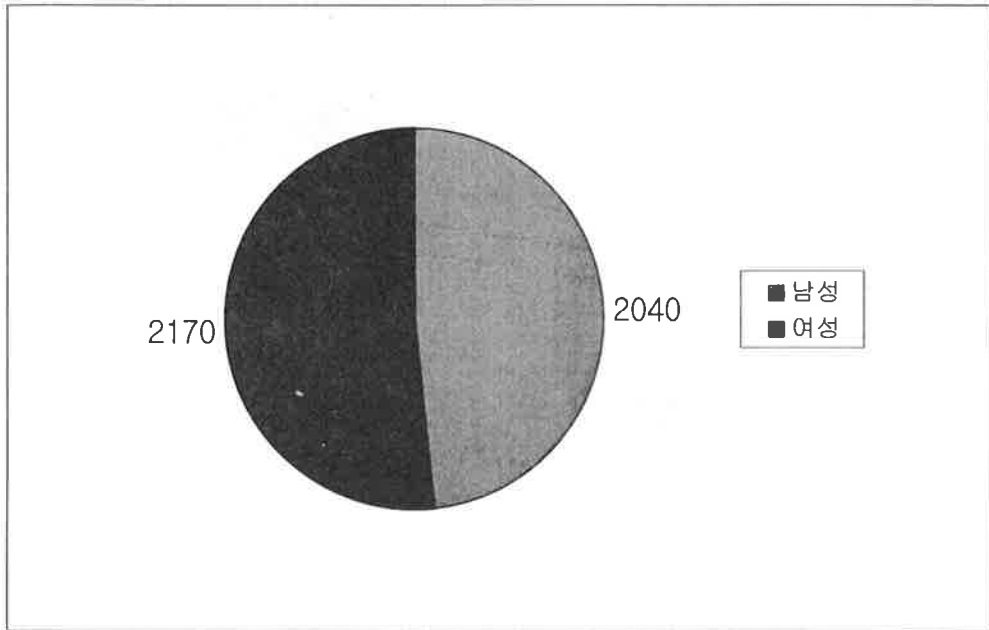
## I. 농업과 여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업종사자가 약 4백만 명 가량인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을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1999년 현재 총농가 인구 4210천명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2170천명으로 남성 2040천명보다 그 비율이 더 높다.

점차로 농업종사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 1998년도에 실시하였던 「농가부부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번기에 농가부인은 12시간 58분의 노동을 한 반면에 남성은 11시간 50분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업에서 여성농민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특히 노동시간에서는 남성보다 오히려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농가경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녀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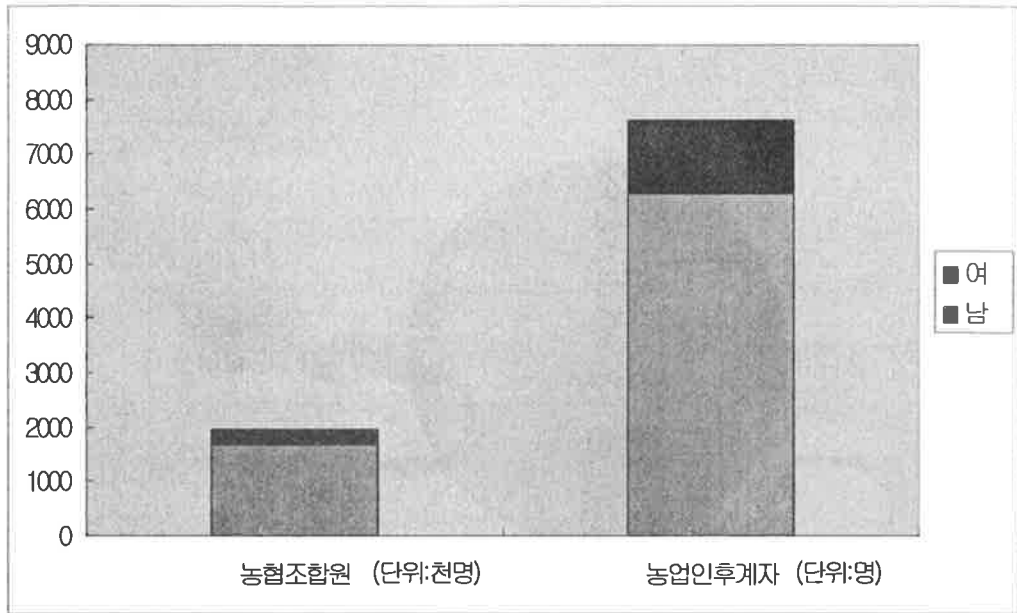


〈그림 1〉 전체농가 인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중

여성농업인은 농업인구 중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농업노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농가 내에서도 가사노동도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역할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지위는 어느 수준일까?

<그림 2>를 보면, 농협조합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과 농업인후계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낮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1998년 현재 전체 농협조합원 수는 1백9십7만3천명인데, 이 중에서 남성은 1백6십7만6천명인데 반하여 여성은 2십9만7천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여성의 비율도 1994년에 농협법 개정으로 1가구의 복수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그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1998년에 7천6백여 명의 농업인후계자를 선발하였는데, 그 중 남성은 6천3백명 가량인데 반하여 여성은 1천3백여 명으로 그 비율이 17.6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17.6 퍼센트라는 비율도 1995년의 농업인후계자 중에서 여성의 선발 비율이 5.6 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증가 속도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림 2〉 농업에서 여성의 위치

여성농업인은 지금도 그들의 역할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없다면 농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발맞추어, 농림부에서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던 여성농업인 정책을 최근에 들어서야 몇몇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농협조합장이 당선되고, 전문적인 농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분야에 비교해서는 느리지만 농업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지위도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일에서 그렇듯이 항상 변화를 이끌었던 선각자들이 있고, 농업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증대에도 분명 선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여건이 어려웠던 과거에 선각자적인 역할을 한 여성들은 누가 있었으며, 그들의 삶은 여성농업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을까? 농업, 농촌에서의 새로운 길을 닦았던 개척자적인 여성을 찾아보고, 그들에게서 오늘의 어려움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 Ⅱ. 일제시대를 대표하는 농촌지역 개척자 - 최용신

### 1. 상록수의 실제 모델, 최용신

...아이들의 등 뒤에서 이 정경을 바라보던 영신은 깨물었던 눈물이 주루루 흘러내렸다. 영신은 그 눈물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돌아섰다. 한참이나 진정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간에도 동무들은 내쫓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미안쩍은 듯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앉은 나머지 여든 명을 정돈시켜 놓고 차마 내키지 않은 걸음걸이로 칠판 앞으로 갔다.

그는 새로운 과정을 가르킬 경황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 복습이나 하자.”

하고 교과서로 쓰는 「농민독본」을 펴 들었다. 아이들은 글자 모으는 법을 배운 것을 독본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하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외기를 시작한다.

영신은 그 생기없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데,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이가 빠진 듯 띄엄띄엄 벌려 앉은 교실 한 귀퉁이가 휘언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유리창 밖으로 눈을 돌렸다. (중략) 영신은 창문을 말끔히 열어젖혔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칠판을 떼어 담밖에서도 볼 수 있는 창 앞 턱에다가 버티어 놓고 아래와 같이 커다랗게 썼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나무에 오르고 담장에 매어달린 아이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목구멍이 찢어져라 그 독본의 구절을 바라다보고 읽는다 ...

(심훈의 소설 「상록수」 중에서)

위의 글은 대표적인 농촌계몽 소설인 심훈의 「상록수」의 한 부분이다. 상록수에는 열성적으로 농촌계몽 운동에 종사하는 채영신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 된 사람이 과거에 존재하였는데, 그가 바로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이다. 최용신은 열악했던 일제치하 농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농촌 운동을 벌이면서 개척자적인 삶을 살았다. 그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여성농업인의 삶과 그들의 개척자적인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상록수’의 실제 모델 최용신은 1909년 8월 함경남도 덕원군,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살림살이가 가난한 농촌가정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겨레의 살길은 농촌 계몽에 있다”는 신념을 키워나갔다. 최용신은 1928년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황에스더 선생(1892-1971)을 만나면서 농촌 계몽 및 농촌 운동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는 1931년 10월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 안산시 사동 샘골에서 농촌 운동을 하게 된다. 천곡에서 그를 도와주던 유지 염석주씨가 최용신을 처음 본 소감을 통해 그 당시의 여성의 지위, 농촌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진 1〉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

“어떤 날 얼굴이 엷은 신여성 하나가 부인 몇 사람과 찾아 와서, 자기는 지금 샘골에 있으면서 이 지방을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바쳐 보고자 하니 부디 잘 지도협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회의 풍파를 많이 겪어 쓴맛 단맛을 다 보았고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을 한 참인데, 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 여자 하나쯤에게 무슨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저 내 지방에 와서 일한다는 사람이라니 대접상 어물어물해 보았습니다만, 실상 내 속마음으로는 날고 기는 놈

들도 농촌에 와서 실적을 못 내는 이 시절에 너 같은 계집애가 무엇을 해보겠

다고 그러느냐 하는 경멸을 던졌어요.”

## 2. 농촌계몽운동 -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sup>3)</sup>

농민을 대상으로 야학, 강연,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운동으로서의 농촌계몽운동은 1910년대의 무단정치시대에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다가 1920년 문화정치의 시작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1935년경에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일제는 1932년 농업진흥정책과 자력갱생운동을 일으켜 9월에는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족적 농민운동을 친일적 농민운동으로 방향을 틀리도록 강요하였다.

1934년 농촌 간이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전국에 440개교를 설립하였고 1936년에는 220개교를 세웠다. 부락마다 야학당을 경영하였으나 1937년에는 모든 운동이 금지되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귀농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1931년 동아일보가 전개한 브나로드(Vnarod)는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으로, 이 운동은 문맹타파와 보건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 하에서 최용신은 예배당에서 낮이면 씨름하듯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저녁이 되면 쉴 사이 없이 글을 모르는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다. 그러나 일제는 소위 전시체제로 돌입하는 단계여서 하나하나 죄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신문사에서 주축이 되어 벌이고 있던 귀농 운동, 소위 브나로드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제가 갖은 수단을 동원하던 때라 계몽운동의 사정은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용신은 조력자를 얻어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는 수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일제는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 내용에 대하여 사사건건 참견을 하기에 이른다.

최용신은 낮에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인회 일에도 관계하였다. 당시 수원군에서 농촌경제 부흥을 위해 시도하던 ‘구우계(求牛契)’를 부인회원들이 조직하여 열심히 일하여, 교사 신축을 위한 기금을 내놓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3) 심훈 지음·인주승 엮음, 「상록수와 최용신의 생애」, 홍익재, 1992.

하여 천곡학원이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어렵게 문을 연 천곡학원은 재정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음의 호소문을 통해서 당시의 어려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내가 사는 이 촌은 우리 조선에 있어서 두메라고 부를만한 벽촌은 아니외다. 서울서도 멀지 않은 서해안의 작은 산골짜기랍니다.

이 마을을 가리켜 근방에서는 교촌(敎村)이라고 부르니, 이 까닭은 이 곳에 기독교가 들어온지 20여년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학술강습소가 마을 가운데서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 이 촌을 가르켜 문화촌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이 강습소에는 근방 십여 동네의 아동이 모여오니 그 수가 백여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아동의 가정 정도를 말씀하여 보면 호수가 1,400이나 되나 그중에서 1년 수입 150월 이하의 호수가 910호나 되는 극히 빈한한 지방이므로, 이 강습소는 그 대중을 가르치는 데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지방의 중요한 기관이 이 강습소이나, 이것도 우리 농민들의 손으로 독립경영을 하지 못하고 사업가들의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의 여유 없는 생활이 이만한 기관 하나를 경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좀 더 향상하고, 좀더 진보하려고 분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촌이라는 이름을 듣고 교촌이라 칭호를 받는 이 촌 중에서 비통한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땅을 울리오니 목석이 아니고서야 어찌 볼 수 있사오리까? 이 비통한 울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불쌍한 어린이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강습소가 폐쇄된다는 원통한 울음이었습니다.

사업가의 열성도 경제도 제한이 있어 이제부터는 후원을 끊는다는 소식이 들림에는 우리는 낙망의 눈물, 비통한 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르칠 줄도 알고 배울 줄도 알건마는 우리에게서는 여유가 없습니다. 배움에 굶주린 우리 농촌 어린이들은 장차 어디로 가며 가르쳐 주고싶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하소연하오리까?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을 농민에 있다 하거늘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우리에게 무슨 발전이 있으며 늘어감이 있겠습니까? 오호, 우리 농민의 한숨을 어찌 다 기필하오리까? 이 앞으로 긴긴 밤에 잠 못이루고 나오는 한숨과 흐르는 눈물에 땅이 꺼지지 마사이다.

도시의 여러분! 당신들은 얼마나 행복스럽고 얼마나 안락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하룻저녁 오락비와 한 벌 옷감으로 몇 백원을 쓴다하시거든 우리 농촌

의 어린이들은 자라기에 배가 고프고 배움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이지여! 곡식을 심으면 1년의 계(計)가되고, 사람을 기르면, 백년의 계가된다고 하였거든 이 강산을 개척하고 이 겨레를 발전시킬 농촌의 어린이를 길러 주소서. 뜻 있는 이여! 우리 농촌의 아들과 딸의 눈물을 씻어주소서. 뜻 있는 이여! 우리 농촌의 아들과 딸의 눈물을 씻어주소서.

(「여론」 제2권 제2호, 1934.10.30)

이 호소문에서 우리는 당시의 학원 운영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최용신은 류달영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25년 여의 짧은 생을 뒤로 하고, 1935년 1월 최용신은 장중첩으로 사망하기에 이른다.

최용신은 엄청난 자기 절제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당시에 절망으로 가득찬 일제 암흑시기의 농촌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겠다. 최용신은 우리나라에서 농민교육, 농촌계몽활동의 제일주자이자 가장 개척자적인 삶을 살다 간 인물이라 하겠다.

### Ⅲ. 새마을 운동 시기의 여성농민들

#### 1. 새마을 운동과 여성농민들의 역할<sup>4)</sup>

최용신은 암흑기였던 일제시대에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하면서 개척자적인 삶을 살다갔다. 이후에 농촌여성들은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하여,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에서 여성이 담당하였던 역할은 무엇인가? 다음의 글은 새마을 운동 당시의 성공적인 여성농민의 활동을 기록한 글이다.

처녀시절 ‘또순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김영순은 결혼 후 억척스러운 ‘농군’

4) 여성사 연구모임 길박세상 지음,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이 되었다. 그녀에겐 분노통을 메고 들판을 누비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난한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남편을 따라 경상북도 월성군에 위치한 한 농촌 마을로 시집을 왔을 무렵, 그곳은 '게으르고 무기력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가난을 모면해보려고 지게도 지고 남자들처럼 억척스럽게 일을 했지만, 그런 그녀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

김영순은 마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띤 것은 술과 도박문제였다. 마을에는 술 마시고 노름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는 남편 때문에 낙심한 여성들이 많았다. 김영순은 마을의 아낙네들, 뜻있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주막과 노름판을 찾아다니며 새 생활을 하자고 간곡히 설득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조롱을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10개나 되던 주막이 없어지고 노름판이 사라졌다. 마을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고, 여자들도 뭉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성들에 의해 싹튼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 부녀회 조직을 권장했다. 그 영향으로 마을에도 부녀회가 생겼고, 김영순은 부녀 지도자로 추천되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뭉친 마을 여성들은 절미운동을 조직하고 뒷산을 개간하여 뽕나무밭을 만들어 가꾸고,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등 열심히 활동하였다. 80여명의 부녀회원들은 눈발이 날리는 엄동설한이나 뽕약벌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일을 손수 해냈다. 땀흘린 대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무렵, "여편네가 날뛰고 다닌다"는 노인층의 성화는 사라졌고,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들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게 되었다.

1973년 11월 24일 광주에서는 제1차 새마을지도자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김영순이라는 어느 '부녀지도자'가 발표한 성공사례이다. 김영순의 이야기는 술과 도박으로 찌들었던 마을에 시집온 한 여성이 뜻있는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술과 도박을 몰아내고 새마을 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진짜 '새마을 운동'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유행했던 몇몇 성공 사례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억척 엄마들의

잘살기 대행진”,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앞선 새마을” 등 당시 잡지 기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들이 주인공이 된 이런 종류의 성공 사례담은 많다. 이는 새마을운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박정희 정권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여성 참여의 강조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기존의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정부는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과 국가발전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지위향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사진 2〉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

이러한 선전이 힘을 발휘했던 것일까? 실제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매우 두드러졌다. “새마을 부녀회가 움직이지 않는 마을은 새마을 운동이 없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공한 마을은 예외 없이 마을 여성들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여성의 노동·사회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위향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이 공적인 영역

에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온존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여성들을 동원하면서도 기존의 전통적 성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성들은 어떤 이유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까? 또 새마을운동이 오늘날 농촌 여성들에게 남긴 영향은 무엇인가?

## 2. 농촌여성들의 사회참여 증대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위로부터 주도된 ‘농촌 근대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처음에는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기치 하에 ‘새마을 가꾸기’사업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는 정신계발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직전, 농촌은 위기에 놓여 있었다.

1960년대에 진행되었던 공업화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농촌 사람들의 상대적 좌절감은 커져만 갔다. 농촌생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많은 젊은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났다. 심각한 도농간의 격차와 이촌향도로 농촌지역은 급속하게 피폐해지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농촌을 안정시킬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10월 유신을 통해 영구집권과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던 박 정권에게 농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제거하고, 농촌지역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농촌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그 해결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새마을 운동이었다. 1971년 만성적인 농촌의 침체와 빈곤을 추방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국가가 무상 배포한 ‘시멘트 푸대’와 농민들의 리어카가 상징하듯, 새마을운동은 위로부터의 동원과 아래로부터의 협력에 의해 추진되었다. 농민들은 무상으로 받은 시멘트로 마을의 숙원사업을 시작했다. 마을 진입로와 농로 넓히기, 교량 가설하기, 선착장 쌓기, 지붕 개량, 심지어는 변소 개량에 이르기까지 손이 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다. 별다른 희망 없이 그 날 그 날을 살아가던 농민들

에게 넓어진 길과 개량된 주택은 새로운 근대적 경험을 의미했다.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면서 점차 여성들은 집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촌향도로 많은 젊은 남성들이 빠져나간 농촌의 빈자리는 이들 여성들에 의해 채워졌다. 마을 공동사업에서 농가의 소득증대사업에 이르기까지 그녀들의 손이 닿지 않는 일은 없었다. 심지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 벽돌을 쌓고, 하수도 공사를 위해 자갈을 나르는 일에도 여성들이 참여했다.

전에는 가사노동을 주로 하고, 농사를 도왔던 여성들이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1965년에 전체 노동의 27.5 퍼센트만을 담당하던 여성들은 1979년에는 전체 노동의 42.4 퍼센트를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여성들이 농업노동에 투여하는 시간도 점차 늘어나서, 농한기에는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비슷하지만, 농번기에는 가사노동보다 농업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2배 이상 길어졌다.

또 예전에는 밭농사를 주로 맡았던 여성들이 모내기와 같은 논농사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특수작물의 재배가 장려되면서, 과수나 채소 재배와 같은 일에도 여성 노동력이 투입되었다. 농촌의 여성들은 더 이상 ‘농가주부’가 아니라 ‘여성농업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주부’로서의 여성 이미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마을 운동과정에서 여성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맞는 일’을 할당하였던 부녀회 조직의 활동 내용과 밀접히 관련된다.

### 3. 새마을 운동과 부녀회

전통적인 마을 질서 내에서 여성들의 바깥활동은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허물’이 되곤 하였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에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마을마다 ‘새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었다. 여성들은 부녀회 활동을 통해 보다 활발하게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였다.

정부는 부녀회의 조직에서 그 활동방침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관여하였다. 새마을 운동을 설명하는 교재를 만들어 부녀회에 배포하고, 부녀지도자를 교육

시키고, 시범·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1970년 당시 2000여 개였던 부녀회의 수는 1980년 9만 4천여 개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부녀회는 금주운동, 절미저축, 폐품수집, 공동구판장, 탁아소, 공동취사, 공동경작과 같은 사업을 벌여나갔다.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초기에 부녀회 활동의 기반을 다진 것은 금주운동이었다. 부녀회원들은 남편이 집밖에서 술을 마시면 회원인 부인이 벌금을 내는 등의 기발한 방법을 개발하여 술집을 마을 밖으로 몰아냈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을 거두면서 여성들은 개개인의 힘보다 집단의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뭉쳐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고 또한 실천해나갔다. 식사 준비 때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 떠내어 저축하는 절미저축, 폐품수집, 바쁜 농사철에 시장 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부녀회원들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공동구판장 사업, 그리고 탁아소, 공동취사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마을 단위로 진행되었다.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 공동경작을 하거나, 농한기에 보리 짚을 이용해 밀짚모자를 만드는 등의 공동사업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여성을 동원하되 부녀회를 통한다는 방식은 ‘고유한 부덕이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모든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절미저축, 폐품수집, 탁아소, 공동구판장, 공동취사장 등 부녀회의 주된 활동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일에 속하는 범주의 것이었다. 이로써 여성들의 새마을운동에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은 채 고수될 수 있었다.

더욱이 남성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농협과 관련된 농사개량구락부, 협동회, 작목반 등 보다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이권과 관련된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마을의 자원 동원과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었던데 반해, 여성들의 부녀회는 보다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활동함으로써 실제 마을의 주요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남성인 새마을 지도자가 ‘사회 속의 가장’으로서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데 비해, 부녀 지도자는 ‘사회 속의 주부’로서 마을의 관리·건강·영양·교육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중앙’-‘시·도’-‘시·군’-‘읍·면’-‘리’와 같은 위계적인 통제체제로 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내에서 부녀회는 단지 마을 단위에서만 조직된 하부조직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앙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이로써 여성들은 조직의 가장 말단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이미 위로부터 결정된 사업에 동원되는 형태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통적 가치관에서 본다면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는 여성답지 못한 일탈 행동이었지만, 국가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태도와 규범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와 규범이 허용되는 범위는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 국가를 ‘위한 것’으로 제한되었다. 여성들의 참여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이었다.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은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난받았다.

부녀조직을 통한 여성들의 활동은 가정에서의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의 ‘내조자’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비가시적 영역에서의 지역발전의 ‘내조자’이자 마을의 내부 관리자의 역할이었다.

#### 4. 가부장제와의 타협

농촌 여성들이 집밖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남편이나 집안 어른들의 반대는 심했다. 공·사 영역의 분리가 엄격하게 지켜졌던 유교적 관습 하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관공서를 출입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부녀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던데, 네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느냐”면서 야단치는 남편과 시부모의 반대에 자주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부녀회 활동에 상당히 열성적이었다.

왜 여성들은 이토록 열성적으로 부녀회 활동에 참여했을까? 그것은 보수적이

고 가부장적인 농촌문화 속에서 부녀회 활동이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해방감과 사회적 인정을 주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부녀회 활동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음에 틀림없다. 일찍이 자신의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는 농촌부인들이 집에서 해방되어 회의를 하고 강연을 들으며 학교 다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어머니이기 이전에 공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느끼는 묘한 흥분과 해방의 느낌이 그들을 열심히 부녀회 활동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더욱이 가정형편 때문에 미처 받지 못했던 교육을 부녀회 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유인요소가 되었다. 교육의 내용은 보다 근대적인 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여성들에게는 그 이상을 의미했다. ‘음식을 만드는 데도, 가정생활을 하는 데도 옛날 그대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뭔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단지 근대적 주부가 되기 위한 것이란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부녀회 활동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했던 많은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었다.

또한 부녀회 활동이 여성들에게 가계의 소득증대, 손쉬운 대부 등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절미저축이나 공동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적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생활비를 쪼개 써야 했던 여성들에게 남편 모르는 쌈지돈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거리였다. 그 돈은 농사짓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간섭없이, 여성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활발해진 농촌 여성들의 관광여행도 이런 쌈지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집밖으로 나다니는 것’에 대한 남편과 시부모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시켰을까? 여성들은 부녀회 활동이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동네를 위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집안 망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려 했다. 그리하여 부녀회 회원들은 가족에 대한 헌신과 봉사 등 가족주의와 전통적 역할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가족의 반대를 이겨냈다.

나아가 시부모 잘 모시는 부녀회원을 뽑아 표창하거나 매월 효도 날을 정하여 노인들을 위로하고 불우한 청소년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부녀회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였다.

공동사업을 통해 적립된 부녀회 기금을 마을의 숙원 사업에 기부했던 것도 여성들의 전략 중의 하나였다. 전기를 들여오거나 마을회관을 짓거나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데 부녀회 기금을 썼을 경우, 그 마을의 부녀회 혹은 여성들의 입지는 크게 향상되었다.

실제로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마을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마을일수록,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반면 여성들의 기여가 저조했던 마을에서는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만 잘하면 된다’는 전통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마을의 숙원사업에 부녀회 기금을 기부하였던 데에는 이와 같이 부녀회 활동을 인정받고자 하는 여성들의 전략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이었던 새마을 운동의 성격상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는 지도자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때문에 마을 여성들을 동원하고 위로부터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부녀 지도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운동 초기에 여성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여성이 부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집안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의 부인이 부녀 지도자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 부녀회 활동이 마을 내 승인을 획득하면서 남편의 직책과 상관 없이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부녀 지도자’들은 여성의 대표자라는 명함을 기반으로 권력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부녀 지도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난 뒤 자신을 보는 주위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한 여성의 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 부녀 지도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나서 나를 보는 주위의 시선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일단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지요. 면장과 면담하는 일도 많아졌고, 군에 행사가 있을 때면 군수님과 나란히 옆



에 앉게 되었지요 저는 리 단위 회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읍 단위 회장까지 하게 되었지요 읍 단위로 나가니 대접이 달라지더군요 회사 같은 데서는 저를 새마을 강사로 모셔가기 위해 직접 차를 가지고 우리 집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저를 교육장까지 모셔주기도 했지요 그러니 동네에서는 부녀회장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부녀회장은 이제 누구의 부인으로서가 아닌, 부녀회장 ○○○씨로 호명되었고 여성들의 대표라는 자리를 통해 제한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선거 때에는 여성들을 동원하고 여성들의 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존재로서 나름대로의 비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부녀 조직활동이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집단적인 권력 획득이 아닌 부녀 지도자의 개인적인 권력획득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즉 부녀 지도자만 지위가 향상되었고, 대부분의 농촌여성들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생활 및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의 구조적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아니, 오히려 저농산물가격정책, 외국 농산물의 범람, 농공간 불균형 발전 등에 의해 농촌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정보화가 중요한 발전 요인이 될 것인데, 도농간 정보화의 격차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이 농촌빈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게으름과 무지함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에 참여한 농민들의 열기만큼 결실을 얻을 수 없었음을 지적한다. 이런 방식은 초기에는 상당한 농민들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외화내빈'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 5. 새마을 운동이 여성농업인들에게 미친 영향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새마을 부녀회와 같은 마을 내에서 여성들의 집단적 활동이 활성화되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기존의 남자와 여자간의 차별을 깨거나 여성 개개인의 삶을 보다 풍요로운 것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여성들은 자아실현이나 지위의 향상을 경험하기보다는 ‘과잉노동’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을 느꼈다.

“나는 바빴어요. 머슴꾼이었죠”라는 한 할머니의 회상처럼 여성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다. 설령 여성들이 집밖에 나가 일한다고 하더라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본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가 바랬던 여성은 현모양처이면서 동시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전보다 더욱 봉사할 수 있는 여성이었던 것이다. 여성들의 노동은 그것이 사회와 국가의 이익에 봉사할 때에만 의미있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지위향상은 언제나 부수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진행될수록 여성들 사이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 내면화되었다. 이제 여성들에게 노동은 국가를 근대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로 자리매김되었다.

결국 근대적 국가건설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임무 앞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민족주의 가치를 스스로 받아들였다. 여성들 스스로 국가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가 부여하는 여성으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정부 시책으로 위에서 내리는 것을 그대로 따르느라고 주민, 농민들이 많이 애를 썼어요”라고 말하는 한 할머니의 회고에서 1970년대 국가개발 사업에 동원되었던 여성 농민들의 국가에 대한 복종적 심성을 발견할 수 있다.

#### IV. 현대의 여성농업인들

현재의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어떤 유형을 개척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것이다. 우리가 최용신을 농촌지역의 계몽을 이끌었던 개척자, 선각자로 꼽는 이유는 그가 당시의 암울했던 시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농촌활동에 매진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 80년대에는 근면성실한 자세로 노동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여성농업인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대의 여성농업인 개척자는 ‘농장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서 여성농업인에게 농업도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밝은 산업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여성농업인 개척자가 아닐까? 특히, 요즘처럼 외국농산물의 범람과 농산물의 가격 폭락 등 어려운 농업 사정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각종 공중과 방송에서 농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소개하는 문화방송(MBC)의 프로그램인 「성공시대」에 지난 1999년 7월 11일에 소개된 홍쌍리 여성 농업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매실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통식품제조업체로 지정받은 사람인 청매실농원의 홍쌍리 대표는 많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농업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 1. 청매실 농원 홍쌍리 대표 - 매실로 성공적인 영농

홍쌍리는 매실 하나로 새농민상, 국무총리상, 석탑훈장,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1997년에는 식품 명인 1호로 선정되었고 신지식인으로까지 뽑힌 여성이다. 매실의 효능이 알려지기 전부터 20년이 넘게 매실을 식생활과 연관시키기 위한 연구에 매달렸던 홍쌍리 회장.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녀의 연구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매실식품이 되어 세상에 나가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매실의 나라 일본에서도 그녀의 매실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골야박 홍쌍리가 매실의 명인이 되기까지의 굵은 손 마디마디마다 숨겨져 있는 그녀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도시처녀 홍쌍리는 45만평의 밤농사를 짓던 시골만석군집 큰머느리로 시집을

왔다. 해도해도 끝이 없는 일속에 눈물로만 지새던 그녀는 도망갈 궁리만 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럴 때 그녀를 집에 붙들어둔 것은 다름 아닌 매실이었다. 봄이면 제일먼저 꽃망울을 띄우고 여름이면 한아름 열매를 쏟아내는 매화나무 밑에서 시름을 달랜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매실이 손의 더러운 때와 개밥그릇의 찌든 기름기까지 깨끗하게 빼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식중독에 걸린 자신이 매실고(액기스)를 먹고 낮자 점점 매실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밤나무를 베어버리고 매실나무를 심었다. 돈이 되는 밤나무 대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매화나무를 심자 시아버지의 호통은 계속되지만 홍쌍리의 매화나무에 대한 고집은 꺾지 못했고 지금의 매실농원을 이룰 수 있었다.

매실은 그 맛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없어서 다만 한방에 쓰이던 약용 과실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홍쌍리는 매실을 밥상에 올리겠다는 욕심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입맛에 전혀 안 맞는 매실을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도 없었고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녀가 시도한 첫 번째는 매실을 6쪽으로 만들어 설탕에 저리는 일이었다. 저려져서도 사각사각하면서 그 맛과 향이 더해지는 설탕의 적당량을 찾기 위해 낮도, 밤도, 새벽도 없었다. 오직 매실연구 하나에만 몰두하는 세월의 연속이었다. 모두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매실에 미친 수십 년의 세월 끝에 이제는 매실을 이용한 액기스, 차, 절임, 장아찌, 정과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매실 식품을 세상에 내놓게 된다.

그녀의 매실음식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후한 인심 덕이었다. 그녀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아낌없이 나눠줬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어느새 팔라고 손님들의 성화가 일었고, 홍쌍리 역시 이왕이면 정식식품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허가가 잘 나지 않자 직접 군수를 찾아가는 당찬 기세로 제조식품 허가는 물론 전통식품 지정의 기쁨까지 누리게 된다. 빗을 내어 공장을 세우면서도 매실식품을 사람들이 알아줄까 하는 걱정에 쓰러지기도 몇 번. 하지만 그녀의 매실식품은 입소문을 통해 점점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유기농, 항아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전통의 맥을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그

너는 국가지정 명인 1호가 된 영광과 함께 매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홍쌍리 대표는 영농규모가 45만평으로 부농의 경우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런 이점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수십 년간에 걸친 그의 노력과 투혼은 참으로 높이 살만하다. 생산만 한다고 농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단한 노력과 개선 의지 없이 농장을 잘 경영하기란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홍쌍리 대표는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성농민의 삶과 농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 2. 여성농업인 모두가 개척자라는 생각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과 칠레 포도 수입까지 우리나라 농업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농업으로 성공하는 것은 더욱 빛이 난다. 이제 농업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적인 농업경영능력 확보없이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생각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점차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 개소, 농가여성도우미제도,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 영농후계자 선발시 가산점 부여가 그것이다.

전국 13곳에서 여성농업인센터가 개소되었다. 여성농업인의 가사와 자녀교육, 유아보육 등에 따른 고충을 상담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의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곳이다.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여성농업인센터는 충북 영동,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충남 서천, 경기 김포, 강원 춘천, 충북 보은, 충남 천안, 전북 익산, 전남 장성, 경북 경주, 경남 김해, 제주 서귀포 등에 설치, 운영된다.<sup>5)</sup> 내년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40곳으로 확대된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어린이집 운영, 방과후 아동지도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5) 「한국농어민신문」, 2001년 3월 31일.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부는 최근 올해 선정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경북 안동, 경남 진주 등 4곳에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미진한 점이 많지만, 최근 들어 여성 정책담당관을 농림부에 설치하는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마련이 한층 나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여성농업인의 농협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지역 농협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는데 발맞춰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여성복지팀은 최근 농협의 여성임원 확대와 여성농업인 농협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여성조합원 가입을 적극 추진, 조합장 등 여성 임원 위촉 증대 등을 도모하는 이들은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지혜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조합원 가입 증대 여성임원·대의원 선임 확대 여성분과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여성 임원·대의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성이 조합 운영에 참여해야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서 활력있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므로, 2003년까지 임원은 조합당 한 명씩, 대의원은 조합당 10명 이상씩 선임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그 방안으로 역량있는 여성을 적극 발굴함과 함께 여성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관개정 등의 적극적인 방법도 도입해야 한다.

이처럼, 농림부와 농협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 여성농업인을 주체적인 영농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이제 농촌여성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당당한 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인 것이다. 여성농업인은 이제 정책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해야 할 것이다.

농촌, 농업 현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일제 시대 암흑기의 최용신의 농촌계몽 활동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농업인은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어렵다고 농촌,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 모두가 개척자 정신으로 “나의 발전”이 곧 “여성농업인의 발전”이고, “여성농업인의 발전”이 “한국 농업의 발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농업에 의욕적으로 종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옥·김이선,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9.
- 김주숙, 『한국 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아카데미, 1994.
- 윤호섭·박동규, 『농업노동력 현황과 육성방향』, 농업경제연구 제35집 제2권, 1994.
- 여성사 연구모임 길박세상 지음,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 정기환,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12
- 통계청,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4.
-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여성농민연구, 통권 제5호, 2000.봄.
- Ivan Illich저, 최효선·이승환 역, 『젠더』, 뜨님, 1996.
- [http : //www.kwdi.re.kr/](http://www.kwdi.re.kr/)

## 감수위원소개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공 및 학위
김 인 호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회장	-
김 종 숙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농학 박사
박 민 선	농협대학 여성대학과정 교수	문학 박사
박 양 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식품영양학 박사
서 종 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림부한국여성정책자문회의 위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윤 금 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부회장	-
정 무 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장	농업경제학 박사
조 희 금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가나다순...)